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2019. 12.



서울특별시의회
Seoul Metropolitan Council

제출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귀하

이 보고서를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 12.

- 연구기관 : 가족구성권연구소
- 책임연구원 : 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대표)
- 연구원 : 성정숙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김소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이종걸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류민희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
장서연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 활동가)
- 자문위원 : 김경원 (서울특별시 가족정책팀 팀장)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인권팀 팀장)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요약문)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순남 · 성정숙 · 김소형 · 이종걸 · 류민희 · 장서연

요 약

I. 연구배경

- 1인 가구, 비혼·독신, 동거커플의 증가, 이혼·사별·재혼 증가에 따른 이성애 혈연가족 내부의 변동이 심화되며, 혼인·혈연 중심의 관계망이 아닌 다양한 시민적 유대와 친밀적 결속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인 흐름이 가속화 됨.
- 현재의 가족 변동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증대와 맞물려 있는 현상이기에, 가족제도로부터 배제됐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뿐 아니라 청년과 노년 세대 전반에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서 혼인·혈연관계 중심이 아닌 다양한 사회적 안전망과 평등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음.
- 201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는 혼인·혈연관계만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매우 독보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나, 여전히 1인 가구로 ‘사회적 가족’ 지원 범위를 국한하고 있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다양한 관계성을 포괄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II. 연구목적

- 첫째,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여 나아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가족 경험과 생활상의 고충, 정책 요구를 파악하고자 함.
- 둘째,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Ⅲ. 연구방법

1. 조례 및 정책·사업 분석

- 서울시 가족 관련 조례 분석
- 서울시 가족 관련 정책·사업 분석
 - 서울시가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 현황
 - 서울시 소속 및 관계 기관 현황
 - 서울시 산하 병원 현황
 - 서울시 중장기 가족 정책 및 가족 관련 단위 사업 분석 등

2. 심층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비혼 동거커플, 비혈연 생활공동체(청년, 노인, 비혼여성, 장애인 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족 구성원 15명
- 심층 면접 주요 질문

[개별면접 질문내용]

구분	질문내용
가족 구성 내력과 현재 가족의 구성 동기	가족 구성 내력 외로움, 소속감, 나이 듦, 친밀성 욕구, 정체성 등
현재 가족의 삶이와 가족실천 방식	다양한 가족실천 방식 관계로 인한 일상의 변화
가족형태와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	법, 제도상의 차별 경험 내용 생활공간(일터,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차별 경험 내용 사회관계(원가족, 친족, 지인, 이웃 등)에서의 차별 경험 내용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가족구성권 관련한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가족 구성의 의미와 사회적 가족 도시의 가능성	현재 내 가족의 의미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 도시' 의 의미와 기대

다. 해외사례 검토

- 미국 사례
 - 샌프란시스코, 웨스트 할리우드 도매스틱 파트너십 관련 법령
- 일본 사례
 - 도쿄도 시부야구, 세타가야구 조례, 요강

IV. 연구내용

위의 연구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 변동 속에서 왜 사회적 가족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 밝히고, 사회적 가족 관련 기존 조례 및 정책을 분석하고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함.
- 둘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어떻게 가족을 형성하며 서로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과 불편을 경험하였는지, 사회적 가족을 구성·유지·해소의 과정에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하고자 함.
- 셋째, 사회적 가족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해외 국가 지자체의 법령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하고자 함.
- 넷째, 사회적 가족 지원 및 지위 보장을 위한 서울시 조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족 도시 조성 및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제언하고자 함.
- 다섯째, 사회적 가족의 삶, 한국사회 가족 변동을 반영한 서울시 행정체계 개선 방안 및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V. 연구의 주요 논점

- 본 연구에서는 혼인·혈연 관계에 기반한 기존의 가족정책의 한계와 다양한 관계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서 시민적 유대와 친밀적 관계망을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

고자 하였음. 최근에 생애변동 속에서 사회적으로 삶의 고립화나 사회적인 유대감의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 가족·사회정책은 변화되는 새로운 방식의 유대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에서 배제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음

- 본 연구는 이성애 핵가족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가족 실재를 ‘사회적 가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사회적 가족’들이 당면하는 사회적 현실을 조사하고자 하였음.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족 개념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되, 생계를 취사와 취침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살림 즉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등을 공유하는 행위로 그 범위와 의미를 확장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서 ‘동거 사회적 가족’,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을 통해서 기존 혼인·혈연관계망을 넘어서 만들어지는 관계망의 변화를 포착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은 혼인·혈연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삶에 의지처가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족이 아니라 사회를 다시 만들어 가는 시민적 유대를 실천하고 있음. 그러나, 주거, 의료, 장례, 사회보장제도 등에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주요하게 확인함. 다양한 관계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혼인·혈연 중심의 삶을 넘나드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포괄하는 정책의 변화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의 토대이며, 인권의 출발임을 가시화 하고자 하였음.

VI. 사회적 가족을 위한 정책 제언

1. 사회적 가족 지원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

- 사회적 가족을 서울시 가족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차별 없이 지원하며, 나아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시민들과 상호 유대와 공존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해야 함. 아래의 내용이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근거로 명시되고 다양한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가. 사회적 가족 지원 종합계획 수립

- 먼저 서울시의 사회적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목표, 지원 영역 및 세부 추진과제 등을 담은 (가)〈사회적 가족 지원 종합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그러한 계획이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 종합계획 안에는 사회적 가족을 위한 주거, 복지, 보건·의료, 안전, 문화향유 등 다양한 영역별 정책 추진의 방향과 과제가 명시되도록 하며, 아울러 서울 시민들이 나눔 활동, 상호 돌봄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 관계를 확장하도록 독려하고 그러한 관계 맺음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함.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사회적 가족의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사회적 가족 당사자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나. 전달체계의 통합적 구축

-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는 기존의 가족정책 전달체계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다시 구축해야 할 것임.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가 최근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재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센터들과 별도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할 경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실천을 가족형태나 가구형태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특정한 가족형태 및 가구형태에 대한 낙인을 초래하고 실제 이용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가족형태나 가구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서울 시민의 가족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지·

지원하는 활동으로 전달체계의 위상을 확립하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함.

다. 사회적 가족 등록 절차 마련

- 사회적 가족 구성원이 서울시 정책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계를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당 가족 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 증빙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서울시의 사회적 가족 증빙 자료가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각종 시설 이용이나 상품·서비스 구입 시 이들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

라. 민간영역의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 서울시 차원의 정책·서비스 제공에서 사회적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각종 시설이나 상품·서비스 판매 시 기존의 혼인·혈연 가족에게 주었던 혜택이나 보장 내용이 사회적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독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민간기업의 보험·금융상품,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사회적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해당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견인 방안이 추진 가능함. 서울시의 노력을 통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난다면 정상가족에 대해 시민들의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음.

2.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

가. 서울시 주거정책 대상을 사회적 가족까지 확대

- 사회적 가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가족을 구성·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가장 절실하게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주거 문제였음. 부부·혈연가족과 1인 단독 가구, 오직 두 가지 대상으로 나누어 실시되는 주거정책에서 이들은 배제되거나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비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회적 가족에게 확대할 주거정책으로 △주택자금 지원사업 대상 확대 △임대주택 입주자격 보장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관계망에 기반한 사회적 가족주택 확대가 필요함.

나. 서울시 산하 의료원의 친족 중심 보호자 참여 관행 개선

-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환자 본인에게 하거나 환자가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 규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그 외 친족에게는 ‘보호자’로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야 할 어떤 법적 의무도, 책임도 부여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관행상 친족으로 설정된 보호자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음. 서울의료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입퇴원 수속절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원 수속 시에는 환자의 신분증과 함께 보호자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하며, 상시 병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증을 발급하는 보호자는 2인까지 두게 되어 있음. 이처럼 보호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관행은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1인 가구 등이 늘어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관행이 보호자=친족이라는 고정관념과 결합하여 친족보다 현재 함께 살면서 환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회적 가족 구성원의 보호자로서 참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한편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보호자에게 과도한 참여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자의 자격을 ‘환자가 지정하는 1인’과 같이 친족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다. 장례에서 사회적 가족의 권한 보장

- 최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연고자를 친족으로 제안한 장사법의 문제점이 제기됨. 법적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적 가족 구성원은 시신 인수를 포함한 장사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황임. 법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등록·증명자료, 유언장 등 증빙이 있을 경우 사망자가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장례 권한을 우선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방침 등 가이드 라인을 먼저 시행할 수 있음.

라. 가족수당 및 휴가 지원 대상에 사회적 가족 포함

-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당 및 휴가 지원 시 사회적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해당 제도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이는 사회적 가족 구성원이 수당 및 휴가 사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가족구성원을 대상별로 특정하여 제공하는 가족수당 제도와 경조사 휴가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사회적 가족을 포함하더라도 특정한 가족 구성원과 가족 형태를 명시하고 증명하여 수당이나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은 원치 않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가족 관계를 남겨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족을 특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제도와 휴가 제도를 보다 보편적인 급여 확대, 휴가 확대를 통해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

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제정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가구 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가족의 정책과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가족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목 차

I .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내용	3
4. 연구 방법 및 추진절차	4
가. 조례 및 정책·사업 분석	4
나. 심층 면접조사	4
다. 해외사례 검토	5
5. 보고서의 구성	6
II . 왜 ‘사회적 가족’인가?	7
1. 생애변동과 사회적 가족의 출현	7
가. 생애변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의 증대	7
나. 가족의 고립화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8
다.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가치에 대한 변동	9
라. 혼인·혈연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11
2. 기존 사회적 가족 개념의 의의와 한계	13
가. 다양한 관계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13
나. 사회적 가족이 관 주도형으로 상상되는 방식	14

3. 사회적 가족의 정의 및 유형 규정	15
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가족’의 의미	15
나.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가족’의 유형	15

Ⅲ. 질적 연구 분석 :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1. 조사방법과 연구참여자	16
가. 조사방법	16
나. 연구참여자	18
2. 다양한 사회적 가족의 형성과정: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 25	
가. 사회적인 존재로 ‘함께’ 살아가기	26
나.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29
다. 더 이상 당연한 가족은 없다	32
3. 사회적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실천 : 생활돌봄과 서로돌봄	37
가. 공간의 서로돌봄 : 좀 더 나은 공간으로 ‘너’도 함께	39
나. 안전의 서로돌봄 : 안전하다는 감각 돌아주기	45
다. 경제에 대한 서로돌봄 : 분담하되, 상황에 맞추어 돌보기	46
라. 집안일의 서로돌봄 : 함께 하되, 싫어하는 일 맡아주기	48
마. 정서적 서로돌봄 : 경청하고 지지하기	51
바. 아픔의 서로돌봄 : 병원에 같이 가고 함께 있기	53
사. 관심의 서로돌봄 : 즐거움을 함께하기	55
아. 갈등과 긴장의 조율 : 익숙한 문제해결자	56
자. 서로 돌보는 관계의 확장	57
4.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	60
가. ‘정상가족’의 家 : 기존 주거정책에서의 배제	61
나. 경제생활의 단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	66
다.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가족	69
라. 죽으면 사라지는 ‘함께 삶’의 흔적	71

IV. 사회적 가족 지위보장 해외 사례	74
1. 제도의 현황	74
2. 자치 입법을 통한 가족생활권 보장의 구체적 사례: 일본	77
V. 결론 및 시사점	83
1. 사회적 가족 지원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 · 83	
가. 사회적 가족 지원 종합계획 수립	84
나. 전달체계의 통합적 구축	84
다. 사회적 가족 등록 절차 마련	85
라. 민간영역의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85
2.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	85
가. 서울시 주거정책 대상을 사회적 가족까지 확대	85
나. 서울시 산하 의료원의 친족 중심 보호자 참여 관행 개선	96
다. 장례에서 사회적 가족의 권한 보장	98
라. 가족수당 및 휴가 지원 대상에 사회적 가족 포함	99
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102
※ 참고문헌	108

표 차례

〈표1-1〉 개별면접 질문내용	4
〈표3-1〉 연구참여자 현황	17
〈표4-1〉 파트너십 인정 선택의 종류들	75
〈표4-2〉 등록동거의 법적 효과의 정도	76
〈표4-3〉 도쿄 시부야 구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 ..	81
〈표5-1〉 주택도시기금 주택전세 자금대출 상품	86
〈표5-2〉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내용	88
〈표5-3〉 서울형 주택 바우처 사업 내용	88
〈표5-4〉 국민임대·장기전세 신청자격	89
〈표5-5〉 행복주택 신청자격	90
〈표5-6〉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상	91
〈표5-7〉 서울시 공동체주택 플랫폼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94
〈표5-8〉 서울시 공동체주택 플랫폼 거주자 특성에 따른 분류	94

그림 차례

〈그림1-1〉 연구 수행 체계	5
〈그림2-1〉 ‘사회적 가족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진 자료	14
〈그림3-1〉 대학생·사회초년생 행복주택 평면도	66
〈그림3-2〉 신혼부부형 행복주택 평면도	66
〈그림4-1〉 일본 26개 지방자치단체의 동성커플 등록 상황(2019.10.8 기준)	78
〈그림5-1〉 녹색친구들 사회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95
〈그림5-2〉 서울의료원 입원절차 안내	9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1인 가구, 비혼·독신, 동거커플의 증가, 이혼·사별·재혼 증가에 따른 이성애 혈연 가족 내부의 변동으로 대표되는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는 비단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이미 90년대부터 전형적이라고 여겨졌던 핵가족 모델의 규범력은 계속해서 약화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일생 동안 가족의 결성과 해체, 재구성을 반복하는 유동적인 생애모델이 이제는 보다 ‘정상’에 가까운 모델이 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6만여 명의 지지를 받고, 젊은 층 사이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SNS 해시태그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이러한 가족 변동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형태의 가족 구성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제도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의 가족 변동은 오랜 기간 지속된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적 불안정성 증대와 맞물려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단지 새로운 가족 형태에 대한 욕구나 가족제도로부터 이탈하는 청년층의 저항으로 환원할 수 없다. 경제적 곤란, 취약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한 ‘가족 해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배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무연고 사망자는 총 2,539명으로 작년 대비 27.5%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는 특히 60대 이상 노년층 남성에게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제도로부터 배제됐던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뿐 아니라 청년과 노년 세대 전반에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가족 관계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안전과 생존을 위협받는 시민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정부의 책임 또한 묻고 있다.

이에 자의든 타의든 기존의 가족제도로부터 벗어나 취약한 상태에 놓이거나 ‘정상

1) 뉴스에이. 2019.3.22. “김승희 의원, ‘2018년 시도별·연령대별·성별 무연고 사망자 현황’ 공개 - 무연고 사망자 급증, 2018년 2,500명 돌파” <<http://www.new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3>>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등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의 삶에 주목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를 시급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앞서 살펴본 가족 변동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이다. 서울시 거주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2007년 2.76명에서 2017년 2.45명으로 감소하였고, 1인 가구는 2016년 기준 전체 가구의 30.1%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²⁾ 이러한 가족 변동은 서울시가 행정의 근간으로 삼은 시민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은 이성애 가족의 구성원, 즉 '혈연중심 핵가족의 울타리에서 기본적인 보호와 돌봄을 받는 자'라는 가정에 기초한 서울시의 보건·복지·주거·안전·문화 등 제반 정책은 오늘날의 가족 변동 속에서 필연적으로 공백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에 조응하여 그동안 선도적인 정책들을 시행해 왔으며, 그런 점에서 향후 서울시 행정 전반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6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는 미래지향적 가족정책의 비전과 가치를 명시하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매우 독보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사회적 가족'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하며, 서울시는 '사회적 가족 도시' 즉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조례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이상의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 조례의 문제의식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서울시, 2019. 도시정책지표조사(2018년 기준)(<http://data.seoul.go.kr/dataList/datasetView.do?infd=OA-15565&srvType=F&serviceKind=1¤tPageNo=1>)

2. 연구의 목적

첫째,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서울 시민들의 가족 경험과 생활상의 고충, 정책 요구를 파악한다. 혼인·혈연 중심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해 어떤 차별과 불편, 고충을 경험하고 있는지, 가족 지위 인정 및 정부 지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제도 설계 및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한다.

둘째,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정비 및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1인 가구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나아가 다양한 형태로 사회적 가족을 꾸려나가는 시민의 삶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한 서울시 행정 모델 전반의 쇄신 방안, 지방 의회의 발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제시한다.

3. 연구 내용

위의 연구 목적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변동 속에서 왜 사회적 가족에 대한 법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한지 밝히고, 사회적 가족 관련 기존 조례 및 정책을 분석하고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한다.

둘째,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어떻게 가족을 형성하며 서로 돌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으로 인해 어떠한 차별과 불편을 경험하였는지, 사회적 가족을 구성·유지·해소의 과정에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파악한다.

셋째, 사회적 가족과 유사한 파트너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해외 국가 지자체의 법령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정리한다.

넷째, 사회적 가족 지원 및 지위 보장을 위한 서울시 조례안을 제시하고, 사회적 가족 도시 조성 및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정책을 제언한다.

다섯째, 사회적 가족의 삶, 한국사회 가족 변동을 반영한 서울시 행정체계 개선방안 및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한다.

4. 연구 방법 및 추진절차

본 연구의 주요 방법 및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조례 및 정책·사업 분석

- 서울시 가족 관련 조례 분석
- 서울시 가족 관련 정책·사업 분석
 - 서울시가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 현황
 - 서울시 소속 및 관계 기관 현황
 - 서울시 산하 병원 현황
 - 서울시 중장기 가족정책 및 가족 관련 단위 사업 분석 등

나. 심층 면접조사

- 조사대상
 - 비혼 동거커플, 비혈연 생활공동체(청년, 노인, 비혼여성, 장애인 등) 등 다양한 사회적 가족 구성원 15명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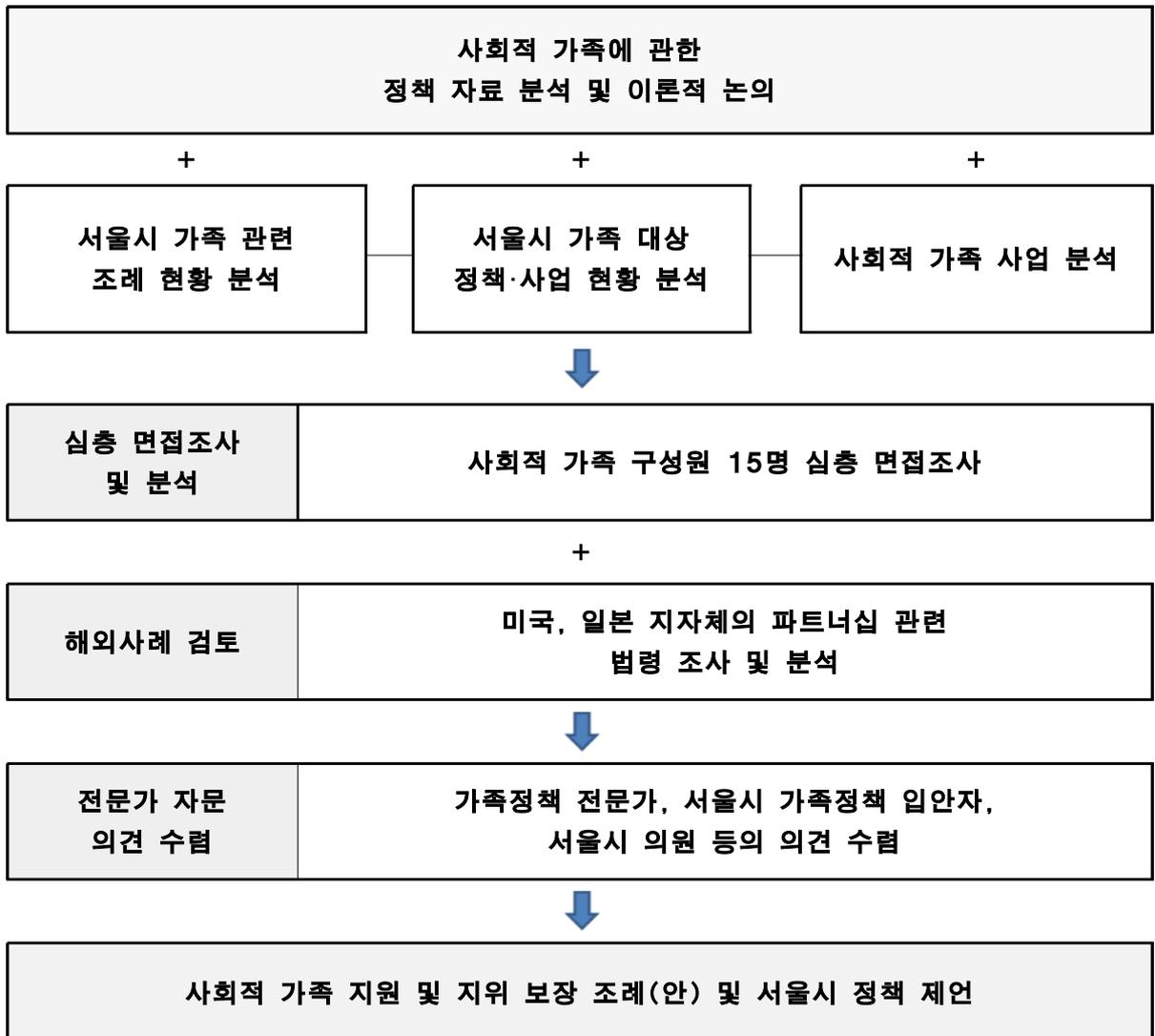
〈표1-1〉 개별면접 질문내용

구분	질문내용
가족 구성 내력과 현재 가족의 구성 동기	- 가족 구성 내력 - 외로움, 소속감, 나이 들, 친밀성 욕구, 정체성 등
현재 가족의 삶이와 가족실천 방식	- 다양한 가족실천 방식 - 관계로 인한 일상의 변화
가족형태와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	- 법, 제도상의 차별 경험 내용 - 생활공간(일터, 공공기관,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차별 경험 내용 - 사회관계(원가족, 친족, 지인, 이웃 등)에서의 차별 경험 내용
차별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 가족구성권 관련한 차별 해소를 위해 필요한 정책
가족 구성의 의미와 사회적 가족 도시의 가능성	- 현재 내 가족의 의미 - ‘사회적 가족’과 ‘사회적 가족 도시’의 의미와 기대

다. 해외사례 검토

- 미국 사례
 - 샌프란시스코, 웨스트 할리우드 도매스틱 파트너십 관련 법령
- 일본 사례
 - 도쿄도 시부야구, 세타가야구 조례, 요강

〈그림 1-1〉 연구 수행 체계



5. 보고서의 구성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배경, 연구 목적, 연구 내용 및 수행 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두 번째 장에서는 사회적 가족에 대한 정책적·이론적 논의 검토 결과를 정리하였다. 왜 사회적 가족에 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 등장하였는지, 기존 조례·정책에서 사회적 가족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가족의 정의와 유형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장에서는 심층 면접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족의 실태와 차별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 장은 크게 (1) 사회적 가족의 형성 과정, (2) 구성원의 가족실천과 생활돌봄, (3)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으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네 번째 장에서는 사회적 가족과 유사한 지위를 보장하고 있는 해외 법률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장은 결론 및 시사점으로, 앞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 사회적 가족 지원 및 지위 보장을 위한 서울시 조례(안)과 (2) 사회적 가족 도시 조성 및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3) 서울시 행정체계 개선 및 지방의회 대응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왜 ‘사회적 가족’인가?

1. 생애변동과 사회적 가족의 출현

가. 생애변동으로 인한 사회적인 ‘불안’의 증대

‘서울은 안전한가?’의 조사 결과에서(조권중 외, 2015), 서울 도시에서 경험할 위험 요소 중에서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고령화, 가족해체, 노후불안과 연결되는 생애주기 관련 위험(81.4%)이 가장 높고, ‘사회생활 관련 위험’(70.5%), ‘경제생활 관련 위험’(70.1%)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애주기 관련 위험’이나 ‘사회생활 관련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층별 차이 없이 고르게 높았다.

생애주기 관련해서 불안감이 높은 것은 혼인·혈연 가족을 중심으로 출생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삶의 미래를 계획해 온 방식의 생애변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불안감은 가족 단위로 생존을 맡겨 온 가족질서 내부에서 기인하며,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부양과 돌봄, 교육, 주거, 교육의 책임 모두를 가족에게 전가해온 제도적 가족주의의 위기와 연결된다.

제도적 가족주의란 개인의 자율성이나 존엄보다 가족의 유지가 우선인 이데올로기를 넘어서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에 기반하여 작동해온 한국의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의 토대를 의미한다. 또한, 강력한 가족중심주의에 기반해서 복지제도뿐 아니라 교육, 주택, 일자리, 심지어 병수발조차도 가족이 중심이 되어 해결해야 하는 삶의 책무를 강제하는 것이며(장경섭, 2018), 혼인·혈연을 넘어서 삶의 안정망이 취약한 사회를 드러내는 것이다.

혼인·혈연이 더 이상 당연한 삶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가속화되어 왔으며, 2000년대부터의 만혼, 1인 가구의 증가는 전형적인 가족 가치관의 균열과 결혼가족을 중심으로 한 친밀적 결속력이 유연해지는 시대와 연결된다(김혜영, 2012). 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의미의 재구성은 결혼을 할 수 없는 계급 양극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위기에 기인한 것일 뿐 아니라(유홍준·현성민, 2010), ‘남성=생계부양, 여성=가족돌봄’을 기준으로 한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핵가족의 삶을 이상화하며, 정상화해온 사회적인 가치의 ‘위기’와 변화를 반영한다(송다영·정선영,

2013).

혼인·혈연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온 제도적 가족은 오랫동안 상당한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가족 단위로 맡겨진 생존의 결과는 OECD 노인 빈곤 1위라는 참담한 결과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 내의 돌봄을 전담해온 여성 노인의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가족에게 폐를 끼치는 존재로 간주되거나 사회에서조차 ‘존엄’하지 않은 존재로 내몰리고 있다(최현숙, 2018).

지금까지 이상적인 가족 모델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기반해서 여성은 가정에서 돌봄 제공자이자 동시에 남성에게 의존되는, 가정에 종속되는 존재로 간주 되어왔고, 남성생계부양자가 없는 가족은 결손가구이거나 국가에 의존하는 의존자로 규정해 왔다(송다영·정선영, 2013). 또한, 성소수자나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소수자들은 사회에 폐가 되는, 사회적인 삶에 적합한 기능을 ‘상실’한 존재로 사회에서 뭍이 없는 존재로 주변화되어 왔다(김순남, 2019).

생애변동으로 인한 ‘불안감’의 증대는 단순히 경제위기로 인한 삶의 위기나 또다시 기존의 가족질서에 대한 복원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혼인·혈연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안정망을 우리 사회에 요청하고 있다. 그것은 자율적인 개인이 ‘선택하는’ 관계들에 대한 존중과 원가족을 넘는 새로운 공동체의 유대감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원가족에게 종속되지 않는 주거, 고용, 의료 등에서 평등한 ‘사회적’인 삶이 가능한 조건을 필요로 한다.

나. 가족의 고립화와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

보건사회연구원의 2016년 보고서에 따르면, 20~64세 1500명 중에서 691명이 “원가족과 결혼 관계에서 가족위기를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가족위기의 내용은 “가계 파산, 구성원의 자살, 재난 등”이며, 무엇보다 가족 안에 의존할 사람이 없고 (32.7%), 물적 자원이 부족하며(30.7%),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는 것 (30.7%)으로 나타났다(김유경 외, 2016). 통계청 조사에서 최근 5년간 가족·공동체 지표에서 가족관계 만족도와 지역사회 소속감은 50~60% 수준이고 사회적 고립도는 30% 전후로 높은 수준이다(통계청, 2019).

가족 안에 의지처가 없다는 것은 가족을 단위로 생존을 맡겨 온 가족제도의 위기를 드러내며, 삶을 지지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부재와 연결된다. 한국과 유사하게 가족

의존형 복지국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조사 결과에서도 혈연가족 외에 시민적인 유대감을 갖은 관계망이 극히 취약함을 보여준다. “병에 걸렸을 때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작업을 혼자 할 수 없을 때, 동거가족 이외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별거 가족·친지’로 응답한 비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 반대로 ‘친구’로 응답한 사람은 스웨덴 49.1%, 미국 48.0%, 일본 21.1%로 가장 낮았다. 또한, 이웃으로 응답한 결과는 독일 45%, 스웨덴 30.1%, 일본 15.8%로 매우 낮았다(후지모리 가츠히코, 2018).

이렇듯, 혼인·혈연 중심의 복지체계와 관계망은 지역과 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삶의 안정망을 만들어 가는 것에 취약한 현실을 드러내며, 원가족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 결국, 경제위기나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안전한 삶의 장소로서의 가족 기능은 날로 취약해지는 현실을 반영하며, 의지할 곳은 그래도 내 가족뿐이라는 사회적인 이상은 사람들의 실제 삶에서 체감되지 못하는 사회적인 간격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삶을 가족에게 일임하는 방식 자체가 가족의 유대를 강화하기보다 약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원정, 2013).

결국, 혼인·혈연을 중심으로 한 삶의 유대와 생존의 방식은 가족의 고립화로 이어지며, 기존 가족을 넘어서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관계의 단절은 삶의 불안정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인 삶의 가능성은 가족의 유지가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불평등과 차별의 해소이어야 하며, 개인의 삶에서 경험하는 위기를 이룬바 ‘위기가족’이나 ‘취약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시민 모두의 보편적인 권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성애 결혼·혈연 외곽에서의 삶이 ‘실패’하거나, 낙인의 대상이 아니라, 이성애 결혼·혈연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사회가 ‘실패’한 사회임을 보여주며, 사회를 다시 만드는 시민적인 삶의 유대와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실천적인 삶을 주변이 아니라 중심적인 가치로 재배치해야만 함을 보여준다.

다. 혼인·혈연 중심의 ‘가족’ 가치에 대한 변동

‘가족’이라는 의미는 하나의 가치로서 따라야 하는 모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가족적인’ 정의는 다양하며, 개인들은 여러 유형의 가족들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가 상정하는 정상적인 가족, 일탈적인 가족이라는 이원화된 구분을 넘어서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족의 의미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 등장하는 시대이며, 혼인·혈연가족이 당연한 삶의 안식처가 아니라 지금 맺고 있는 관계가

나의 삶에서 어떤 의미인가를 질문하는 친밀성의 변동으로 이어지고 있다(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2005).

생애변동 속에서 “가족’은 누구인가?”는 더 이상 당연하지 않으며, 다양한 관계에 대한 수용도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 결과(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에 따르면, 응답자의 66.3%가 ‘혼인·혈연에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할 경우 가족으로 인정한다’고 했으며, ‘함께 살지 않아도 정서적 유대를 가진 친밀한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에 48.5%가 동의했고, 20대의 경우 58.1%로 그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응답자의 67%가 동의했고, 비혼동거에 대해 20대(89.7%), 30대(81.0%), 40대(74.3%)의 순으로 높은 동의 비율을 보였다(아시아경제, 2019.05.26). 위의 결과는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돌봄을 통해서 삶의 의지처가 되는 관계들 또한 기존의 혼인·혈연가족형태를 넘어서 새롭게 재구성되는 유동적인 ‘가족’의 의미들과 연결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특히 제도적인 가족주의에 거리두기 하는 여성들의 “탈가족화”의 흐름 뿐만 아니라(장경섭, 2011), 1인 가구, 동거, 결혼, 이혼 등이 더 이상 생애에서 분절적인 경험이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서 유동적, 개방적으로 경험되고 재구성되는 관계양상의 다변화와 연결된다. 무엇보다, 결혼을 둘러싼 태도의 변화는 혼인 건수가 1990년 399,312건에서 2014년 305,507건으로 감소한 것에서 드러나며, 또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2008년 68%, 2010년 64.7%, 2012년 62.7%, 2014년 56.8%) ‘안 해도 상관 없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 처음 40%를 넘어선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사회조사 보고서, 2014).

이렇듯, 결혼을 둘러싼 가치 변화는 기혼여성들이 바라보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에서도 나타난다. 2018년도에 조사에서, 기혼여성들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으로 ‘반드시 해야 한다’가 9.0%, ‘하는 편이 좋다’가 30.4%에 그쳤지만, 결혼에 대한 유보 또는 부정적 의견이 60.1%로, 2015년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소영 외, 2018).

또한,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결혼을 중심으로 한 관계만이 아니라 결혼 외곽에서의 다양한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이러한 생애변동과 관계성의 변화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2014년도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동거, 입양, 한부모, 재혼, 동성애 등 개인의 선택과 취향에

따라 가족구성의 방식이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매우 그럴 것이다(33.9%)’, ‘대체로 그럴 것이다(55.9%)’라는 의견이 높은 것은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혼자 살기와 함께 살기의 방식에 대한 유연한 사회적인 흐름을 보여 준다.

이러한 가족을 둘러싼 가치의 변화는 가족정책의 대상이 저출산 정책으로 좁혀지는 방향이나, 인구를 재생산하기 위한 ‘기능’으로 시민들의 삶을 규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반영한다. 또한, 결혼을 통한 출산의 대상으로 청년세대를 호명하거나 결혼하지 못한 ‘삼포 세대’의 어려움을 결혼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결혼 외곽의 삶을 임시적이고 고립된 삶으로 국한하는 사회를 반문한다. 핵가족 대 1인 가구의 구분, 청년세대 대 노년세대, ‘정상가족’ 대 ‘위기가족’, ‘취약 가구’의 구분이 아니라 생애과정에서의 다양한 삶의 불안정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이 필요하며,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시민적인 유대와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관계망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해서, 삶의 안정망을 확보하는 가족정책이 혼인·혈연이나 1인 가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성에 연루되어 있는 개인으로 확대 되어야 하며, 사회정책(주거정책, 사회보험제도, 노동정책)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획일화된 개인이 아니라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여부, 질병,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개인 및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차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19).

다양한 관계적 친밀성에 대한 욕구는 더 이상 근대적인 가족형태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공간에서, 한 지역에서, 친밀한 관계망으로 이루어진 관계의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상봉, 2016). 생애 모델의 다변화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평등의 관점, 동등한 시민권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혼인·혈연 가족을 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삶에 의지처와 ‘사회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가족’의 출현은 사회의 ‘위험군’이나 ‘결핍’의 대상이 아니라, 고립되고 폐쇄된 가족, 사회를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와 공동체의 토대로 인식되어야만 한다.

라. 혼인·혈연을 넘어 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지금까지 가족이나 공동체는 사회적인 것과 분리된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고,

공적인 삶과 분리된 안전한 사적인 장소이며 애정이나 친밀함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관계로 규정되어 왔다(실비아 페데리치, 2013). 가족은 공적인 것과 분리된 사적인 것이 아니며, 평등한 공적인 안정망이 부재할 때 가족은 반사회적인 것과 연결되며(미셸 바렛·메리 맥킨토시, 2019), 자신의 삶을 지지하는 사회적인 삶의 자리를 갖지 못한 존재들에게 사적인 삶의 장소는 상실할 수밖에 없다(김현경, 2015). 핵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고립, 공동체와의 단절, 사회적 유대로부터의 폐쇄성에 대한 대안은 기존 가족의 복원이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으로 가족의 변동을 바라보는 태도를 필요로 한다(김희경, 2017). 삶의 고립은 원가족이 없기 때문에 ‘무연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원가족 외에 ‘잘 살 수’있는 사회적인 토대가 부족할 때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양한 ‘사회적 가족’들의 등장은 또 다시 기존 가족과 동일한 ‘가족’으로 환원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에게 일임되어 온 돌봄이나, 가부장제에 기반한 성별화된 역할,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해소, 가족과의 단절을 야기하는 부양의무제의 폐지 등을 요구하는 것이며, 새로운 사회적인 삶의 안정망을 만들어 가는 주체와 연결된다.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2005)은 후기근대의 가족변동의 핵심은 결혼이나 부모에게 귀속되는 삶으로부터 자기만의 독자적인 삶에 대한 욕구와 동시에 새로운 결합과 친밀함에 대한 동경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인 가족’의 등장은 관계성과 분리된 개인화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관계를 구성하고자 하는 관계적 개인화와 연결되며, 동시에 그러한 관계가 차별받지 않는 존엄한 사회를 만들어 내하고자 하는 흐름과 연결된다.

사회적 가족의 등장은 오늘의 1인 가구가 내일의 동거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인생에서 어느 시점까지 핵가족 안에서 삶을 살아온 누구나 그다음의 인생과정에서 친구와 가족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시대를 의미하며, 또한, 성소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 공동체의 유기적인 확대가 가능함을 제기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생활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가족을 구성할 권리’라는 개념은 가족에게 일임되었던 짐을 사회가 나누는 것이며, 가족단위로 생존을 맡겼던 사회제도의 변화 속에서, 개인들이 상호의존적으로 만들어 가는 관계적 친밀성이나 관계적 생존의 의미들을 중요한 ‘사회적’인 가치로 의미화하는 것이다.

생애 모델의 다양화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들의 실천을 위기를 양산하는 것

으로 간주하거나,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에 보호의 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가족을 공공성의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시민권에 대한 논의와 연결하는 것을 가로 막는다. 가족의 변화는 모든 사회성원의 삶과 가치체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김혜영, 2012), 생애모델의 다변화 속에서 다양한 관계를 평등의 관점, 동등한 시민권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첫 출발이 될 것이다.

2. 기존 사회적 가족 개념의 의의와 한계

가. 다양한 관계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는 사회적 가족 도시를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회적 가족’의 개념만을 제시할 뿐, 핵심적인 내용은 1인 가구의 지원에 한정된다.

이 조례에서 설명된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또한 이 조례에서 ‘사회적 가족 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가족’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분리된 공간 생활을 누리면서 공용 공간에서 가족처럼 생활하는 공유주택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거나,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혈연중심의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사회적 관계로 맺어지는 가족을 ‘사회적 가족’(변미리 외, 2015)으로 정의된다.

2019년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한 첫 종합대책 발표하는데, 목표는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 도시 건설”이라고 밝히고, ① 다양한 소통과 사회적 관계망 확대를 활기찬 일상 유지 ② 상호 나눔과 돌봄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 ③ 안전하고 자립적인 삶의 지원 및 사회적 존중 인식 확산을 목표로 하였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추진, 커뮤니티 공간 조성, 소셜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자기 돌봄 및 생활역량 강화 등이다.

그러나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는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는 시민들의 가족 경험과 생활상의 고충과 차별, 정책 요구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

나. 사회적 가족이 관 주도형으로 상상되는 방식

‘사회적 가족’이 관 주도형으로 상상되는 방식은 최근에 정부가 주도하여 지역에서 확산되었던 “치매보듬마을 사회적 가족 만들기 사업”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노인관리사업으로 보건소가 추진하는 것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결연시키는 방식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돌봄이란 치매노인과 일흔 맺기, 셀카 찍기, 레크리에이션, 연락처 교환, 노리개 만들기, 카네이션 증정 등 이벤트 행사에 불과하다.

〈그림2-1〉 ‘사회적 가족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사진 자료



600 x 450
매화초등학교와 함께하는 올진...
m.dkilbo.com



영양군, 치매보듬마을 사회적 가족만들기 행사 가...
dgy.co.kr



영양군, 치매보듬마을 사회적가족 만들기 행사 - 영양군
yng.go.kr



정도군, 치매보듬마을 사회적 가족 만들기 ...
newsway.kr



선산보건소, 치매보듬마을 사회적 가족 만들기 행...
m.hanulnews.com



경북도, '사회적 가족만들기 프로젝트' 본격 추...
m.hanulnews.com



주간현대「치매보듬마을」사회적가족 만들기 ...
m.hanulnews.com



1인가구 그늘... 사회적가족, 공동...
m.hanulnews.com

3. 사회적 가족의 정의 및 유형 규정

가.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가족’의 의미

본 연구는 이성애 핵가족의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가족 실재를 ‘사회적 가족’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이 ‘사회적 가족’들이 당면하는 사회적 현실을 조사하고자 한다.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족 개념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생활공동체”를 말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되, 생계를 취사와 취침에 한정하지 않고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살림 즉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등을 공유하는 행위로 그 범위와 의미를 확장하고자 한다.

나.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가족’의 유형

본 연구는 조사의 수행을 위해 사회적 가족을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 **동거 사회적 가족** :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한 유형으로 이성커플과 퀴어커플뿐만 아니라 2인 친구 가족 등이 이에 속함
-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 협동조합주택이나 셰어하우스, 그룹홈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살아가며 사회적 가족을 구성한 유형
-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 : 공동 주거의 방식은 아니지만,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가족의 소속감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적 가족

Ⅲ. 질적 연구 분석 : 사회적 가족 실태와 차별 사례

1. 조사방법과 연구참여자

가. 조사방법

본 연구는 사회적 가족의 실태와 차별에 대한 당사자의 경험을 맥락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개별 심층면접을 수행하는 질적 연구로 수행되었다. 사회적 구조에 의해 총체적으로 경험되는 배제와 차별의 경험은 당사자의 생생한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의미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서울시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조례”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족의 개념인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생활공동체”라는 규정을 넘어 “경제적 협력뿐 아니라 일상생활, 가사, 소비 등의 살림을 공유하여 생활돌봄과 서로돌봄 등을 상호적으로 주고받는 행위로 살아가는 정서적 공동체”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확장된 개념 정의에 기반하여 연구 대상 그룹을 3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구참여자 그룹은 총 3그룹으로 첫째,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한 유형으로 이성커플과 쿼커플뿐만 아니라 2인 이상 친구가족 등이 포함되는 동거 사회적 가족, 둘째, 협동조합주택이나 세어하우스, 그룹홈 등에서 여러 세대가 모여 주거를 같이하며 살아가는 주거공동체 지향 사회적 가족, 셋째, 공동 주거의 방식은 아니지만,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돌봄을 수행하며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때때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중첩되기도 하며, 무엇보다도 생애과정 내내 하나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궤적에 따라 움직이고 변화할 수 있는 잠정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전제를 갖는다.

연구참여자들은 이 3가지 그룹에 속하되, 다양한 가족형태와 다양한 연령대가 고루 포괄되어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삶의 다양한 맥락과 가족실천 그리고 복합적인 차별과 배제에 대한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참여자의 특성에 유의하여 섭외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현황은 <표3-1> 과 같다. 총 15명이 참여하였고, 이들은

사회적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구성원들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면접자들은 전형적인 ‘정상가족’ 프레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대안적인 가족구성권과 가족실천에 관해 연구와 사회 활동을 개진하고 있는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지식뿐만 아니라 실천적 측면에서도 이 이슈를 민감하게 다룰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별면접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가지고 우선 ‘사회적 가족’의 개념을 공유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인터뷰 질문을 각각 작성하여 제시하도록 하였다. 토론과정을 거쳐 공통적인 요소와 개별적인 요소를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적 가족의 구성과정, 사회적 가족의 의미, 사회적 가족의 가족 실천과 서로돌봄, 사회적 가족의 차별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지를 완성하고 인터뷰를 시작하였다.

개별면접은 하반기에 진행되었으며, 연구참여자에게 연구목적과 연구참여자로서 가지는 권리를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아 녹음하였다. 인터뷰에는 대략 2시간 내외가 소요되었고, 녹음된 인터뷰는 녹취록으로 옮겨졌으며, 이렇게 텍스트화된 녹취록을 질적 분석하였다. 분석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으며 의미가 되는 단락으로 나눈 후 관련성이 있는 개념끼리 묶어 개념의 주요 영역과 핵심 주제를 도출하는 주제분석으로 진행했다.

〈표3-1〉 연구참여자 현황

구분	사회적 가족 유형	나이	거주기간	거주형태	특이사항
사례 1	동성커플 동거	30대	약 7년 6개월	월세	일상적으로 밥먹는 식구(친구)1명 더함
사례 2	동성커플 동거	30대	약 6년	월세	독일에서 동성결혼 후 한국 이주커플
사례 3	동성커플 동거	30대	약 5년 9개월	월세	-
사례 4	이성커플 동거	30대	6년	전세	-
사례 5	이성커플 동거	40대	약 13년	전세	-
사례 6	이성커플 동거	20대	1년	월세	-
사례 7	친구 동거	50대	약 21년 2개월	자가	2인 여성
사례 8	친구 동거	30대	약 6년	월세	2인 여성

사례 9	친구 동거	20~30대	약 5년	다가구주택 월세	3인 여성
사례 10	공동체 지향 (1인 가구)	30대	약 9개월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회주택)	-
사례 11	공동체 지향	50대	3년	하우징쿱 주택협동조합	10세대 공동체 주택
사례 12	공동체 지향 (커플과 친구)	20대	자립한 지 3~4년	월세	중3 때 가출 현재 방 2개, 4명
사례 13	네트워크 지향 (장애 여성 1인 가구)	30대	24살에 독립 후 1인 주거	현재 자가	-
사례 14	노년커플 동거	70대	15년 (중간 2년 공백기)	자가	사별 후 파트너 만남 주 3일은 각자의 집 주 4일은 여성의 집
사례 15	동성커플 동거	20대	3년	협동조합 임대주택	-

나. 연구참여자

인터뷰에 참여한 총 15명의 연구참여자(15명)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동거한 지 약 7년 되는 퀴어커플로서 각각 바이섹슈얼 정체성과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짐. 같은 동네에 친구가족 1인을 식구로서 정의하고, 함께 밥 먹는 일상을 공유하며 느슨한 방식으로 생활돌봄을 하고 있음. 단체의 반상근 활동가였던 참여자는 연애의 감정뿐만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정을 겪으며 동거하기로 결정함. 최근에는 파트너가 자유로운 삶을 찾기 위해 안정적이었던 직장을 퇴사한 상태여서 경제적 부양의 무게중심이 다소 변동됨. 집의 보증금은 파트너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하고, 생활비 통장이 있으며 소득의 정도를 반영하여 2:1의 비율로 각출하여 식비와 공과금을 분담함. 참여자는 공동저축도 하고 대출금도 함께 내는 공동경제활동을 원했으나, 파트너가 동의하지 않아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여성주의 가치를 지켜나고자 하는 가치관은 서로 일치하지만, 노후 계획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가짐. 가사분담은 예민한 지점이 다름을 인정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반영하여 분담하면서 생활하고 있음.

2)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는 동거한 지 약 6년 되는 퀴어커플로서 레즈비언 정체성을 가짐. 독일에서 만나 동거하고 결혼식을 올렸으며, 파트너십 등록을 통해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고 살아왔음. 최근에 한국으로 귀국하면서 이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독일에서 안정적이었던 관계가 흔들림을 경험함. 독일에서는 공동명의로 가능하므로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하고 반려묘를 함께 키우는 소소한 일상의 생활을 살았지만, 최근에 귀국한 한국에서는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은행의 공동 계좌 개설이 불가능해져 공동의 경제생활이 어려워짐. 이에 따라 개별적인 경제적 역량에 의해서 관계가 불평등해지는 상황이 발생해 파트너와 갈등을 겪음. 가사를 처리하고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서 자신보다 약한 파트너와 현재 갈등을 경험하고 있고, 이를 대화로 풀고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 중임.

3)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동거 한지 약 7년 되는 퀴어커플로서 게이 정체성을 가짐. 인터뷰에 커플 2인이 모두 참여함. 주거 공간이 아닌 곳에서 열악하게 살았던 파트너가 '집'다운 곳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 계약금과 보증금을 함께 마련하여 집을 구해서 동거를 시작함. 가사를 같이 하며 집밥을 즐기는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음. 이들은 젊은 20대 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서로의 영향을 받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계획했던 유학을 가지 않고 독립적인 프리랜서 인생을 선택함. 가사노동은 서로 예민한 부분을 맡아서 분담함. 전형적인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동거 기간이 긴 커플이 흔치 않은 게이 커뮤니티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동반자 관계를 맺고 사는 대표적인 커플임. 장기적인 관계가 무심함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며, 커플이 되면 커뮤니티를 떠나는 다수 사례의 반례가 되도록 커뮤니티 활동과 관계의 균형을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4) 연구참여자 4

연구참여자 4는 동거한 지 6년 차가 되는 이성애 커플로서, 쉼터를 거쳐 대학 시절부터는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친구와 함께 살아왔음. 주거비가 비싼 서울에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살고자 파트너와 함께 돈을 합쳐 동거를 시작함. 하숙생처럼 잠시 머무는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장기적인 동반자 관계를 원했고,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제대로 항변하기 어려운 불리한 1인 세입자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음. 그러나 참여자는 '가족'의 이름으로 감내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치 않아 비혼을 선택했고, 결혼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온 파트너와는 설득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비혼에 이룸. 생활비는 공통의 통장 없이 공동으로 해왔지만, 서로의 소득 유무와 수준에 따라 서로 힘들 때를 배려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분담함. 파트너가 대출한 전세금과 참여자의 보증금을 합쳐 전세로 살고 있음. 전세 명의는 파트너이고 은행대출의 이자는 함께 공동부담함. 가사노동은 서로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분담하되, 주로 주중은 각자 밥 먹고 설거지하고 각자 방에서 잠자고, 주말에 서로의 생활을 보고하고 공유하는 방식임. 타인에 대한 감각이 생겨 가사노동에 대한 다툼은 많이 줄었음. 계약적인 참여자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고려하여 파트너가 직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최근에는 가족으로의 인식이 더 많이 생기면서 관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고민하는 중임.

5) 연구참여자 5

연구참여자 5는 40대의 이성애 커플로서, 동거의 연수는 약 13년임. 커플 2인이 인터뷰에 모두 참여함. 참여자 1(남성)이 당시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연애 감정 이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해서 원가족에게 참여자 2(여성)를 결혼할 대상으로 소개하고 부모로부터 전세금을 지원받아서 동거를 시작하게 됨. 현재는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주택의 명의는 참여자 2이고, 함께 대출금을 갚고 있음. 가사노동은 자연스럽게 참여자 1이 하고 요리와 가계부관리를 참여자 2가 하는 것으로 분담했으나 주로 덜 바쁜 사람이 필요한 가사를 해내는 방식임. 외부에는 결혼한 커플로 알렸으며, 참여자2는 사실혼 증명을 통해 파트너를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등록하고, 직장에 청첩장을 따로 찍어 신혼 휴가를 신청하여 다녀옴.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요구받는 전형적인 아내와 며느리 역할은 하지 않고 거부하며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평등한 관계로서 살아가고자 함.

6) 연구참여자 6

연구참여자 6은 20대의 이성애 커플로, 파트너와 동거한 지 약 1년 가까이 되었음. 파트너와 각자 자취를 하다 경제적인 비용과 정서적인 관계의 필요 때문에 같이 살게 됨.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고 난 후, 정서적인 지지를 일상적으로 받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말하며, 연애할 때와 다르게 나의 편이 생겼다는 안정감을 느낀다고 말함. 그러나 동거에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이로 인해 사회로부터 직접 차별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있음. 우편함에 파트너와 자신의 우편물이 섞여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고민하게 된다고 털어놓음. 동거를 알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동거하고 있으니 결혼을 해야지' 하는 권유를 자연스럽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그러나 참여자와 파트너 모두 결혼 의지가 없는 상태임. 여전히 결혼을 권하는 사회 풍토에 동의하지 않으며, 대안적인 삶의 방식이 될 수 있는 생활동반자법 필요성에 매우 동의함.

7) 연구참여자 7

연구참여자 7은 친구가족으로 동거하며 가족을 이룬지는 약 20년이 됨. 같은 공간에서 만나 친해졌고 집이 필요해서 함께 살게 됨. 처음에는 3명의 친구가 함께 살게 되었으나, 이 중 1명이 외국으로 나가면서 현재 2명이 살고 있음. 참여자가 주로 빨래와 청소를 담당하고, 동거하는 친구가 요리를 담당함. 이 가사분담은 서로 싫어하는 것을 고려하여 해주는 방식임. 생활비는 월 13만 원씩 모으는 생활비 통장이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공동경비에 씀. 먹는 것과 그 외로 필요한 것은 각자 돈으로 하는데 분담을 정해놓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게 조율하며, 이를 명확하게 계산하거나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관계라고 밝힘. 통장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일상 생활을 나누고 고민을 함께 하는 삶을 살면서 풍부해진 삶에 만족을 느끼지만, 노후 고민과 공동으로 장만한 주택에 대한 '명의 없음'에 대해서 일말의 걱정이 없지 않음.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했기 때문에 형제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같이 사는 친구에 대해서는 가족으로서 돌봄의 책임,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8) 연구참여자 8

연구참여자 8은 친구가족으로, 함께 동거한 지는 약 7년이 됨.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동기가 가장 크게 작동하여 함께 살게 됨. 참여자는 프리랜서이고 같이 사는 친구는 직장인이어서 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서로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서 경제적으로 의존해있는 원가족보다 훨씬 강한 감정적인 친밀도는 가지고 있음. 동거 생활에 대한 특별한 규칙은 없으며, 적당히 자기 것은 자기가 하는 방식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음. 또한 현재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 30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의존적인 상황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참여자가 느낀 우울감이나 친구의 ADHD 등 서로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정보를 나누며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함. 현재 친구와 함께 월세를 반씩 부담하고 있음. 친구랑 같이 살면서 당시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돌이켜 보면 같이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었고, 우정도 서로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충분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9) 연구참여자 9

연구참여자 9는 20~30대의 3인의 여성들이 함께 사는 친구가족으로, 동거의 기간은 약 5년 정도임. 대학에서 만난 친구로 둘이서 먼저 살다가 방이 3개인 집이어서 다른 친구가 들어와 3명이 함께 살게 됨. 생활규칙을 특별히 정하기보다는 살면서 조금씩 맞춰감. 각자의 방이 있고 공용공간이 있는 구조라서 개인적 공간이 보장됨. 다가구 주택으로 먼저 동거한 친구 2명이 보증금을 합하여 냈고, 다음 이사를 할 경우에는 각자 상황에 맞추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더 합하여 사용할 계획임. 월세는 나누어서 분담하고 필요한 공동경비는 3명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모아 사용함. 2명이 살았다면 공동생활의 유지 가능성에 대해 불안감이 다소 컸을 수도 있었겠지만, 셋이어서 안정적으로 살아왔고, 서로의 감정을 조정하고 예민하고 갈등적인 요소를 다루는 데에도 이점이 있다고 함. 모두 여성주의자로 관점도 공유하며 돌봄에 대한 감각을 갖추고자 노력함. 1인 가구로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고 있음.

10) 연구참여자 10

연구참여자 10은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공동체 임대주택(LH에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의 유일한 1인 가구 입주자인 동시에 임대주택 운영기관의 담당자임. 현재 이 공동체주택에는 2인 동거커플 3세대, 1인이 3명씩 모여 그룹이 된 3인 가구 3세대와 참여자 단독 가구 등 총 19명이 거주하고 있음. 원가족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돌봄의 관계망을 형성하며 살아가는 공동 주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주택 사업의 공급을 알게 되었고, 운영기관으로 응모하게 됨. 입주자들을 모집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차별 없이 살아가는 여성안심주택”임을 공지하여 결과적으로 열아홉 명의 페미니스트 식구라는 의미로 “식구팸”의 입주자 커뮤니티가 구성됨. 입주자들은 소통의 방식의 차이로 인한 문제를 여러 회의와 냉전기를 거쳐 조율하고, 공동 공간인 옥상에서 밥을 같이 먹거나 자발적으로 만든 소모임들을 통해 공동체성을 확장해 나감. 다양한 역할과 관계를 수평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주거의 안정성을 확보해가면서 돌봄의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관계망을 시도 중임.

11) 연구참여자 11

연구참여자 11은 연령대와 성별, 가구 형태가 다양한 사람들이 조합원이 되어 공동 주택을 지어 함께 사는 입주자로서, 어머니와 아내와 함께 입주하여 산 지 3년이 됨. 입주자들은 공동체주택에 욕구가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 토지 구입부터 함께 시작함. 1년 반 정도 한 달에 3번씩 만나 ‘공동체주택에서 살아가기’를 위한 여러 가지 쟁점을

토의하고 의사결정하며, 가장 낮은 단계의 느슨한 공동체를 일구어감. 참여자는 전세 이사 15회를 거쳐 처음으로 정주하게 되었고, 비로소 ‘내 집과 우리 마을’이라는 정서적 경험을 함. 핏줄로서 좁은 식구의 개념을 넘어 확장된 사회적 가족으로서 다양한 세대와 다양한 형태를 가진 가족들과 교감하고 교류를 나누며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사는 유대감을 만들어 감. 4층에 마련한 공유공간은 아이들의 활동공간이자 돌봄공간이 되고, 명절 때 방문한 가족친지들의 맞이방이 되기도 함. 정기적인 밥상모임을 통해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축적하고 있음. 참여자의 어머니는 참여자 부부가 맞벌이로 집을 비울 때도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이 느슨한 공동체와 지역 사회 안에서 생활하고 있음.

12) 연구참여자 12

연구참여자 12는 현재 파트너와 함께 동거하는 퀴어커플이며, 다른 친구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가족이자, 지역으로 확장되는 네트워크 방식으로 가족의 테두리를 확장하고 있음. 현재 파트너와 동거한 지는 3년 정도가 됨. 자립기금을 빌려와 현재 파트너와 함께 합하여 보증금으로 집을 얻었고 월세는 파트너가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 가출하거나 아직 독립이 준비되지 않은 20대 청년 2명과 함께 총 현재 4명이 살고 있음. 10대 때 가출하여 길거리와 쉼터에서 지냈던 경험이 있으며, 시설에서 완전히 자립한 것은 스무살 때로 4년 정도 됨. 쉼터에서 함께 지낸 청소년과 활동가들의 신뢰관계로부터 돌봄의 네트워크가 구성됨. 현재 참여자는 난곡 중심으로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과 일종의 서로돌봄 네트워크 안에 있음. 함께 밥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기 때문에 서로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을 ‘네트워크 가족’으로 지칭함. 참여자에게 파트너는 제일 비밀스럽거나 제일 가까운 원가족에 가까운 사람이고, 네트워크 가족들은 삶을 공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분신 같은 사람들임. 사회복지사가 되어 직접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 집을 만들어 그곳에서 받았던 돌봄을 나누어 주고 싶은 마음이 큼. 현재 이사를 앞둔 시기인데 원가족이 아닌 2명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 부정적이어서 걱정 중임. 아이를 좋아하는 파트너와 함께, 낯지 않아도 가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 않는 사회를 고대함.

13) 연구참여자 13

연구참여자 13은 장애 여성이며, 24살에 독립하여 1인 가구로 살아오고 있음. 현재 집은 자가이며, 네트워크 지향의 사회적 가족임. 20대 때 활동지원제도가 아직 마련되기 전에 원가족 안에서 자신을 지원해주고 돌봄을 제공할 가족구성원이 없어 사회적 활동에 큰 어려움을 겪음. 부모가 나이가 많은 편이기도 하여 그대로 있다가는

장애인 수용시설에 들어가게 될 것 같아 빨리 독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신뢰할 수 있는 활동가와 단체의 도움으로 독립을 할 수 있었음. 또한 활동가들이 자신을 믿어주고, 소중한 존재로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혈연으로 맺어진 원가족보다 나를 부정하지 않고 지지해주는 이들이 더 가족이라고 생각함. 언젠가 죽게 된다면 네트워크 가족인 지인에게 자신의 유품을 남기고자 함. 지역사회에서 휠체어 접근이 쉽지 않아 주민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보편적으로 이동에 제약이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의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함.

14) 연구참여자 14

연구참여자 14는 각자의 배우자를 사별한 후 만나, 약 15년 전부터 일주일에 3일간 혹은 4일간 참여자의 집에서 함께 살아온 노년 동거커플임. 참여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의미로 ‘사실혼 부부’라고 인지하고 있음. 한때 주민등록을 옮겨 참여자가 파트너의 동거인으로 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임대주택 분양을 위해 분리한 후 현재도 상속 등 경제적인 문제 등의 이유로 주소를 합치지 않음. 결혼하거나 완전히 동거하지 않는 이유는 각각 자녀와의 관계, 유산상속, 경제적 문제 등이 있고, 서로 살아온 각자 삶이 복잡하기 얽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참여자가 동거에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며, 외식 등 외부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파트너가 부담함. 동네에서는 모두 부부로 알고 있으며, 바깥에 나가면 당연히 부부로 인식하기 때문에 생활상의 불편은 전혀 없음. 파트너가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월급날에 함께 장을 보고 냉장고를 채워주거나 반찬을 해서 보냄. 같이 있는 날은 함께 식사하고 건강을 챙기며 운동도 함께 하고 여행도 같이함. 따로 있는 날은 각자 자녀와 친구를 만나면서 각자의 생활과 취미를 하고 지냄. 서로의 자녀들이 모임 때 함께 만나 가족 모임을 하기도 하며, 참여자의 자녀들은 파트너를 ‘아버지’로 호칭하며 원만한 관계임. 파트너 역시 참여자가 아플 때 병원에 동반하며 죽을 꿰어 주고 서로 보살피며, 서로 돌보는 존재가 되자고 약속함.

15) 연구참여자 15

연구참여자 15는 20대 동성커플이며, 약 3년 정도 협동조합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음. 파트너와 동거한 지 4년 차이이며, 사귄 기간은 6년 차임. 커밍아웃 이후 1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파트너와 함께 협동조합 형태의 주택이 생긴다고 하여 같이 들어갈 것을 결정함. 현재 유튜브에 자신의 일상과 연애(커플)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유튜버 일을 하고 있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사회에 조금씩 비취주고 싶다는 욕망이 함께 있음을 전술함. 최근 차별을 많이 느끼는 지점들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파트너가 다니는 회사에 결혼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점, 신혼 부부 전세자금 대출 역시 해당하지 않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꼽음.

2. 다양한 사회적 가족의 형성과정:사회를 다시 만드는 새로운 유대

김도현(2019)은 근대자본주의의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립개념을 질문하면서 ‘연립’이라는 의미를 설명한다. 이러한 연립의 의미는 의존적인 존재/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이분법적인 것을 질문함과 동시에 관계망을 통해서 새로운 유대감과 결속감을 만들어내는 ‘개인’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다. ‘사회적인 삶’의 가능성은 홀로서기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삶의 가치 속에서 형성되며, 혼인·혈연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유대를 만들어 가는 실천들과 만난다.

특히, “자립은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존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라는 (구마가야 신이치로, 김도현, 2019:299 재인용)것은 의존과 자립은 개인을 넘어서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가에 대한 사회에 대한 물음이며, 공생할 수 있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토대를 반문하는 것이다.

‘가족’을 둘러싼 기존의 사회적인 가치에 의하면, 여성은 가정이 삶의 자리이며, 남성에게 여성이나 자녀는 의존된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또한 노인, 성소수자, 장애인이나 사회적인 소수자들은 사회에 폐가 되는, 사회적인 삶에 적합한 기능을 ‘상실’한 존재이며 사회에서 뚝이 없는 존재로 주변화되어 왔다. 이렇듯, 의존은 모든 인간이 필수적으로 타자와 사회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는 의존되는 대상으로 여성과 사회적인 소수자들을 호명해 왔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 가족’을 핵가족과 구분되는 또 다른 모델로서의 가족 유형으로서가 아니라, 기존에 제도적 가족주의가 만들어 온 삶의 불안이나 삶의 고립을 넘어서 새로운 시민적인 유대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망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여러 유형의 ‘사회적 가족’의 등장은 기존 가족제도가 강제해 온 위계적이고 성차별적인 사회를 반문하면서 존엄한 개인되기의 과정과 만나고 있으며, 삶의 안정망을 서로 만들어 가는 관계적 생존과 관계적 친밀성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관계적 모델이 부족한 사회제도나 핵가족 중심의 모델을

비판하면서 추상적인 독립, 자립의 의미를 넘어서 관계를 통해서 시민적인 유대감을 만들어 가는 사회적인 삶의 가능성을 전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혼인·혈연 중심으로 주어진, 고정적인 가족의 의미를 질문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내가 맺고 있는, 나의 삶을 함께 만들어 가는 관계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는 주체이고자 하며, 선택적이고 유동적으로 가족의 가치를 재구성하고 있다.

가. 사회적인 존재로 ‘함께’ 살아가기

1) 핵가족 체계의 불안과 한계

기존 핵가족 체제로 엄청나게 늘어난 수명의 노년 시기를 절대 버틸 수가 없는 구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잘못되게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남한테 폐 끼치는 게 엄청나게 삶을 잘못 사는 것처럼 인식하는데 이미 불완전한 존재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그 상호호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관계나 이런 공동체를 이야기를 할 틈이 하나도 없어요. (사례 10-공동체_1인 가구)

가족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한 개인은 생애주기에서 여러 다른 형태의 가족들을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고, 이행의 과정에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가족구성권연구소, 2019). 또한, 삶의 위기는 모두가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핵가족 체계를 넘어선 공생적인 삶의 가치는 청년세대/노년세대의 구분이나 이성애 결혼 대 외곽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 삶에서 일정 기간 돌봄에 의존하는 “잠재적으로 의존인”(Eva Efdler Kittay, 2016)라는 점이 중요하다.

2) 결혼 아니면 1인 가구뿐인가?

일단은 되게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건데. 결혼이 더 이상 우리의 선택지가 아니고, 의무사항도 아니라면, 그러면 1인 가구 뿐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어야 된다는 입장에서 출발했던 거고요. 지금 아무래도 비혼 관련한 담론 같은 게 어쨌든 1인가구 위주로 되고 있는 데. 심하게 가면은 나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비혼여성은 막 독립적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누구도 독립적일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과 더 가깝게, 가족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었고. (사례 9-친구 동거_3인)

“결혼 아니면 1인 가구뿐인가?”라는 질문은 비혼이 결혼 전 단계의 임시적인 삶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1인 가구만이 비혼의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은 함께이고 비혼은 1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는 누구든 혼자 ‘잘’살 수 있는 토대뿐만 아니라 함께 ‘잘’살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혼자 살기와 함께 살기의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 누구든 불안정하고, 고립적인 삶으로 연결될 수 있다.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삶을 살아내는 과정을 지원하고, 연결하는 것이 사회의 책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3) 삶의 토대로서의 관계성, 삶을 확장하는 관계성

한 사람에게 관계라는 것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생존에 필수적인 의, 식, 주에 저는 관계라는 게 포함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독거노인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만 살아도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관계라는 건 인간 존재와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이고, 사실 우리가, 특히 복지 쪽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많은 위기 케이스들, 건강문제,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사실 관계망 하나가 키워드가 돼서 다 풀릴 수도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 권리에 해당하는 것을 스스로가 선택하고 구성할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의 시스템에 존재와 관계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죠. (사례 10-공동체_1인 가구).

압축적인 성장을 해 온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중요한 삶의 가치는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으며, 경제적인 능력이 유지되면 관계는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상정해 왔다. 경제적인 빈곤이 관계의 단절이나 관계 빈곤으로 이어지지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는 삶의 고립감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어야 한다. 위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는 ‘관계는 곧 생존이다’라는 것은 강제나 의무가 아니라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맺고 있는 상호 돌봄, 친밀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의 패러다임을 요청하는 것이다.

4) 관계를 통해서 독립하기, 다른 삶을 가능하게 하는 관계성

야학이라던가 공감을 몰랐다고 하면 아예 독립 자체를 시도도 못 했을 거예요. 장애인,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이 어떻게 혼자 나와 살 수 있지? 그거에 대해 전혀 고민을 못 했을 거고. 그리고 가족 외에 절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을 거고. 내가 독립을 하겠다 했을 때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을 못 만났다면 생각조차 못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노들야학을 어렵게 다녔거든요. 몇 년 동안 거의 제가 장애인이었으니까. 검정고시 공부 시작하면서 야학을 알게 되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집이 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번 집 나오는 것이 어렵고. 그때는 엘리베이터 없어서 이동하는 게 열악했거든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야학의 교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저를 어떻게든 바깥으로 꺼내어?,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들의 의지도 대단했었고.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집에 와서 업고 계단 내려가고. 그리고 학교 끝나면 밤늦게도 데려다 주고. 다들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저도 조금 다르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사례 13-네트워크_장애여성 1인 가구)

“어떻게 혼자 나와 살 수 있지?”라는 질문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의존적인 속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다양한 선택지가 부재할 때, ‘상실’되는 사회적인 삶과 연결된다. “조금 다르게 살수”있겠다는 가능성의 세계는 추상적인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매일 매일 계단을 오르내리고, 데려다준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당도한 감각이며, 그러한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어찌면 꿈꿀 수 없었던 세계였을 것이다. 원가족을 떠나서 내가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가족을 중심으로 삶의 자립을 강제하는 사회에서 모두에게 연결되는 질문이다. 위의 사례에서 등장한 ‘야학이나 공감’은 하나의 단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민적인 유대를 만들어 가는 모델이며, 원가족 외에 상호의존적인 삶이 가능한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현실을 드러낸다.

5) 존재를 수용하는 관계들을 통해서 독립하기

보통의 거리까지 나온 청소년들은 연대하거나 지지받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예 없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면 어쨌든 그 이들은 다 저를 이해하고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뭔가 받아본 사람이 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부모님과 너무 많은 시간을 떨어져 살았고. 부모님보다도 가까운 게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나 제 주거나 어떤 것에 대한 이슈가 일어났을 때 사실 제일 먼저 고민 나누고... 그 고민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건 사실 이 동네 네트워크? 안이

어서. 사실 많은 의미와 힘을 주죠. 에너지들을.(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연구참여자 12는 십 대 때 원가족을 떠난 이후에 머물 곳이 없어서 구미로, 김해로 이동했고,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거나 쉼터에서의 규율에 적응하기 힘들어서 다시 거리로 이동했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머물 곳만이 아니라 ‘잘’ 머물게 하는 네트워크의 힘이 필요하다. “받아 본 사람이 줄 수 있다”라는 것은 현재 레즈비언 커플로 살고 있지만, 또 다른 탈가정한 친구들에게 ‘수시로’ 거처를 내주는 삶의 책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연구참여자 12는 확대된 관계를 네트워크 가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나. 원가족으로부터의 독립

가족주의가 공고한 한국사회에서 삶의 안정망은 가족을 단위로 현재와 미래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토대로 작용해 왔다. 청소년은 부모에게 의존해야 하는 ‘의존기’로 규정되어 왔고(장경섭, 2009:167), 그 시기를 벗어나면 이성애 결혼으로 진입하는 ‘독립기’로 규정되어 왔다. 그러나 더 결혼으로 인한 독립은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며, 자발이든 비자발이든 이성 간의 결혼으로 진입하는 시기는 유예되기도 하고, 혹은 장기적으로 ‘대안적인 삶’을 모색하는 흐름도 공고하다. 또한,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원가족을 떠나서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망을 통해서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구참여자들이 원가족을 떠나는 이유는 학교로 인해서, 원가족의 간섭으로 인해서 혹은 성소수자라서 장애인이라서 다양한 이유로 또 다른 삶의 자립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로젠펠드(2014)는 부모로부터의 거주지의 분리가 원가족으로부터의 삶에 대한 통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동거 등 대안적인 관계를 선택하는 흐름이 형성되는 것을 원가족으로부터의 ‘자립기’라고 명명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자립기라는 의미는 홀로 자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존에 원가족 중심으로 삶을 계획했던 삶의 모델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다양한 관계성에 대한 실천들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는 문화변동과 연결된다. 무엇보다,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 또한 이전의 가족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 분리되는 삶을 원한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녀는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에 동의한 비율이 28.1%로(주재선 외, 2017) 낮은 것은 가족 중심의 배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관계가 연결되는 관계망을 존중하는 인식과 그러한 관계망을 지원하는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경향신문, 2018.1.2). 원가족을 떠나서 다양하게 의지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만드는 것은 주거나 노동뿐만 아니라 원가족 외에 다양한 시민적 유대와 관계적 실천들을 중요한 삶의 가치 변화로 읽어낼 필요가 있다.

1) 원가족으로부터의 삶의 자립

저는 아무래도 원가족과 함께 성인이 된 이후에 살아보지 않아서 어떻게 모르겠는데. 왜냐면 한국사회에서는 주로 한 개인이 어떤 취향과 가치관과 이런 걸 쌓아가는 시간이 10대 때 많이 주어지지 않고, 20대 초반에 압축적으로 이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 오고서 20대 초반에 너무 많은 변화를 확 압축적으로 겪어가지고. 지금 같이 사는 친구들은 그 기간을 함께했고. 원가족은 이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러니까. 사실 원가족이 있는 집에 내려가면, 뭔가 연기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사례 9-공동체 지향_친구 3인)

원가족은. 일 년에 몇 번 만나죠. 두 번 보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가족이니까 만나는 거고. 이 친구는 거의 24시간 일상생활을 만나니까 훨씬 더 많이 나누고. 세세한 걸 다 알고. 현황과약을 다 하고 있죠. 지금의 고민과 지금의 좋은 점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고. 그렇죠. 그 정도? 여기가 지금 원 가족만큼 원 가족이죠. (사례 7-친구 동거)

저는 사실 부모님과 너무 많은 시간을 떨어져 살았고. 부모님보다도 가까운 게 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 인 거예요. 저나 제 주거나 어떤 것에 대한 이슈가 일어났을 때 사실 제일 먼저 고민 나누고. 그 고민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건 사실 이 동네 네트워크? 안이어서. 사실 많은 의미와 힘을 주죠. 에너지들을.(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위의 세 사례의 이야기들은 원가족과의 친밀감의 문제와 무관하게 누가 지금 내 옆에서 나랑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가를 중심으로 인생의 의지처가 달라짐을 보여준다. 서로의 인생의 의지처가 되는 것은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는 삶의 태도나 일상생활을 지속해서 나누는 방식이나, 탈가정 이후에 당면한 삶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면서 ‘연립’하는 삶을 의미한다. 이렇듯, 원가족과 다른 가치를 형성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며, 나 외에 다른 타자를 돌보고, 서로 의존하는 성인 되기의 과정은 혼인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의 결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의 경험임을 보여준다.

2) 원가족을 떠나서 개인이고자 하는 욕구

가족한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상처 근데 자꾸 가족이 희망이고 가족이 유일한 안식처고 이런 얘기를 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돌아갈 데가 없고 너무 절망적인. 그리고 ‘가족에게 사랑받고 자라야 내가 사랑을 베풀 줄 안다.’ 사랑받고 자라지 못한 사람은 모든 문제를 자기로 환원시키는 거예요 (중략) 실제로 교육내용도 대체로 보면 자꾸 원가족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르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로 이렇게 되기도 하는 거 같고 이게 다 연결돼있는 거 같아요. 학문,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어서 너무 가족을 강조하고 가족이 중요하게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조금 더 행복한 개인들의 집합체인 거 그래야 그 가족이 된다는 거. 개개인별로 행복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설계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5-이성커플 동거)

(파트너와)산지는 지금 4년 차 됐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살 게 됐을 때 배경은,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집에서 되게 힘든 시간을 한 1년 정도 보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 이게 집을 나와야지 일단은 해결이 되겠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사례 15-동성커플 동거)

가족이라고 하면 취약함을 들어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게 가족인 거 같아요. 제가 원 가족에서 나오고 싶었던 거는 그게 사실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취약성을 들어내면 부모님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좋은 분들이지만 아무튼 근데 친구랑 같이 살면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나에 대해서 대단히 뭘 해주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모자라 게 있어도 밖에서처럼 딱 나의 역할을 다해야지 이런 스트레스가 아닌 상태로 있어도 그게 인정이 되고 그걸 고쳐야겠다. 생각조차 서로 하지 않거든요. 그게 전 아무튼 되게 컸던 거 같아요. (사례 8-친구 동거_2인)

연구참여자 15가 이야기 한 “가족이 희망이고 유일한 안식처”라는 것은 가족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한 것이 아니다. 가족구성원 내부에서도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며, 가족 내의 위계로 인해서 가족 내부에 소수자들은 안전한 삶의 안식처가 될 수 없는 구조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유지나 가족 복원이 아니라 어떠한 유형의 관계라도 “행복한 개인들의 집합체”일 때 그 관계가 개인과 사회를 구성하는 토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사례가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원가족의 집에서 안전한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연구참여자 15에게는 성 소수자라는 이유 때문이고, 연구참여자 8은 자신의 취약감을 드러내지 못한 지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감각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평등함에 대한 새로운 욕망

원가족하고 거리두기는 힘든 것 같거든요. 같이 살면서 거리를 둔다는 건. 부모가 성인이 된 저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상상하시기 되게 힘들어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희 둘은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해도 처음부터 평등하게 만났고, 서로 평등하게 관계를 맺어왔고. (사례 1-동성커플 동거)

사실 원가족에서는 역할로 통쳤던 많은 갈등이나 풀어야 했었던 숙제들을, 여기서는 날 것으로 마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회적 가족에서 시도되는 많은 것들. 회의를 하진, 밥을 같이 먹을 때 역할을 분담하진. 어떻게 보면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우, 뭐 저렇게까지 피곤하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원가족 안에서는 역할로 통쳐져서 꺾어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거를 또다시 정상가족 프레임으로 풀려고 하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역으로 생각해서, 사회적 가족이 보편화되고 내 생애에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라면, 오히려 기존 원가족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도 상상력을 얻어서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웃음) (사례 10-공동체_1인 가구)

가족은 더 이상 단일한 욕망을 가진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곳이 아니다. 어떤 형태의 가족이라도 이질적인 욕구와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 ‘정상’이며, 그러한 충돌을 당연한 삶의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개인의 삶을 가족형태에 종속시키지 않는 출발이다. Creed(2000)는 가족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가족을 단일한 형태 안에 구성원들이 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와 관계망으로 사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사람들의 집합체라는 것은 가족은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젠더불평등, 사회적인 불평등이 밀접하게 연결되는 곳이며, 단일한 형태로 가족의 의미를 상상할수록 여성과 소수자의 삶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더 이상 당연한 가족은 없다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은 후기근대의 가족변동은 ‘도대체 누가 가족에 속하는지가

더이상 분명치 않다는 사실'이며, '통일적인 가족이 무엇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개개인이 맺고 있는 관계를 정의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탄생과 연결됨을 맥락화한다(2005:65-66).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혈연중심 가족에서 1인 가구, 2인 가구로 재편되고 있으며, 1인 가구는 29.3%, 2인 가구는 27.3%이고, 비친족가구'는 2017년 30만 9,000 가구로 2016년엔 전년 대비 25.7% 증가하고 있다(아시아경제, 2019년 10월 12.).

이러한 가구 형태의 지속적인 변동은 가구 형태의 변화만이 아니라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의 변동과 맞물린다.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총 1,500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족 돌봄과 경제적 불평등이 적고, 개인 중심 가치가 증가하여 가족구성원 간 규범적 부담은 적고 친밀성이 강화되는 '느슨하지만 친밀한 가족'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이 44.8%로 높게 나타난다(장혜경 외, 2013). 이렇듯, 가족규범의 변화는 생애에 걸쳐서 변화되는 가족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족제도를 중심으로 한 분배시스템의 한계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 성별화된 돌봄의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더 이상 당연한 가족은 없다'라는 의미는 운명적인, 혈연적인, 단일하고 고정적인 가족 모델은 없다는 것이며, 결혼하지 못한 삼포 세대라는 이름 아래 소환되는 기존 가족의 복원 욕망이 아니라, 근대가족주의의 틀로 포괄할 수 없는 다양한 개인들의 삶의 등장과 만난다. 가족의 정의나 획일화된 가족 기능이 아니라 개인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흐름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와 연결된다.

연구참여자들은 현재의 관계를 '식구', '삶의 동반자', '내 편', '생활동반체' 등 다양한 이름으로 관계를 명명한다. 또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가족 개념이 가족주의가 공고한 사회에서 또다시 기존의 가족 의미로 축소되지 않을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하며, 동시에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이 현재의 이성애 결혼·혈연 중심으로만 상상하는 가족을 향한 중요한 변화와도 맞물린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도 공통적인 것은 개인들이 따라야 하는 주어진 모델로서의 제도적인 가족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 가는, 혹은 가족의 의미를 변형하는 존재들로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1) 내가 선택한 관계

든든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내가 아주 절박할 때 기댈 사람이 편하게 기댈 사람이 있다는 거는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저에게 미치는 것 같고. 저는 그게 중요해요. 원가족과 달리 내가 선택한 사람들. 이들도 나를 선택한 것이고. 계속 조율할 수 있고 관계를. 끊임없이 관계에서 이슈가 될만한 걸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게 저를 좀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사례 1-동성커플 동거)

굉장히 강력한 연결이지. 이미 연결이 되어있고 그 연결을 떼어낸다는 게 어색한 일이지. 그리고 나에게 가족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진짜 어렵다. 나에게 가족이라는 건. 어렵다. 가족이 뭐야? 가족은, 나는 가족을 두 가지로 정의하는 편이야. 내가 선택한 가족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족. 그리고 지금 있어서 나에게 되게 큰 의미를 주는 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가족이고. (사례 2-동성커플 동거)

원가족과 다르게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다른 참여자들에게서도 가장 유사하게 등장하고 있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커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들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또한, ‘선택’이라는 의미는 가족이 주어진 것이며, 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은 시민들 간의 선택적인, 자발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새로운 유대와 관계적 친밀성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중에서 공동체로 함께 사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커플 외에 일상적으로 밥을 함께 먹는 ‘밥 식구’가 있는 경우나, 커플과 살지만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주거 공간을 내어주는 경우 등 하나의 ‘가족’ 안에 또 다른 ‘느슨한 네트워크로서의 가족’을 실천하고, 지향하는 사례들이 있다. 연구참여자 4 또한 이성애 커플 관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관계망을 탐색하고 실험하고자 하며, 사회적으로 인정과 무관하게 “이상한 사람”, 어쩌면 “이상한” 가족들을 만들어내는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의미화한다.

2) 가족이 되어가는 관계

요즘 들어 좀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 보스턴 피플팀 활동을 하면서 장기적인 시야를 좀 갖게 됐는데. 왜냐면 그전까지도, 저도 이게 얼마간 임시적인 관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특히 A랑만 같이 살면서, 작은방에 살던 친구가 수시로 바뀌었을 때는 더더욱 이게 뭔가 장기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못 했고. 보스턴 피플 활동을 하면서 저도 이거를 가족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관계를.

그래서 활동을 시작하고 나서야, 이게 가족이구나 나에게.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어찌면 평생 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사례 9-친구 동거_3인)

이게 아까 가족으로서 얘기했잖아요? 그건 조금의 책임의 문제 같아요. 서로 책임을 지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원가족으로부터 제가 독립했잖아요. 그건 오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안하거든요. 근데 같이 사는 친구와는 가족으로서 서로 책임을 조금. 돌봄을 하던 책임을 같이 나누자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모든 동거인이 갖고 있는 건 아닌 거 같아요. 미래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나눌까? 라는 고민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문제? 그게 보통 말하는 가족이라는 개념 같거든요. (사례 7-친구 동거)

연구참여자 9가 이야기하는 ‘가족이 되어가는 관계’라는 의미는 가족이 수행적인 실체이며, 관계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획득해 가는 과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수시”로 친구가 바뀌었던 시간도 있고, 어찌면 ‘우연히’ 잘 맞는 대상을 만난 현재 관계를 통해서 “이게 가족이구나”라는 새로운 감각은 획득되는 것이다. “평생 이렇게 살 수도 있겠다”라는 의미는 평생 함께 살아야 한다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는 현재를 살아내는 힘이 관계로부터 온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이다. 연구참여자 7은 20년을 넘게 친구와 함께 살고 있으며, 현재의 관계는 함께 노후나,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의미에서 하우스메이트와 다르다고 이야기한다. 오랜 시간의 이어짐, 시간으로 연결되는 감정, 미래의 시간을 함께 기획하고자 하는 책임감을 통해서 현재의 관계를 가족으로 명명하고 있다.

3) 가족형태가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가족

가족이라고 말하고 다녀요. 가족이죠. 같이 살고 밥도 같이 먹고 돈도 같이 쓰고 그러는데. 어머니랑 같이 살았을 때랑 그런 방식에서 달랐던 경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엄마랑 같이 살 때도 잘 때도 같이 자고 밥 같이 먹고 돈 같이 쓰고 특별히 누가 좀 더 가족 내에서 역할을 많이 했느냐만 달라졌을 뿐인데, 그때 가족이고 지금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 (사례 6-이성커플 동거)

“지금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을까?”라는 반문은 밥을 먹는 행위, 돈을 함께 쓰는 행위, 같이 시간을 보내는 행위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족의 의미임을 드러냄과 동시에 동일한 가족실천이 어떠한 근거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별의 근거를 사회가 대답하기를 요청하는 질문과 만난다.

4) 이성애 결혼 모델의 억압성

결혼이 정상적인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가족이고, 결혼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헤어지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거짓으로 결혼을 하고 가족이라고 하면서도 제가 그 모델에 안 맞으니까 이 부모님께 인사를 못하는 거고. 또 이 사람 직장이나 동료나 친구들한테도 그게 안 맞으니까 같이 가거나 소개하기도 어렵게 되는 뭔가의 압력이 있는 거죠. 맞아야 된다. 모델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사례 5-이성커플 동거)

위의 연구참여자 5는 13년째 함께 살고 있지만 함께하는 남성의 경제적, 사회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집안의 반대가 있었고 결혼이 아닌 동거를 선택하였다. 동거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었고 결혼의 정상성에 기반한 사회적인 선택이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함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관계에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며, 연구참여자 3 또한 “비혼동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둘 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이성간에 비혼동거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로 인해서 결혼제도로 진입하기 어려운 현실도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나 가족 간의 높은 기대와 연결해서 이야기한다.

5)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의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

난 요새 연애하는 기분이야. 집에서 기다려주는 사람 있어, 진짜 상대가 없으면 텔레비전 켜면 텔레비전이 말을 못 하잖아요? 온종일 말 한마디 안 하려면 안 해요. 안하는 데 그래도 노인이니까 이야기를 해야 하잖아요. 같이 살지는 않아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다든가, 친구가 있다거나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해. 필요해요. 그리고 마음의 병도 안 생기고 몸도 더 건강하고, 또 내가 걷기 싫다. 밥 먹기 싫다. 그럼 또 둘이 집에 있으면 점심 먹었어? 저녁 먹었어? 아니 나 안 먹었어. 응. 거기로 나와. 우리 뭐라도 맛있는 것 먹게. 그러면 또 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건강도 괜찮고. 나이 먹을수록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례 14-노년커플 동거)

연구참여자 14는 현재 70대로, 남편 사별 이후에 현재 파트너를 만났고 주 3일은 각자의 집에서 주 4일은 여성의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 “요새 연애하는 기분이야”라는 이 말은 의무적이지 않은 돌봄, 성별화된 돌봄에서 벗어난 현재의 삶을 의미하며, 이토록 새로운 삶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삶을 챙기면서 만들어내는 일상

임을 의미한다. 노년의 삶을 어떻게 ‘잘’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의 준비는 부족하다. 무엇보다 노년의 삶이 ‘나이든’ 어느 순간에 다가오는 경험이 아니며, 노년 세대가 경험하는 고립감에 대한 불안감은 다른 세대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혈연을 떠나서 삶의 의지처가 부재할 때 누구에게나 닥칠 삶의 위기이다.

우리 누이도 독거노인이고 큰형님도 독거노인이고 우리 작은형도 그 부부만 살고 있고 이게 지금 우리 가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 당연히 뻔히 다가오는 미래인데, 언제까지 나이 들어서 믿을 것은 가족밖에 없어. 라는 게 성립되지 않는 사회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밖에 없는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사실 현재 어르신 세대들은 여러 가지 여건이 그것을 스스로 바꾸기 힘든 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를 중심으로 중장년 세대들이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제가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잘 받아들이고 공감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이러한 미래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서지 않으면 이것은 한국사회 전체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례 11-공동체)

위의 연구참여자 11은 현재 30대부터 다양한 연령의 10가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든 이유를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립되지 않고 사회와 연결감을 주는 친밀한 관계라는 의미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회적 가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렇듯, 세대를 걸쳐서 다양한 관계적 친밀성을 실험하는 과정은 가족 속에 또 다른 가족을 연결하는 것이며, 가족과 공동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 가족이나 다양한 생애 동반자 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친밀한 유대와 소속감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3. 사회적 가족 구성원들의 가족실천 : 생활돌봄과 서로돌봄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접근은 가족의 형태에 집중한다. 가족의 형태를 중시하여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는 ‘이성애 4인 핵가족’으로, 법률혼을 한 이성애 부부가 생물학적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가족이다. 형태주의적 접근은 ‘정상가족’을 중심에 두고, 정상가족과 그에 속하지 않는 가족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책 대상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김순남 외, 2018). 이러한 ‘정상가족’의 프레임은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많은 관계를 가족이 아닌 것으로 배제하거나 결함이 있는 가족으로 타자화하고 차별해왔다.

우리 사회는 가족 관계 내부에서 작동하는 젠더권력, 이성애 규범성, 신체 정상주의, 순혈주의 등의 위계를 보이지 않게 은폐하면서 특정한 가족 형태를 규범이자 기준으로 두고, 정상가족을 해소하거나 떠나는 존재들, 정상가족 외곽의 다양한 관계들을 낙인화하고 배제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가족을 규범적인 형태로 고정된 단위로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실천하는 개인의 관점으로 이동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하는 돌봄, 보살핌, 친밀함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김순남 외, 2018).

가족을 집합명사가 아닌 동사적 개념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가족 ‘단위(unit)’에 속해 있는 상태와 무관하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행하는 친밀성과 돌봄, 경제적 협력과 부양 등을 통해 가족을 포착하고자 했던 Morgan(1996)은 ‘가족실천(family practice)’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현대 가족은 규정된 존재인 “무엇 무엇임(being)”이라는 명사이기보다는 “행함(doing)”과 같은 동사로서 설명된다는 것이다. 가족의 의미는 미리 규정된 정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참여를 통해서 구성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김원정, 2013; 가족구성권연구소, 2019).

이는 대안적 가족정책 모색의 출발점으로, “어떤 형태의 가족인가?”의 질문이 이제는 “어떤 ‘가족 하다’를 하고 있나?”의 질문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 질문은 가족이 무엇인지의 개념과 어떤 역할을 하는지의 기능,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의 모두가 가족의 형태가 아닌 일상에서 개인이 하는 행위들인 이러한 ‘가족하기’ 실천 속에서 구체화됨을 뜻한다. 가족과의 다양한 상호작용으로서 ‘가족하기’는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실천하고 있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정상가족 밖, 다양한 가족들의 다양한 삶을 배제하지 않고 개념화하고 의미화할 수 있다. 가족제도가 아니라 ‘가족하는 개인’에 주목하는 관점은 다양한 양식으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의 실천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절에서는 제도 밖의 사회적 가족들이 매일의 일상에서 어떤 행위들을 가족실천으로 구성해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인터뷰 결과 가족실천에서 핵심적인 요소이자 가족관계의 특징과 가족의 의미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돌봄’에 대한 이야기들이 중요하게 펼쳐졌다. 이 ‘돌봄’은 특정한 일방이 돌봄을 받고 특정한 일방이 돌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간에 주고받는 관계로 돌봄이 수행되므로 ‘서로 돌봄’이며, 생활 전반에 대해서 작은 일까지 다루는 일상적인 돌봄으로서의 ‘생활 돌봄’이다.

분석 결과로서 구체적인 돌봄의 내용을 공간, 안전, 경제, 집안일, 정서, 아픔, 관심 등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이렇게 서로 돌보는 관계는 사회적 가족의 중요한 가족실천이었으며, 그 특징은 이러한 돌봄의 관계를 현재 장소를 공유하며 동거하는 커플과 친구로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친구와 이웃으로 이어지며, 더 나아가 시점이 특정되지 않지만, 함께 서로돌봄을 할 사람들을 위해 현대의 공간을 비워놓는 것으로 확장을 모색하는 데 있다.

가. 공간의 서로돌봄 : 좀 더 나은 공간으로 ‘너’도 함께

1) 관계를 담아내는 집

‘같이 산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관념을 생기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물론 같이 사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가 제도적으로 가족의 명칭을 확증해주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말이다. 같이 사는 공간인 집의 문제, 즉 주거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수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경제적 부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주거 공간을 갖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한국은 주거권이 사회권으로 인정되기보다는 주택이 자산을 축적하는 주요 방편으로 시장원리 안에서 주로 작동해왔기 때문에 주거 빈곤은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정부가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정책과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범위나 내용 모두 제한적인 정책의 효과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 빈약한 주거 정책에서도 비혼인, 비혈연 가족들은 배제되기 때문에 삶의 안정적인 기틀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법적 지원이 거의 전문한 상태로 연구참여자들은 주거 문제에 부딪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때때로 이러한 어려움이 오히려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각자 사는 곳보다 더 나은 곳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혹은 파트너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보다 못해 ‘너도 함께, 우리가’ 좀 더 나은 공간에서 살아가고자 함께 살기를 결정했다.

파트너와 동거를 결정했을 때는 일단 돈이 너무 없어서요. 둘이 합치면 어쨌든 서울이 되게 주거비가 비싼데, 제 파트너도 혼자 살고 있었고 저도 혼자 살고 있었는데

둘이 합치면 조금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따로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쳐서 살게 됐어요. (사례 4- 이성커플 동거)

이 사람이 너무, 그 공간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거를 저한테 너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집은 제가 구했어요. 제가 구하러 다녔고, 계약금, 보증금을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반반씩 하는 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갔죠.(사례 13- 네트워크_장_애여성 1인 가구)

서로 좋아하게 돼서 사귀게 됐고, 그 친구 집에 내가 가봤어. 근데 나는 그래도 독일에 오래 살았으니까 주거환경이 괜찮았는데. 안정이 돼 있고. 이 친구가 얻었다는 집이, 물론 싼 집을 구하느라 글로 들어갔겠지만, 나는 여기서 이 친구가 안 살았던 좋겠는 거야. 되게 열악했어. 말도 안 되게 춥고, 옆방에 사는 사람들 또라이 같고, 막. 하여튼 이 돈을 내고 살 수 있는 데가 이런 데 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기는 한데 이 돈을 그냥 나한테 쓰면 우리가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기본적으로 원래는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지. (사례 2-동성커플 동거)

천정부지로 오르는 주거비용은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1인 가구에게도 해결하기 어렵지만,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사회적 가족들에게는 정말 가장 큰 경제적 난관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서로가 가진 비용을 합하여 둘 또는 여러 명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사실 주거비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균등 분담이 가능한 경우보다 각자가 가능한 선에서 맞추는 경우가 더 많았다. 당시 경제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나은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거나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안정되어있는 사람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1/n의 균등한 기여가 아니어도 각자의 상황을 맥락적으로 잘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살기가 더 나은 공간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집은 월세이고, 보증금은 전적으로 제 애인 거. 전세자금대출? 그거 받아서 애인 거고. (사례 1-동성커플 동거)

원래는 월세 집에서 계속 살다가 저는 약간 은행대출을 받을 조건이 안돼서 제 파트너가 마침 딱 은행대출을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그 친구가 대출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을 합쳐서 그 친구한테 보내서 그 친구 명의로 살고 있어요. 전세집으로. 월세 그때는 보증금 합쳐서 하고. 지금은 전세로. 그래서 은행대출이자 같이 내고. (사례 4-동성커플 동거)

서로 합해서 집은 자가. 친구네 옛날부터 전세로 있다가 합쳐서 사는데, 은평구예요. 요즘 여성분들 다 많이 사잖아요? 대출 꺼서 사는 거예요. 대출을 받던지 빌리든지 그렇게 해서 일단 집을 마련해야 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은평구는 그나마 뭐라도 할 수 있어요. 딴 데는 꿈도 못 꿩요. (사례 7-친구 동거)

일단은 그 A라는 친구랑 저랑 먼저 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증금은 그 친구랑 저만 걸어둔 상태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친구는 보증금 없이 들어왔어요. (사례 9-친구 동거_3인)

보증금도 ○○자립재단에서 자립기금을 빌려와서, 그걸 또 갖고 있어서 두 번째 집에 올 때는 파트너랑 저랑 합쳐서 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제 경제활동이 잘 안되다 보니까. 결국 제 것도 또 받아서 갖고 있어요. (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저희는 월세고요. 주택 형태는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어요. 일단은 그 A라는 친구랑 저랑 먼저 이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증금은 그 친구랑 저만 걸어둔 상태예요. 그리고 새로 들어온 친구는 보증금 없이 들어왔어요. 월세는 똑같이 1/3하고 있고요. 월세랑 생활비까지 더해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모아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보증금과 관련해서 어떤 분은 냉정하게, ‘너, 보증금 안 낸 사람이 월세 더 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을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제 생각은 저는 부모님의 지원을 다행히 받을 수 있었고. 어쨌든 20대들이 다 부모님에게 조금 의존하면서 사잖아요? 내가 받은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친구랑 살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역지로 꼭 1/n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례 9- 친구동거_3인)

연구참여자 2가 주거 환경이 안정된 자신의 집으로 파트너를 ‘들어오라’고 한 것처럼, 친구가족, 공동체 가족들은 자신의 방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돌보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 9는 오래전부터 방 하나를 다른 친구에게 내어주었고, 그 방은 집이 멀어 자취해야 하는 다수의 친구를 거쳐 현재는 함께 사회적 가족을 이룬 친구가 살고 있다. 연구참여자 12 역시 가출청소년의 어려움을 먼저 겪은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선택한 일이 함께 사는 공간을 내어 공유하는 일이다.

삶터가 마땅치 않은 사람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는 일, 둘 혹은 셋이 함께 살면서 열악하고 비좁은 방을 벗어나 조금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기회를 만드는 상황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돌봄이다. 또한, 이 돌봄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두에게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한 방향이

아닌 ‘서로’돌봄이다.

이 집이 방이 3개가 있는 집이어서, 방을 하나 더 누군가에게 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작은 방인데, 거기를 다른 친구한테 내주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었으니까 자취를 해야 할 멀리 사는 친구들이 거기에 여러 명이 거쳐 갔어요, 그 방에. 그러다가 2년 전쯤에 한 친구가 들어와서 고정적으로 3명이 되었고요 (중략) 저나 A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래도 보증금을 어느 정도 대주실 수 있었어요. 경제적인 여건이 되었고. 그런데 B는 본인이 어쨌든 자기 집값, 보증금, 월세를 다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그냥 들어와라, 했었던 거고. 다음에 옮겨갈 때도 지금 있는 보증금에 더 얹는 방식일 텐데. 그때도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없어서 갈 생각이예요 (사례 9-친구 동거_3인)

처음 다른 이들과 가족을 이뤄가면서 살게 됐을 때, 사실 우리 가족이 된다고 해서 그이가 제 입맛대로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그치만 먼저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이가 겪지 않았으면 하거나 겪었어도 조금 더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약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뭔가 그이가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주거공간을 나누는 것? 함께 나누는 것이 어쨌든 제일 필요하고 내가 제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되게 주거공간을 나누기 시작한다는 건 삶을 그 이들과 나누겠다고 하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힘들 때도 많았어요. (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임금소득 수준은 정제되어 있지만 임대료가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사회에서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 사회주택도 입주자에게 공간에 대한 돌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입주자의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공간의 돌봄’이 삶의 질을 직접 높여 준다는 것을 연구참여자 10의 인터뷰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독립한 지 십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구를 구매했다”라는 소감은 관계를 담아내고 키우는 공간의 역할을 인지하도록 만든다. 협동조합의 공동주택을 통해서 ‘전세 난민’을 끝내고 비로소 자신의 집을 가지게 된 연구참여자 11도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이라는 감각이 생기는 관계의 공간으로서 집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임대료를 동결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안정과 임대료안정 부분에 있어서. 재밌었던 건 그동안 10년 넘게 혼자 혹은 같이 살이를 해왔던 친구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가구를 구매해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1~2년 단위로 계속 점프하면서 지냈을 때는 조립 가능한 가구를 사야 하잖아요. 정말 누가 봐도 아름다운 신혼부부 집처럼 가구들을 짝 비치를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독립한 지 십몇 년 만

에. 그런 거 진짜 뿌듯하고 좋더라고.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 저도 그냥 민간시장에서 살 때는 언제 이 집에서 나갈지 몰라, 하면서 최대한 가벼운 가구. “나중에 이사 가서 내 집이 생기면 몇 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 사지 뭐.” 했던 것들이 주거안정이 되면서 달라진 삶의 질이 있고. (사례 10-공동체_1인 가구)

보통 3~4년 주기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항상 어느 집을 살아도 이 집은 내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집에 ‘정주’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자리 잡지 못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위에 관계성도 생길 이유도 없고 지역에 관심도 없고. 그랬던 것인데, 이제 이 집은 이사 갈 생각이 없고, 별일이 없는 한 눌러앉아서 살 생각을 하니까. 아파트 살 때는 공유공간도 없고 내 집 문밖만 나서면 그냥 낯선 공간이라면, 여기는 다세대 2동을 지었거든요? 우리 집만이 아니라 옆집도 이제 다 이웃집이고. 전체 이 공간, 마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 집, 우리 마을이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죠. 그런 정서적인 경험. 그 느낌이 ‘아, 이게 집이구나’ 라는 생각이 사실 처음 든 거예요. (사례 11-공동체)

2) 제도적인 ‘명의 없음’과 관계의 균열

서로돌봄을 담아내기도 하고, 서로돌봄을 이어내기도 하는 공간인 ‘집’은 삶의 기본적인 요소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분담하는 비율은 조금씩 달라도 각자가 가진 비용을 서로 합하여 집을 마련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았는데, 가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공동 비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가야 하는 요소도 없지 않았다.

저희는 집을 마련할 때에 여러 가지 빌리기도 했고, 하지만 제가 돈도 이렇게 저도 조금 많은 돈은 없지만 같이 했는데 증명을 남겨놓지 않았거든요. 공증을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같이 사는 친구의 부모님한테는 얘기했어요. “누가 돈을 얼마를 이렇게 했다”고, 부모님 돈도 투자가 많이 됐으니까. 이사 가면서 발생했던 돈의 반까지는 아니었는데 반은 누가 담당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의 비율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서류를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면 증명할 길이 없다는 거? (사례 7-친구 동거)

싸워서 집을 나오게 되면, 진짜 나쁜 사람인 경우에는 양심 품고 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돈이 없거나 이 사람이 직업이 없고 안정적인 돈이 없어서 그 사람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보증금은 그대로 두고, 이 사람은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어려우면 내 삶도 제대로 살 수 없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저도 최근에 집 정리하면서 느껴가지고. (사례 4-동성커플 동거)

공동명의로 가능하지 않아 생기는 ‘이름(명의)없음’은 가족 안에서의 지향하고자 하는 ‘평등한 관계’를 혼돈다. 법률혼 아니고서는 커플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현실에서 이러한 ‘이름없음’은 더 직접적으로 ‘권리없음’으로 경험되는데, 독일에서 파트너십으로 관계가 인정되었던 연구참여자 2의 사례는 ‘제도의 있고 없음’이 사람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직접 보여준다. 독일에서 한국으로 사는 곳이 이동했다는 사실에서 가장 큰 구별점은 관계의 사회적 인정 여부이다. 동성커플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한국에서 파트너는 동등한 존재이기보다는 ‘뭉이 없는 그림자’ 같은 존재라는 사실에 괴로워했고, 탄탄했던 이 둘의 관계가 균열하는 상황에 이른다.

(한국) 집주인은 우리가 파트너지 몰라. 그걸 굳이 이제 말하지 않게 되지. 한국에선 당연히. 독일 집에서는 나중에 내가 공동명의로 바꿨거든. 모든 게 하여튼 공동명인데, 여기서는 집도 명의가, 아무리 월세라고 해도 공동명의로 아니지. 그러니까 애는 그냥 정말 그림자처럼 우리 집에 얹혀사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싸우다가, 자기 싸우면 자기가 이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되어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고. 자꾸 짐 싸가지고 이제 본가로 가는 거야. 나는 한국에 오래 안 살았잖아. 갈 데가 없어. 나는 나갈 수가 없는데. 근데 애는 친구들도 많아. 애는 갈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집에 대해서 자신의 뭉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더라고. 그러니까 사회가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우리 사이에도 어떤 경제적인 균열이 생기는구나. 불균등이 생기는구나. (사례 2-동성커플 동거)

한국에 있는 모 은행에 가서, 공동 계좌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어. 그랬더니 부부냐고 물어봐. 그래서 “한국에서 인정 안 되는 부부예요. 저희 둘 다 여자예요.”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부부가 아니면 안 된대. 독일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아니었거든. 한국에 오니까 갑자기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 왜지는 모르겠어. 독일에서도 애가 쓰는 거 다 같은 통장으로 잘 썼는데. 한국에 오니까 애가, 우리가 이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서 그런지 어쩐지, 한국에 오니까 뭔가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개념에 분리되기 시작되면서 파트너는 ‘돈을 쓰는 사람’이라는 존재로 자존감이 자꾸 약해지고. 또 이제 사회에서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애한테 이제 심각하고 되게 이상한 변화들이 생겨났어. (사례 2-동성커플 동거)

한국사회에서 엄청난 주거비용을 조달하는 방식 중의 하나는 ‘결혼’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받는 부모로부터의 지원이다. 하지만 비혼인 연구참여자들은 부모로부터 이전받기가 쉽지 않다. 연구참여자 5의 경우처럼, 결혼할 것이라는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주거자금을 지원받는 일도 나타난다. ‘결혼하고 출산하여 가족을 이룬다’라는 전형적인 생애 모델을 정상적인 생애 모델로 전제하므로, 이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에게 부모의 조력도 국가의 정책도 모두 먼 이야기이다. “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에서 소위, ‘내 집 마련’의 서사는 현재뿐만 아니라 노년에 대해서 더 강력한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월세에서 벗어나는 것, 전세로 전환하는 것조차 어려운 주거 불안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권 이슈로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저희도 전세로 가고 싶거든요, 다음에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물론 당연히 이자는 1/n 해서 갚겠지만, 그냥 어쨌든 누군가가 대출을 업고 있다는 자체가 좀 부담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얘기 중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전 지금 계약적이고. 정규적인 친구가 받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그런데 그 친구가 또 탐탁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계속 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축을 못하고, 그렇게 되죠. (사례 9-친구 동거_3인)

나. 안전의 서로돌봄 : 안전하다는 감각 돌아주기

공간에 대한 서로돌봄은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인 동시에 안전에 대한 돌봄과도 직접 연결된다. 깊은 밤에 갑작스러운 위협을 받았을 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 혹은 공동체 주택의 옆집, 아랫집에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감각은 삶의 토대를 탄탄하게 만든다.

혼자서는 억울한 세입자로서 집주인에게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한 연구 참여자 4의 이야기, 1인 가구였을 때는 택배를 신청하거나 배달음식을 시킬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긴장감을 느끼며 살았다는 연구참여자 9의 이야기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밖에 없다. 혼자 살 때 노출되는 범죄로부터의 위협, 특히 젠더 기반의 폭력 수준이 높은 현실에서 나의 귀가를 걱정해주고 나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주는 가족실천이 돌아주는 안전의 감각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그 때 무섭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혼자 살면서.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집주인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때, ‘둘이 살면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나 지혜들이 늘어나니까 같이 살아야지, 억울한 세입자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때 사실 급하게 합치게 됐어요. (사례 4-동성커플 동거)

한번은 둘 다 외박을 나가고 저 혼자 있을 때, 어떤 취객이 저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쌍욕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0분 넘게 이어졌거든요. ‘너 당장 문 열어, 너 죽인다.’, 뭐 어찌고저찌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약간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경찰을 불렀고. 제가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약간 낮이나 간 상태로 있었는데. 왜냐면 문이 부서질 듯이 두드렸는데 저희는 걸쇠도 없고, 뭐도 없거든요. 방법이 잘 돼 있는 집도 아니고 오래된 낡은 다세대 주택이고 이리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정서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은 상태였는데. 그때 다른 데서 있던 친구가 바로 택시 타고 와줬거든요. 그 날 같이 경찰 대응하고, 같이 잤어요. 집에서. 그때 되게. 확실히. 택배를 받아도 혼자 살 때는 저는 정말 뭘 잘 안 시켰거든요. 배달음식은 하나도 안 시켜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에 있어서 긴장을 좀 덜 해요.(사례 9-친구동거_3인)

A같은 경우는 오래 같이 살아서. 각자의 고향집에 한 번씩 초대받아서 만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다 알고. '애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은 사실 할 수 있는 건 부모님 연락처를 갖고 있다가 긴급 시에 전화 드리고. 보통은 외박하면 이야기를 해요. 규칙은 아니지만. "나 오늘 안 들어간다, 혹은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A의 동생이 같이 살 때 그 친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 늦게. 왜냐면 그때 당시 이 친구가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잠시 올라와 있었던 거라서 되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었거든요. 9시부터 10시까지 학원에 있고, 집에 오는. 그때 좀 난리 났었죠. 그때 부모님들한테 다 연락 돌리고. 무슨 일 난 줄 알고. (사례 9-친구동거_3인)

1인 가구로 살 때에는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성 정체성이든 쿼어 정체성이든. 윗집에 누가 살고 아랫집에 누구고, 이웃이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건물 윗집, 아랫집, 옆집에 내가 신뢰할 수 있고, 다 알고, 위급한 상황에 SOS를 칠 수 있는 내 지인들이 산다는 지점, 그런 지점이 다행인 거고. (사례 10-공동체_1인가구)

다. 경제에 대한 서로돌봄 : 분담하되, 상황에 맞추어 돌보기

연구참여자들의 생활에서 있어서 가장 뚜렷한 원칙은 공동분담이다. 공동의 생활비를 균등하게 혹은 당시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나누어서 모든 생활비 통장을 사용하거나, 생활비 통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출을 번갈아 하며 경제적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경제적인 부담에서 서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경제력이 인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족 역시 이러한 경제적 권력의 관계가 그대로 반영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구성원이 일상에서도 불평등한 권력을 소유하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다. 따라서 생활경제를 분담하는 것은 일상의 관계에서도 권력의 쏠림 없이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공간돌봄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반반씩 기계적으로 어떤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다. 분담원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여건이 유동적으로 달라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도 한다. 많은 연구참여자가 각각 다른 시기에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부족한 시기를 겪더라도 서로 잘 버티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감당하면서 서로 돌보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파트너의 불안정한 상태가 되면 상대적으로 자신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고자 하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소한 물건들을 서로 주고 같이 쓰는 일상 생활을 통해 자신이 가진 돌봄의 감각을 더 자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는 똑같이 1/3하고 있고요. 월세랑 생활비까지 더해서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모아서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이렇게. (사례 9-친구 동거_3인)

가장 간단하게는 원래는 생활비 통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해도 그때 수익 차이가 컸으니까. 수익 비율 대로해서 2:1로 해서 생활비 통장에 넣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넣더라? 제가 되게 적게 냈죠. 2:1로 내니까 제가 20 내고 그 사람이 40 내고 해서 60 만들어지면 같이 밥해 먹는 거. 대체로 식비. 식비하고 공과금 같은 거 내고 그렇게 했었고. 그 사람이 일을 그만두면서 식비는 제가 다 하고 공과금을 그 사람이 내고 있나 봐요. (사례 1-동성커플 동거)

13만 원씩 내서 생활비 통장이 있어요. 모든 걸 다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정말 기본으로 유지해야 될, 자동이체 하잖아요? 그럼 빠져나갈 돈만 해놓은 거고. 나머지 생활, 갑자기 가게에서 뭘 사온다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고 각자 돈으로 하는데. 저희가 지금 98년부터니까 몇 년을 살았죠. 21년? 그것밖에 안됐나? 하여튼 20년 넘게 별 탈 없이 사는 것은 경제문제에 그렇게 민감하게 서로 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하지 않고 돈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놀 때도 많잖아요? 영화보거나 밥 먹거나 그것도 이렇게 “한 사람 내면, (다른) 한 사람 내야지” 정해놓은 게 아니라 기분 따라서도 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조율되는 게 같이 사는 것에 굉장히. 장점? 잘 살 수 있었던 방법이었고. (사례 7-친구 동거)

제 파트너는 같이 살면서 원래도 그런 안정적임을 추구하는 이였지만 어쨌든 같이 오래 산 제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는 걸 많이 보면서 본인이 안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옛날엔 싫으면 때려치우려고 하는데 싫어도 좀 버티고. 제가 안정적일 때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 하면서 (웃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서로

노력을 하는데. 저흰 생활비 통장 안 만들고 6년 살았는데 최근에 만들까? 생각도 해요. 저희는 원래 한 사람이 필요한 거 있으면 사고, 약간 대부분 한 쪽이 돈 있을 때 한쪽이 돈 없고 이런 게 반복되는 상황이어서요. 그러니까 또 생활비를 모을 수가 없었기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돈 낼 수 있을 때 저는 못 내고, 이러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쉬거나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내가 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내가 필요한 거 사고 보낼 수 있으면 보태고 이렇게? (중략) 이게 약간 돌보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다른 사람들이랑 생활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공과금은 나뉘요. 생필품 이런 거는 필요한 사람이 사고, “너도 이거 같이 쓸래?” 이러면 돈을 더 주기도 하고 아님, 그냥 같이 쓰고. (사례 4-동성커플 동거)

라. 집안일의 서로돌봄 : 함께 하되, 싫어하는 일 맡아주기

경제적 비용을 분담하는 것처럼 집안일, 가사노동도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한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서로 협력하여 함께 해나간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나누는 문제는 서로의 생활방식과 성격을 경험하며 함께 하는 시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지만, 대체로 자신이 더 잘하는 것이거나 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 맡아서 하며, 또한 상대방이 싫어하거나 하지 못하는 것을 맡아서 해결해주고자 하였다.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예민한 지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맡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균등하게 집안일을 반반씩 나누고자 하는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위주로 하고, 조금 덜 바쁜 사람이 바쁜 사람을 배려하였다.

이러한 가사분담은 서로 무엇에 예민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 이해가 없다면 어렵다. 동거 초기에 가사의 문제로 인한 갈등이나 다툼이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중심으로 서로의 생활방식과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조율해 나갔다. 어느 참여자도 가사노동을 특정한 젠더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규정짓지 않았다. 전통적인 젠더규범이 강력했던 세대인 70대 노년 동거커플의 경우도 파트너가 요리하면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맡아서 하며 가사노동을 함께 분담한다.

저는 청소를 담당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제가 너무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중간 중간에 해야 하는데. 빨래하고 청소해요. 먹는 거 관련해서는 다른 친구가 주로 담당하는데. 요리를 다 하고 쌀만 제가 씻어요. 그 친구가 쌀 씻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청소는 하는데 걸레를 빨지 않고 그 친구가 맡아요. 이런 건

알게 모르게 나누려고 딱 나뉘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뉘졌고. 제가 설거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이 친구가 설거지 담당하구요. (중략) 쓰레기와 재활용은 같이 버리러가요. 빨래 거는 거 다 담당하고, 청소하고, 아 공과금 챙기는 거, 자질구레한 거 챙기는 거 요런 걸 제가 담당하고.(사례 7-친구 동거)

살다보니 맞아, “누가 그렇게 하자”고 나눈 적은 없는데 그냥 그렇게 나뉘는 거 같아요. 근데 집에서 밥을 잘 안 해 먹고 일주일에 주말이나 요리를 좀 하고 최근에 비건으로 살면서 그러면서 요리를 조금 하긴 하는데 그전까지는 요리를 할 일이 없으니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나면 기본으로 내가 관리하는데 관리하고, 실행은 이 사람이 하는 거로. 내가 “여기 청소가 필요해. 지금 여기 청소를 해 봐야 할 거 같아.” 그러면 오늘 못 하면 내일이라도 해놓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바쁜 거 같아. 지금 못 할 거 같고. 내가 빨리 해놓는 게 좋을 거 같아. 그러면 내가 하고” (중략) 암튼 집안일이 모르겠어요. 집안일이 역할은 분명하게 나뉘놓으면 그게 더 싸움의 소지가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냥 서로 집안일은 덜 바쁜 사람이 한다. 이렇게 하고. (사례 5-이성커플 동거)

보통 그 사람이 빨래하는 걸 좋아해서 빨래를 하고, 저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거든요. 저는 손에 물 묻히는 거 싫어해요. 손에 습진이 만성으로 있고. 손이 되게 차서 물이 닿으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빨래를 너는 것까지 하면, 제가 걷어서 개어놓는 것까지. 그 사람은 밥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제가 밥을 하고. 제가 밥을 하면 그 사람이 설거지하고. 청소는 각자 시간될 때 하고. 그 정도? 지금 관계에서는 그냥 서로 참아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도. 각자 예민한 지점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 빨래, 저는 하나도 안 예민해요. 저는 막 쉬어서 돌려요. 근데 개는 진짜 예민하거든요. 개는 용납할 수 없어. 어떻게 색깔 별로 나누지 않고. 천의 종류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 맨날 싸우면서 그거 아니까 이제는 그냥. (사례 1-동성커플 동거)

예를 들면 저는 싱크대 청결 상태 되게 예민하고 이 친구는 화장실 청결 상태 예민하고, 그러면서 슬슬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들이 신경 안 쓰게 되면 내가 더 많이 집안일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어떤 부분에서 애가 더 많이 하는 거죠. (사례 3-동성커플 동거)

저희가 생활이 많이 분리되어 있기도 해요. 저희가 거의 안 마주치기도 하는 때가 많거든요? 너무 바쁠 때는, 각자 밥 먹고 각자 설거지하고 각자 방에서 자고. 주말에 같이 인사해서 일주일 동안 무슨 일 있었는지 보고하고. 예전엔 무조건 저녁 같이 먹기, 장같이 보고 청소는 이렇게 하고. 이런 원칙들이 있었는데 같이 오래 살면서 그런 원칙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져도 노동의 균형이 맞기도 해요. 이해해주는 부분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해심이 억지로 넓어진 부분

도 있어요. 눈치가 생겨서 타인에 대한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는 많이 어지르는 편이어서 가사 노동에 신경을 많이 못썼는데, 지금은 ‘아 이 정도가 되면 이 사람이 생활하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해서 거기에 맞추거나 해요. 가사노동으로 싸우는 거 진짜 많이 줄어들었어요.(사례 4-동성커플 동거)

저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밥을 우리 집에서 많이 먹으니까. 남자가 못하잖아요. 밖에서 사 먹는 것은 그 분이 많이 해결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는 내가 다해요. 다 하는데 분담을 하지요. 만들고 먹고 그러는 것은 내가 하니까 본인은 뒷설거지 같은 것은 해주죠. (사례 14-노년커플 동거)

함께 사는 집에서 필요한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집안일과 공동생활에 대해 서로가 지켜야 할 선을 확인하고 공동규칙이 되는 그 선을 지키는 노력이다. 생활규칙은 함께 생활해온 경험과 시간을 통해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동거를 시작하면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다.

특히 2명의 커플로 이루어진 가족보다 공동주택에서 함께 살거나 3명 이상이 모여 사는 사회적 가족의 경우 공동규칙이 더 구체적이며,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공동규칙을 합의하여 만들어갔다.

살다 보니까 생겨난 것들인데, 가령 저희는 밥을 한꺼번에 해놓고 냉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 냉동 밥이 다 떨어졌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누군가 귀가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집에 왔는데 밥이 없으면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냉동 밥을 돌린 사람이 밥을 무조건 안친다.”, 이런 규칙들이랑.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사람이 물기를 닦고, 머리카락을 치우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 설거지는 이들 이상 방치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그게 아무래도 각자 깨끗함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로 좀 맞춰서 “나는 여기까지만 된다”, 이야기를 나눠서. 저희는 최근에 월례회의를 만들었는데. (웃음) 그거는 생긴 지가 되게 얼마 안 됐어요. 올해에 만들었고. 이거는 정말 정기적인,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에 만나는 건데, 집에서. 그전에는 뭔가 안건이 있을 때 같이 그냥, ‘이날 저녁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이러면서 따로 약속을 잡았고요. (사례 9- 친구 동거_3인)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입주해서 합의할 부분들. 택배를 어떻게 받는다. 뭘 옥상 공간을 어떻게 쓴다, 청소는 어떻게 나눈다. 왜냐면 호실별로 청소하는 건 호실끼리 협의하시고. 공동으로 청소를 같이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쓰레기 재활용을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매달 한 번씩 회의를 저희가 하거든요. 전체 회의를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도 결정하고, 모자란 건 텔로도 하고. 재활용 정거장을 들여놓는 거를 누가 제안하면 그럼 그 업무는 누구누구가 같이할게요, 라고 자발적으로 하시

면 하시고. 우리 청소규칙은 이렇게 합시다, 호실별로 돌아가면서 뭐 음식물 쓰레기 통을 청소한다거나 이런 식의 것들을 규칙을 잡고 (사례 10-공동체_1인 가구)

공동생활의 규칙을 만들고, 가사를 나누어 함께 하는 시간은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며 연결하는 관계의 시간으로 축적된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가지만,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것은 현시점에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살아왔는지 그 시간성까지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합의점을 찾아가며 조율해간다. 연구참여자 10의 이야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자 다른 생애 경험을 통해 각자 다른 수준으로 맞추어진 안전에 대한 감각, 예를 들면 ‘배달노동자와 택배 노동자에 대한 불안감’을 공동체 안에서 신뢰할만한 사람들과 함께 논의하며 다시 그 감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가는 거고, 사람들이. 그리고 서로 자기와 잘 맞는 사람을 잘 골라가면서 친구도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초반에 갈등이 있었던 건 안전에 대한 감각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 건물엔 우리 외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강력한 열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웃이나, 뭐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들과 그렇게까지 거리를 두고 경계를 세울 필요가 있냐, 그게 더 안전에 위협이 된다, 라는 식의 감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고, 조율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례 10-공동체_1인가구)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친구기 때문에 대화할 것도 되게 많고. 소재와 주제는 끊임이 없는 것 같거든요. 나중에 비슷하게 맞춰지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호불호가 되게 비슷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얘기할 주제가 비슷하니까. 주제도 많고, 얘기도 많고, 안정감과 안전감이 다 있죠. (사례 7-친구 동거)

마. 정서적 서로돌봄 : 경청하고 지지하기

연구참여자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서로돌봄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모성신화와 맞물려 전형적인 혈연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처라는 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동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물보다 소위, 더 진한 가족’은 과도한 책임과 특정의 역할과 과업을 해낼 것을 강제하며 오히려 옥죄는 가족이기도 하다. 혼인과 혈연이라는 소위, 강박적인 정상가족들을 벗어나 함께 살고 싶은 사람들

끼리 모여 이루어진 사회적 가족들은 서로돌봄의 의미를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낸다.

정서적인 서로돌봄의 출발점은 연구참여자 9가 언급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해주는 것”, “삶의 방향과 가치관을 이해해주는 것”으로 “일상적으로 받는 지지”이다. 연구참여자 8은 친구랑 살면서 전형적인 가족의 개념 때문에 친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취약함을 잘 드러내고 이 취약함을 잘 지지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티 살아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참여자 6도 연애감정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지적 관점에서 내 편이 되어 지지해주는 관계가 갖는 중요한 의의와 안정성에 대해 말해주었다.

지금 같이 사는 친구들이랑은 그래도 내가 있고 싶은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나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나,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그 친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잘 이해해줘서. 그런 공감이나 공유된 상태의 사람과 같이 사는 건 되게 일상적으로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저한테 너무 소중한 거고. 제가 설령 뭐 어느 날 되게 못한 모습을 보여도. 혹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막 화를 쏟아내도. 이들은 어쨌든 내가 어떤 사람 인지를 아니까. 그게 제일 큰 차이점 같아요. 그리고 같이 성장하기도 하고. 그때, 20대 초반에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만나면서 공유된 어떤 가치관도 있겠고. 같이 살기 시작한 때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로는 자기 커리어 쌓아가는 기간이었었고. 그때 또 지켜보면서, 각자의 길을 가는 걸 지켜보는 것도 좋고. 아, 지금 되게 저는 너무 운이 좋았던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1인 가구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웃음) 이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요. (사례 9-친구동거_3인)

가족이라고 하면 취약함을 들어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안전하게 지지받을 수 있는 게 가족인 거 같아요. 제가 원 가족에서 나오고 싶었던 거는 그게 사실 안 됐기 때문이었어요. 취약성을 들어내면 부모님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좋은 분들이지만 아무튼 근데 친구랑 같이 살면서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같이 살았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잘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니까 그렇게 되었거든요 (중략) 우정도 충분히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 8-친구동거_2인)

제일 큰 차이점이 내가 이 친구랑 같은 편에 있다? 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연애할 때는 물론 가장 내밀한 관계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걸 지지해주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조언해주고 이런 것까지 굳이 안 했던 것 같거든요? 하더라도 엄청 진지하게 하진 않았는데 같이 살다보니까 더.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연애감정, 사랑의 감정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할까? 동지적 관점?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중략) 내 편이 한 명 생긴 느낌.
(사례 6-이성커플 동거)

바. 아픔의 서로돌봄 : 병원에 같이 가고 함께 있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관계는 아픔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서로 돌본다. 그러나 내가 아파서 파트너나 친구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거나, 혹은 파트너나 친구가 아파서 보살피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가족이 맞닥뜨리는 것은 ‘보호자’가 아니어서 보살피고 싶어도 보살필 수 없는 권한 없는 제3자로서 규정된 사회적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보호자로서 호명되고 되지 않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아왔고 함께 사는 관계와 삶 자체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을 단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이 경험은 매우 중대한 차별의 이슈이며, 이후 차별 경험의 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긴급한 의료적 상황에서도 수술동의서 등에 서명할 수 없는 ‘보호자 아님’이 현실이지만, 아픔에 대한 돌봄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이에서 더 진지하게 이루어진다. 노년 동거커플인 연구참여자 14는 자녀들은 말로만 병원 다녀왔는지를 확인할 뿐이지만 파트너는 힘든 계단을 의지하고 내려가며 함께 병원에 다니며 아픈 다리를 알뜰하게 살피준다. 연구참여자 8도 정신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다.

지금도 다리가 아파서 어제도 병원에 갔는데, 계속 병원에 (현 동반자와)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자식들은 갔다 오면 그래요. 자식들은 말로만 “병원에 갔다 왔어?” 그러지. 거짓말처럼 이 다리를 이쪽으로 오른발 다리를 옮기는데 한 발자국도 못 옮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동반자가) 등산지팡이를 가져다주더라고요. 거실에서 이것 짚고 나오라고. 그리고 또 우리 집이 4층이에요.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내려와야 해요. 다 잡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것을 잡아주면서 우리는 나이 먹으면 몸이 성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가 나이 먹어서 아플 때는 당신이 아프면 내가 이렇게 다할게. 될 수 있으면 신세를 안 지려고 운동을 열심히 한 대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그래도 아프면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어 그럼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 하지마.” 그러면은 우리는 둘이 약속을 하자고 했어요. 자식들 부르지 말고 아프면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으니까 가서 병간호도 할 수 있다. 돈 안 받고 해줄게. 나 아프면 당신이 와서 해줘. 그랬더니 그러기로 약속을 했어요. 어제. 다리 아파서 잡아주면서. (사례 14-노년커플 동거)

6~7년 동안 살면서 근데 저는 돌봄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정서적으로 우울하거나 저는 우울증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 서로 그런 정신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 주에 약을 몇 주 동안 못 먹었더니 이렇다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하게 되고 제가 먼저 신경정신과 가봐서 좋아서 너도 한번 가보라고 했더니, 거기 가 가지고 ADHD 확진을 받았거든요 친구는 그러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행동 치료 이런 것도 스스로 찾아보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잘 주고받고 밖에서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으레 털어놓게 되고 같이 화도 많이 서로 내주고.(사례 8-친구동거_2인)

“아플 때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의 질문은 가족의 필연성으로 답해야 하는 질문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러한 ‘가족 구성’이 반드시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는 정상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연구참여자들의 실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연구참여자 11의 이야기는 공동체 주택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서 상대적으로 가족으로서의 연결성은 강하지 않지만, 점선같이 연결된 이 가족들이 현재 1인가구와 노인 가구가 당면한 돌봄 공백을 우려하는 전형적인 위험의 서사를 느낀한 공동체 망 안에서 서로 돌봄의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참여자 10 역시도 각각 살아가는 19명이 아니라, 언제든지 아플 때 동반해주는 친구들이 있는 큰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주었다.

마니또를 한번 했는데, 마니또에게 원하는 걸 써서 같이 내기로 했어요. 지금 같이 사는 집에서, 전체 19명이 같이 마니또를 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 아플 때 병원 한 번만 같이 가주는 마니또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아플 때 혼자 있으면 서러우니까, 같이 사는 거죠. (사례 10-공동체_1인가구)

서로 알아가고 한 지붕 아래서 사는 것 자체로 유대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가능해지는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 분은 비혼 여성이신데, 연세도 50대 되셨는데 사업을 하시죠. 장기간 해외출장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급하게 막 일이 필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집에 들어가서 뭐 좀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시고, 우편물이 쌓이는 것을 치워드리죠. 한번은 요로결석으로 급하게 통증이 오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지만, 옆(집)에 있던 이웃이 119에 신고해서 위기상황을 넘기기도 하고요. 저희는 어머니가 혼자 낮에 계시잖아요. 보청기를 좀 꺼도 잘 못 들으세요. 급하게 일이 있을 때 전화 안 받고 그럴 때에는 또 부탁을 해서 긴급하게 소통도 하고, 이것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별거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사례 11-공동체)

사. 관심의 서로돌봄 : 즐거움을 함께하기

사회적 가족은 애인 관계의 친밀성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함께 우정을 쌓아왔거나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 경험을 공유해온 지점들이 가족 구성의 계기이기 때문에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맥락에서 서로 연결되며 함께 살아간다. 이 다양함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원천이다.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관계가 된다는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며 고취하는 관계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자유로운 관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로를 특정한 역할과 틀에 맞추거나 강요하지 않고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아니어야 가능하다.

다양한 사람들에게서 솟아나는 활력은 소소한 집단지성을 이루기도 하고 주위를 함께 움직여 역동적인 작은 팀들을 만들어낸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여 살게 되는 공동체 가족들은 ‘따로 또 같이’ 서로의 관심과 흥미, 재주가 무엇인지를 타진해가며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활동을 만들어 갔다.

고민을 같이 나누는 사람을 일상으로 보게 된다는 것은 삶을 되게 풍부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TV를 보면서 뭔가 영감을 얻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사람이 더 풍부해지는 게 있고. (사례 7-친구 동거)

‘이렇게 함께 사는 것을 통해서 똑똑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똑똑해진 것 같다. 라는 게 뭐냐면, 이게 흔히 말하는 ‘집단지성’이라는 거대한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단톡방을 통해서 보면 별 희한한 질문들이 잘 올라오는데 누군가는 답을 해주는 거예요. 전체 거주인이 20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해관계가 종속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부담 없이 무언가를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사이, 이 정도만 되어도. 다들 하는 일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똑똑해진 것 같아요. (사례 11-공동체)

옥상 텃밭 하고 싶으시다고 제안하셔서 했는데. “올해는 어렵겠어요.”라고. “스터디로 할게요. 올해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십자수 하는 팀, 이렇게 임시 팀을 만들면 꼭 한 호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집과 저 집에서 각자 그 취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요.(사례 10-공동체_1인가구)

저희는 밥상모임 하는 거 있고 자치모임 중의 하나가 초록손이라고, 그게 뭐냐면 대단한 정원은 아닌데 집 주변에 꽃 심고 꽃밭 그런 것 하고, 이제 제 아내도 그것을 좋아하고. 재밌더라고요. 저는 열심히 가꾼 것을 즐기는 사람이고요. (사례 11-공동체)

아. 갈등과 긴장의 조율 : 익숙한 문제해결자

연구참여자들의 인터뷰에서 같이 사는 것, 가족성원들간의 갈등과 긴장은 다소 가시화되지 않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가족 간의 권력 관계를 젠더나 나이별로 명확하게 배치하는 가부장적 질서가 사회적 가족인 연구참여자들에게는 법률혼과 혈연으로 구성된 소위 정상가족의 경우보다 훨씬 흐릿하게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는 결혼과 혈연이 가부장적인 이성애 정상가족을 만들어내는 주요한 제도인데, 사회적 가족은 이 제도를 경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대적으로 가부장성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 중에서도 스스로 페미니즘 관점을 견지하여 돌봄의 감각을 지니고 있으면서 평등한 관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고, 동거의 결정 자체가 자발적이고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 협상하는 과정이 생활의 자연스런 과정으로 인식됨으로써 갈등과 긴장을 훨씬 더 잘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갈등과 긴장이 덜 가시화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연구참여자들이 현재의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기까지 생애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동적으로 사회적 가족을 이루고 또 해소하고 이루어온 이력이 있고, 상대적으로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관계의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서 ‘함께 사는 것’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함께 살기 위해 친밀한 관계를 어떤 수준으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고 있으며, 혹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 그 역량을 키워온 사람들이기도 하다.

연구참여자 10의 지적처럼, ‘원가족 안에서는 역할로 전제되면서 끓아 터지는 것’이지만, 현재의 사회적 가족 안에서는 지난한 회의와 논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서 풀어내야 하는 숙제인 것이다. 따라서 갈등과 긴장이 특별하게 이들을 비껴간다고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삶의 과정이고, 이 과정을 전형적인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가족이 하는 소통방식에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갈등과 긴장을 풀어가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어쨌든 셋 다 여성주의자여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유된 지점이 너무 많고. 척하면 척 알아듣는, 그런. 세계에 대한 관점이 일단 유사하니까, 그 지점은 굉장히 좋고. 아, 모든 여성주의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랄까. 돌봄에 대한 감각을 어느 정도 갖추려고 노력하는 거? 그래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잘하면서, 너무 타인에게 의존하거나 이러지 않는. 어떤 균형감각이 있다는 것도. 이 공동체를

지탱해주는 특징인 것 같고. 그리고 셋 다, 어쨌든 사회에 관한 관심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사례 9-친구 동거_3인)

사실 원가족에서는 역할로 통쳤던 많은 갈등이나 풀어야 했었던 숙제들을, 여기서는 날 것으로 마주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사회적 가족에서 시도되는 많은 것들. 회의를 하건, 밥을 같이 먹을 때 역할을 분담하건. 어떻게 보면 피곤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우, 뭐 저렇게까지 피곤하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원가족 안에서는 역할로 통 쳐져서 끓아 터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례 10-공동체_1인가구)

성애적 관계건 비성애적 관계건 상관없이 같이 산다는 것에서 오는 갈등 조율의 시간들이어서. '아, 너와 내가 소통의 방식이 달랐구나.'를 서로 알아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베프가 돼서 잘 지내시는 한 가구도 있고. (사례 10-공동체_1인가구)

수평적으로 자율적으로 해보자'라는 욕구가 강하셨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았던 게. 이미 공동으로 업무를 한다거나 같이 삶을 한다는 거에 대한 감이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모이셨어요. 그런 분들, 이미 경험치가, 운동, 생활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공동으로 함께함에 대한 감수성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 몰빵하지 않고 잘 조율하게끔 이끌어갈까에 대한 성찰을 계속하시면서. 가급적 수평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성격이나 경험치의 차이로 인해서 좀 더 크고 많이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경험이 처음인 20대 초반의 초년이신 분들은 조금 더 배워가면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사례 10-공동체_1인가구)

자. 서로 돌보는 관계의 확장

사회적 가족이 민주적이고 평등한 서로돌봄이라는 가족실천을 보여준다는 측면은 가부장적인 가족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가족관계와의 차별점을 드러내는 특징이기도 하다. 이 인터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서로돌봄의 관계를 2자 관계 그 이상으로 확장하기를 원하는 참여자들이 많았다는 점이다.

실제로 커플을 포함하여 다른 구성원이 돌봄 공동체 가족으로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연구참여자 12, 커플 동거가족이지만 가까운 동네에 생활돌봄을 서로 하는 친구 1인을 식구로 둔 연구참여자 1, 역시 현재는 커플이 함께 동거하고 있지만, 주거의 공간이 필요한 지인에게 가족의 경계를 열어놓기를 원하는 연구참여자 4, 느슨한 공동체로

더 많은 사회적 가족을 꾸려나가는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거나 함께 주거하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네트워크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서로 돌보는 연구참여자 등 여러 명의 연구참여자가 돌봄의 관계망을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었고, 각각 다른 나름의 방식으로 이를 실천하고 있었다.

실제 이 연구참여자 12는 가족 밖 청소년들에게 거주 공간을 내어주면서 훨씬 더 넓은 의미의 범위로 공동체로서 가족을 실천하고 있으며, “거주와 생계를 함께 해야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 서로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함께 서로 돌보는 사람들도 가족으로 이해한다. 연구참여자 12는 커플의 관계에만 몰두해야 하고 이 2자 관계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관계는 “건강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집착하고 피곤한 상황에 함몰되지 않도록 다른 구성원들이 함께 가족으로 포함되는 것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여겼다.

저랑 동거인만 있으면 의지하고, 뭔가 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쨌든 나의 그 에너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서로에게 쏟아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사실 그닥 건강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서로에게만 관계하면 이게 뭔가 건강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서로밖에 없어서, 근데 이제 네트워크 가족들이 근처에 있으면 우리가 뭔가 잘못돼가고 있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봐줄 사람들이 그 이들 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하죠.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니까, 서로에게 너무 집중하면 이게 집착이 되어서 서로 너무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네트워크 가족이 있는 게 그래도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해요. 너무 서로에게 에너지를 쏟으면 사실 그 관계가 더 지속되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연구참여자 4 역시도 커플 관계이지만, 자신의 생활 반경에 함께 살기를 원하는 친구도 언제든지 합류할 수 있도록 가족의 테두리를 열어두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평등한 관계로 만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느슨한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2인 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보다는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느슨하면서도 좀 더 확장된 가족 경계를 상정했으며, 이러한 다양한 가족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원했다.

우리가 커플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활 반경에 누구든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열어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두 달만 어디 살고 싶은데 우리 집 와도 돼? 라고 했을 때 언제든 열어두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근데 뭔가 둘이 커플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 끼기 어려워하는 데 아니야, 우리 여기서 다 사는 동반자야. 모두 평등하게. 애정이나 의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공평한 관계로 만나려면 훨씬 더 느슨한 공동체가 필요하고. (사례 4- 동성커플 동거)

점선 같은, 포스트잇 같기도 하고. 여기서 척척 붙여도 잘 맞는 가족처럼 지내고. 저는 저희 둘이 한 묶음이기도 하지만 이 한 묶음이 다른 한 묶음이랑 붙어도 잘 붙는 그런 가족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둘로서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제도에서 그런 제도면 이용하고 싶은데 우리 둘만 존중해주는 제도는 전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과도 너무 살고 싶기 때문에. (사례 4- 동성커플 동거)

연구참여자 1은 함께 의지하는 사람을 일대일로만 만들고 싶지 않으며, 함께 사는 파트너 외에도 가까운 동네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상과 돌봄을 나누고 있는 친구 1인이 '식구'가 되었고, 식구인 친구와는 밥을 함께 먹고 서로 아플 때 보살피며, 돈의 엄함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서 경제적으로도 서로 돌보고 있는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 공동체주택에서 느슨한 공동체 가족을 이루고 있는 연구참여자 역시 실제로 확장된 돌봄망을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례이다. 이들은 둘보다는 셋, 넷 같이, 옆집, 윗집, 아랫집과 연결되어 좀 더 큰 공동체 가족을 이루기를 원했고, 그 방법으로 공동주택에 함께 살기를 통해 실현하고 있다.

다른 관계들과 겹침이 없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였다. 장애가 있는 연구참여자 13에게도 지역사회로 확장된 서로돌봄의 망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다양한 가족의 서로돌봄의 실천양상은 가족이 혼인과 혈연으로 한정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서로 의지하는 사람을 1대1로만 만들고 싶지 않는 게 커요. 둘 다. 그 친구 가까운 데 살거든요. 친구가 함께 망원에서 살기로 결정을 하고, 돈이 없으니까 제가 보증금을 빌려주고. 그 때부터 아까 그냥 셋이서 식구처럼 웬만하면 밥 같이 먹고, 저희 텔레그램 방이 있는데 방 이름이 밥이에요. 저희 좀 만족스러워요. 둘이서만 의지하는 것도 좋긴 한데 저희 좀 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항상 둘이 놀고 항상 둘이 밥 먹고 여행을 가도 제일 편하니까 둘이 여행을 다녀버렸는데 결혼한 친구들이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명에게만 기대면서 사는 것은 내 삶에도 이롭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지지적인 관계망은 좀 넓을수록 좋지 않을까? 같이 어울려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서로를 돌봐주는. (사례 1-동성커플 동거)

아까 경제적으로 지금 저희 둘이 힘든 걸 아니까 특히 파트너가 경제적으로 힘든 걸 아니까 본인이 대체로 경제적인 걸 부담한다고 한다거나. 같이 밥을 먹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밥을 좀 사주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돈의 엄함도 가능하고 아프거나, 그럴 때 돌봐줄 수 있는, 좀 긴밀하게 돌봐줄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파트너)우리 얘기?(웃음) 동반자. 내 삶의

동반자라는 게 가장 큰 찬사이고, (친구)애는 밥 먹는 애고..(웃음) 애는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사례 1-동성커플 동거)

친구랑 둘이 살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 둘이 살고자 했던 게 아니고. 셋, 넷 이렇게 같이 살고자 했었던 거라서. 둘이서만 사는 것보다는 더 여러 사람이랑 연결되어서 지내고 싶다. 그리고 그게 꼭 한 호실일 필요는 없고. 바로 옆집, 윗집, 아랫집에 관계망을 크게 갖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됐건, 동성커플이 됐건, 아니면 사회적 가족이 됐건. 사회에서 어떤 면에서 자신들을 감추면서 흩어져 살아야 되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흩어져 살지 말고, 우리가 왜 꼭 흩어져서 숨어 살아야 하나. 모여서 드러내면서 살고. 연결되면서 관계 자원도 갖고. 지역사회 내에서도 사실 다양하게 정상가족과도 연결되어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모여 살아보자는 생각을 했었죠. (사례 10-공동체_1인 가구)

저 아는 장애 여성 언니들이 강동구에 임대아파트 그쪽 단지에 모여 살고 있긴 있어요. 장애 여성 언니들 몇 명이 아파트 단지에 모여 살면서 같이 반찬도 나눠 먹고. 서로 일상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 맺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례 13-네트워크_장애여성 1인가구)

4.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

주지하다시피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배제하고 그에 따른 차별을 공·사 영역에서 만들어낸다. 첫 번째 소분류인 “정상가족의 家 : 기존 주거정책에서의 배제”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 정책과 그에 따른 기반 시설들로 인해 차별을 경험한 가족상황의 사례들을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소분류인 “경제생활의 단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 역시 혼인·혈연 가족으로만 설계된 세금 제도·건강보험·각종 수당에 대해 사회적 가족들이 겪는 차별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각각 세 번째와 네 번째 소분류인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가족” 및 “죽으면 사라지는 ‘함께 삶’의 흔적” 도 마찬가지로 이성애 중심의 혼인제도를 거쳐야만 가족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앞에서 사회적 가족이 겪은 차별을 다루고 있다.

이처럼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은 사적 영역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동거하고 있는 동성커플의 경우,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껴 자신들의 존재를 숨기거나 드러내지 않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데, 이는 사적 영역에서 일어

나는 가족형태의 따른 차별이면서도 기실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국가 정책과 제도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누구보다 자신을 가장 가까이 보살피 주고 있는 현재의 파트너와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보호자 자격이 될 수 없다고 배제당하는 순간들을 사회적 가족은 마주할 수밖에 없다.

제4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에 따른 차별 경험은 이처럼 한국사회가 이성애중심의 혼인제도와 혈연 가족 바깥의 가족을 배제하고 차별하며 소위 '정상성'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음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기준을 정하고 정상성을 작동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소수자를 낙인찍고 비정상적인 존재들을 만들어내고 있음에 불과하다. 따라서 아래에 나오는 사례들을 통해 현재 가족제도에 내재해 있는 한계를 직시하고 이로부터 사회적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가. '정상가족'의 家 : 기존 주거정책에서의 배제

대부분의 사회적 가족 구성원들은 주거 불안정성을 경험한 바 있으며 정부의 주거 지원 정책을 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그로 인해 주거 불안정성은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족을 형성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파트너와 같이 살기로)결정 했을 때는 일단 돈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둘이 합치면 어쨌든 서울이 되게 주거비가 비싼데 저는 서울 외곽에 살고 있었지만, 제 파트너도 혼자 살고 있었고 저도 혼자 살고 있었는데 ‘둘이 합치면 조금 나은 조건에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따로 살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쳐 살게 됐어요.” (사례 1-동성커플 동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밖에서 고시원 이런 데서 오랫동안 힘들게 활동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의존 이런 건 그래도 뭔가 주거가 안정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던 거 같고요.(사례 5-이성커플 동거)

혼자 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월세가 너무 비싼데 혼자 살면 월세가 50만 원 정도라고 치고 둘이서 살게 되면, 비슷한 방 살면서도 돈 나눠서 내면 되니까...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좋고. (사례 6-이성커플 동거)

저희가 전세 싼 데를 찾고 있어가지고... 구로 온수가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해서 있는 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거기가 싸서 있는 건데 저희 처지에서. 비쌌으면 아무리 익숙해도 거기 있지 못했을 것 같아요.(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사회적 가족이 호소하는 주거 문제는 기존의 집(家)-공간이 '정상가족의 집'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지고, 주거정책이 정상가족의 구성·유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대다수 주거 공간이 부부+미혼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부부 침실(큰방)과 자녀방(작은방)의 공간 구조는 2인 가족을 넘어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사회적 가족 구성원의 관계와 생활양식을 반영하지 못한다.

주거 단위를 혼인·혈연가족 또는 1인 가구로 상정하는 주거정책으로부터 배제된 사회적 가족은 오로지 서로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공동의 기여'로 마련할 수 없다는 점은 사회적 가족의 관계 자체에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사회적 가족에게 있어 주거 마련을 위한 공동 대출, 공동 전·월세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기에 지원 정책 및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지금은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1인 가구 관련한 주택공급은 또 많이 이뤄지는데. 극과 극인 거예요. 30대 이전까지는 1인 가구로 살다가, 30대 접어들면 결혼해서 임대주택에서 살고 그런, 이 트랙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개인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간다, 뭐 이런 건데. 이러 했을 때는 정말 서로에 대한 신뢰밖에는 기댈 곳이 없는 거잖아요. 누구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대출받는다든 건.(사례 9-친구동거_3인)

도저히 내가 집을 구할 방법이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노후에 대한 대비라는 게 우리 둘이 같이 살 최소한의 안전망을 우리 둘의 능력 말고 다른 어떤 것에도 기댈 수 없는 불안이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지. (사례 1-동성커플 동거)

그래서 저희도 전세로 가고 싶거든요, 다음에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물론 당연히 이자는 1/n 해서 갚겠지만, 그냥 어쨌든 누군가가 대출을 업고 있다는 자체가 좀 부담이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천천히 얘기 중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전 지금 계약직이고. 정규직인 친구가 받는 게 제일 낮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 친구가 또 탐탁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럼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으니까 계속 월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저축을 못 하고, 그렇게 되죠. (사례 9-친구동거_3인)

한숨이 나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때는. 그리고 또 이렇게 동사무소에 가서도 같이 사니까 전입을 해야 되는데 세대주가 어쨌든 한 명밖에 안 되

는 거? 뭔가 이렇게 뼈저덕거리고.... 동사무소 가면 맨날 직원들하고 많이 싸워요. 공동세대주 이런 게 잘 안되고. 거기서는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고 하고요. (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대부분의 공공 주택담보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상정하거나 단독 세대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적 가족들은 그나마 경제력이 있는 1인이 단독 세대주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대출을 많이 졌죠. 대출받으면서 아 이게 혼인신고를 안 하고 부부가 아니다보니 대출 금리 같은 게 아무래도 불이익이 있더라고요. 열 받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뭐 어떻게 방법이 없고. 아니면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건 너무 또 큰일이고 그래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그냥 일단 제 명의로 구매를 하고 아파트 대출금을 갚고 있거든요.(사례 5-이성커플 동거)

관계에 대한 법적 보증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이 계약한 전셋집에서 다른 일방의 위치는 불안정하다. 또한 계약한 사람이 사고가 생기거나 헤어질 경우 다른 일방에게 임차의 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 시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사회적 가족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주택자금 대출 시 혜택은 '이성애 정상가족(신혼부부)'에 우선한다. 청년, 저소득층 등 다양한 대상을 특정한 주택자금 대출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가장 적은 금리에 대출해 주는 대상은 신혼부부로, 대출금액은 최대 2억으로 금리는 연 1.2%~2.1%로 저렴하다. 여기 해당하지 않으면 대출 금액에도 제한이 있고 이자 부담도 더 가중된다.

그들이 내는 이자와 지금 당장 함께 주택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야. 신혼부부들이 내는 이자랑 내가 내는 이자는 되게 큰 차이가 있어. 그럼 나는 사회적 비용을 더 지불을 하고 그만큼 매달 빈곤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야. 그만큼 우리는 가면 갈수록 빈곤해지는 건데.(사례 2-동성커플 동거)

그냥 혼인신고 스리슬쩍 해버리고 우리도 LH나 SH 신혼부부 관련한 주거정책은 너무 많은데....우리도 청년이라고 불릴 수 있는 나이에서 벗어나면 그런 혜택도 못받는 거니까 막막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냥 혼인신고하고 집을 얻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뭔가 분하고 지는 것 같고.(사례 4-이성커플 동거)

제가 알기로는 신혼부부가 절반인 50% 금리가 더 싸요. 1.2%인가 더 싸고 2%가 더 적으니까 진짜 마이너스 금리죠.(사례 8-친구동거_2인)

그런 게 제일 억울했어요. 뭐 신혼부부들이 받는 전세자금 대출, 이런 것도 있고. 옛날에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요즘엔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사례 15-동성커플 동거)

또한, 사회적 가족은 임대주택에 공동 입주가 불가하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대표적인 임대주택인 국민임대, 장기 전세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 한 세대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회적 가족 구성원은 공동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구성원 중 한 명이 단독세대주로 입주 신청은 할 수 있으나, 40제곱미터(약 12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 사실상 공동 거주가 어렵다.

그걸 이제 전형적인 어떤 헤테로섹슈얼 부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혹은 1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밖에 없어. 그래서 1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은 우리가 살기엔 너무 좁아. 두 개 얻어서 살 수도 없고. 근데 내 아는 다른 분들은 행복주택 하나 얻어서 거기서 끼어 갖고 살더라고. 되게 좁은 데서. 그게 사실 되게 힘든 현실이고. (사례 2-동성커플 동거)

최근 정부가 지원하는 공동체 주택, 사회주택이 확대되는 가운데, 비혈연 가구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보편화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임대아파트 같은 거 계속 시도하면 떨어지니까. 어쨌든 저는 1인으로 시도하는 거고 그러면 작은 평수밖에 신청을 못하고. 듣기로는 누구랑 같이 사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온단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돼도 저는 문제겠죠.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이 살만한 공간 일거고.(사례 1-동성커플 동거)

저희가 LH 신청하려고 1인 가구 밖에 안 되니까 아예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저희들끼리 사는 거거든요? 어쨌든 제가 홈쉐어하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시도하려고 해도 1인 가구밖에 못하니까 2인 가구에 들어가려면 랜덤이어서, 같이 넣어도 소용이 없고.(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비혼·비혈연 가족의 주택자금 공동 대출과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사회적 가족의 요구는 절실한 실정이다.

친구랑 살더라도. 또는 모르는 사람과 살더라도 행복주택이나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집에 같이 살 거니까, 전세보증금 대출을 둘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사례 1-동성커플 동거)

사회적 가족을 위해 설계된 주거 공간의 부재는 큰 문제이다. 최근 청년층을 대상으로 확대되는 주택 역시 이성애 부부 아니면 청년, 대학생 1인 가구로 대상을 분화하고 있으며, 각각의 관계와 생활양식을 반영한 전형적인 공간을 공급하고 있다.

그때는 집값도 집값이고, 적절한 집이 없었어요. 방이 3개가 되는 집이. 일단 쓰리룸이 없었고. 쓰리 룸이 있다고 해도 한 방이 약간 창고처럼 되게 좁아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방이 있거나, 그런 식이어서요. (사례 9-친구동거_3인)

사실 요새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주거도 약간 1인 가구에 맞는 집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저희는 2인 가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맞는 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신축건물? 이런 곳에서 살고 싶긴 한데 신축건물이 다 1인 가구에 맞춰져서 짓고 있으니까 주로 이제 그들이 소득을 위해서 원룸 많이 짓는데, 저희는 원룸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오래된 집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청년 1인 가구들의 주거상황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1인 가구용 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한 축이 필요하지만. 단지 그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들이 필요하고. 본인들이 상상하는 가족구성으로 수요자를 책정하지 말고, 다양한 사회적인 니즈들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주택은 많은 경우에 1인 가구를 상정하고 많이 공급이 돼요. 그래서 설계를 해도 1인실, 이렇게 설계하고. 이게 진일보한 모델이라고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간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사회주택 유형에서 어떤 소득 기준들이 좀 사각지대이신 분들이 입주할 모델이면서,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구성, 공동체구성이 무엇지에 대한 게 설계에 반영됐으면 좋겠어요. (사례 10-공동체_1인 가구)

최근 1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2인 가구가 같이 살 수 있는 집의 형태를 찾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림 3-1>처럼, 이들 대학생/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면적은 1인 가구일 경우 16㎡이며 공동 주거일 경우 29㎡이다. 반면 신혼부부형 행복주택 면적은 최소 36㎡에서 최대 45㎡까지 설계되어 있어 대학생/사회초년생 공동주택의 주거면적보다 16㎡ 더 넓음을 알 수 있다.

〈그림3-1〉 대학생/사회초년생 행복주택 평면도



※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안내

〈그림3-2〉 신혼부부형 행복주택 평면도



※ 출처: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 행복주택 안내

나. 경제생활의 단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

사회적 가족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경제생활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서로의 수입을 공유하고 소비·지출을 함께 기획, 실행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경제생활의 기본 단위는 혼인·혈연 가족으로 가정되며, 이는 세금을 부과할 때, 소득을 보장하거나 지출을 보전할 때 이들 가족이 기준이 됨을 의미한다.

경제생활 단위로 가족을 상정하는 세금 제도, 사회보장 제도 등 공적 제도와 보험,

가족수당, 경조사 휴가 등 민간 제도 모두 사회적 가족의 공동 경제생활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차별을 초래하며, 나아가 기존 가족의 정상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1) 혼인·혈연가족 부양을 전제로 한 세금 산정에서의 배제

근로소득 책정 시 인적공제 대상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등 혼인·혈연관계의 가족만 포함되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가족은 공제 혜택이 적을 수밖에 없다.

혼인·혈연 가족의 경우,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만, 사회적 가족은 구성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받을 수 없다.

언니가 1년 휴직을 하면서 이제 작년 한 해만 제가 십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밑에 부양가족이 생긴 거예요. 엄마 아빠를 부양가족으로 두 명을 넣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연말정산을 받으면 많아 봐야 50만원 까지 받은 적 있고 30~40만 원 연말정산 돌려받는데, 올해 4월이었나 330만 원 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니까 다달이 때는 세금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놀랍고. 부양가족은 남편이 있거나 애들이 있거나 부모가 있으면 엄청 혜택이 있는 거예요, 거의 10배 가까이 돌려받는 거예요. (사례 5-이성커플 동거)

2) 건강 보험상 부양-피부양 관계 불인정

건강보험에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어서 각자 지역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그나마 이성애 동거 커플은 '사실혼' 관계임을 인우보증을 통해 입증하면 파트너를 피부양자로 지정할 수 있어, 이를 적용받은 사례가 있었다.

혼인보증을 2명 지인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사실혼인데 이런 여러 이유로 같이 혼인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거'를 혼인보증을 2명이 해주고 2명이 자기 신분증이라든 보 증서를 팩스로 보내면 사실혼으로 해서 건강보험이 내 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례 5-이성커플 동거)

3)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수당, 경조금·휴가 제도

가족수당은 가족의 생계부양자인 노동자의 부양 부담을 고려한다는 명분으로 가족수에 따라 급여에 추가로 제공됐으나, 대부분 상징적인 관행으로 남아 있다. 그러다 최근 저출산 정책의 하나로 자녀가 많으면 수당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변형되기도 한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 부양가족은 최대 4명까지 △배우자 월 4만 원 △자녀(첫째 자녀 월 2만 원, 둘째 자녀 월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배우자와 자녀 제외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 원 지급(자녀 초과시 예외)
- 배우자와 자녀 제외 부양가족에는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사회적 가족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못해서 당장 가족수당이나 경조금·휴가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제도를 개인의 가족형태와 무관하게 가족 관계 형성·유지 및 가족 돌봄을 충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최근에 제가 일하는 곳에 동반자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가족수당으로 들어가는 건데 동반자 수당으로 올해 바뀐 거예요. 바뀌는데 서로 목소리를 내고, 반대도 있었지만 바뀌었는데, 제가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입사한 사람인데 계약서를 쓰다가 이 조항이 있어서 그럼 나도 받을 수 있다. 나도 오래 같이 만난 파트너가 있다. 그 수당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분이 되게 고민하시면서 법률혼, 사실혼 증명서가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례 4-이성커플 동거)

가족수당이란 게 있는데(서울시 관련 기관 내 정규직) 가족수당은 사실혼은 또 안돼. 그거는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거나 같이 살아도 안주는 거죠. 가족수당이 사실은 제도적으로 바뀐 얘기도 하셔서 실제 정말 소위 사회적 가족을 인정하신다면 같이 내가 동거하고 있으면서 서로 케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게 너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게 건강보험은 사실혼 되면서 밑으로 들어와 있는데 수당은 한 푼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아이러니하고 안타깝고 그런 거 같아요. 적혀있어요. ‘사실혼 안 됨’ 이렇게 아예. 서울시에서 내려온 가족수당 매뉴얼에 사실혼 관계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사례 5-이성커플 동거)

다. 아플 때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가족

병원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가장 취약한 상태로 방문하는 곳이어서 병원이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관행을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 특히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병원의 위험 관리 차원에서 법적 근거 이상으로 보호자에 의존하는 관행, ‘보호자=직계가족’으로 등치 하는 관행이 지속하고 있다.

같이 병원에 갔는데,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거기서부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어. 근데 만약에 독일에서라면 당연히 애가 나의 보호자고 나도 애의 보호자야.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가족인데. 아, 그 순간에, 작은 일한테 언니가 나 나올 때 고맙다고,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네가 내 동생을 살렸다고 하면서 ATM기에서 돈을 10만 원을 뽑아가지고, 나한테 탁 주시는 거야. 이걸 내가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사례 2-동성커플동거)

제 파트너가 병약하거든요. 그럼 큰 병원에 가는데 진료에 대한 거를 못 듣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사례 12-공동체_커플과 친구)

지금도 어디 가서, 경찰서에 같이 거주거나, 병원에 가거나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하면은 애인이라고 말이 잘 안 떨어져요. (사례 15-동성커플 동거)

의료법은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는 자로 환자 본인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병원에서 ‘보호자’를 요구하며 직계가족에 그 역할을 부여한다.

그 현장에서는 내가 그 뭐 동의서 같은 데 사인할 수 없는 건 둘째 치고 내 파트너가 지금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는데 저 안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그 날 밤에 안 데려갔으면 죽었을 거래, 아마.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염증이 너무 심하고.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고.(사례 2-동성커플 동거)

(제가)수술했어야 했거든요. 파트너가 저를 따라 응급실을 갔었고, 이 사람이 내 파트너라고 이랬는데, 그 사람(의료 관계자)이 보호자로 안 된다고. (파트너를 가리키며)이 분은 보호자가 아니세요. 어쨌든 한 사람한테 연락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응급실에 같이 왔고, (저를)간호했고, 수발들었고. 의사 이야기를 듣고 나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했는데. 간호사분들이 이 사람은 보호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분이 절 돌보는데 왜 보호자가 아니냐고 하며 싸웠던.(사례 4-이성커플 동거)

우리 이 양반이 밤에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 간 거예요.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런데 가서 그것(보호자 사인)을 막상 하려고 하니깐 만약에 거기서 치료받아서 나오면 그만이지만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는 내가 그 자식들한테 원망을 어떻게 들을 거야. 그때 머리가 쭈뼛하더라고. 내가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다 안 했는데 머리가 선다는 게 그 때 한번. 사실혼일 경우에는 사인을 해도 된다는 게 법이 생겨도 될 것 같아요. 그 때 아차 하는 순간에 이게 만약에 길이 달라서 다른 길로 간다면 내가 그 가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가고 머리가 쭈뼛 섰어요. 그래서 사실혼이라도 같이 있으면 보호자로서 사인을 하게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큰딸한테는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만약에 아파서 가까운데 있으면 아저씨한테 먼저 이야기할 거니까 너희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마라. 너희 올 시간이 있는데 엄마는 급해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호자 하려면 아저씨가 해야 되지 않냐 했더니. 아이고. 그거야 뭐 송장을 가져간대도 줘야지.(사례 14-노년커플)

2018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는 공공병원에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입원약정서 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간병원은 자율적 선택 사항이어서 여전히 ‘보호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무조건 직계가족 ‘보호자’를 찾는 관행은 여전히 여전하다.

그리고 저번에 저 옛날에, 얼마 전에 쓰러졌었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119한테 그냥 사촌이라고 하고. 같이 사는 친구예요, 이렇게 얘기했나? 그런 진짜 위급한 상황에 아무리 저희가 이렇게 오래 활동하고 해도,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안 하게 되더라고. 왜냐면 오히려 되게 급한 상황인데 괜히 그런 걸로 지체할 수 없으니까. (사례 15-동성커플 동거)

제가 작년에 맹장 수술 하게 되었는데 의식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의식이 있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제 동기가 먹히지 않고, 가족을 찾고. 가족이 와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병원에서 가족 찾는 게 너무 싫어요.” (사례 13-네트워크_장애여성 1인 가구)

특히 응급상황에서는 ‘보호자’가 직계가족으로 거의 자동적으로 지정되면서, 환자를 잘 알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의 구성원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원가족과 거리를 두고 있거나 원가족에서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소수자의 경우, 병원의 이러한 조치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지. 우리 가족인데 씨, 애 응급실 내가 데리고 갔는데, 어, 가니까 언니가 와 있고, 개네 언니가 그 다음부터 모든 걸 맡아서 애를 데리고 들어가고 나는

응급실에 못 들어가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막, ‘아, 이게 한국의 현실이구나.’ 하고 좀 절망했었어. (사례 2-동성커플 동거)

저는 제 일상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인을 하고 싶고. 네, 친구. 내 일상을 가장 많이 알고, 그니까 원가족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살다시피 하는데 그 가족들이 나에게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혈연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가족들이 저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고. 나에게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내 일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친구나 지인이 그걸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례 13-네트워크_장애여성 1인 가구)

라. 죽으면 사라지는 ‘함께 삶’의 흔적

기존 법제도와 관행상 한 사람의 죽음 뒤에 남겨지는 것에 대한 권리는 대부분 혼인·혈연 가족에게 자동으로 위임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신 인수와 장례 권한을 갖는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사망 전 보호하고 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 순서이다. 이 중 연고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되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커플이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발생한다.

사망자의 재산이 직계가족에 자동 상속되어 사회적 가족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유언을 통한 상속은 가능하지만 사전 공증 절차가 필요하며 법적 상속자가 유류분을 청구할 경우 대항할 수 없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여 구성원 중 1인이 죽음을 맞을 경우, 법·제도적으로 가족이었다는 흔적이 남지 않으면서 둘 사이의 시간과 기억이 모두 사라질까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

나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제 사실은 커플이지만 사업 파트너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산, 내가 얼마만큼은 이 사람에게 바로 유산으로 남겨야 되는데, 그런 게 보호 자체가 없으니까. (사례 15-동성커플 동거)

정말 이 친구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어쨌든 사실은 부모보다 서로를 잘 알고 가까이 아는데 둘 중에 제가 아팠을 때도 내가 죽으면 애는 제도나 법에서 흔적도 없이 이 사람과 살았던 중요한 시간들은 다 사라지는구나. 아무것도 안 지켜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거나 싸우거나. 전 아직 어떤 것도 선택하지 못한 상태이긴 한데. 결혼은 안 할

건데 어떻게. (사례 4-이성커플 동거)

그래도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 OO가 와서 있게는 하겠지, 엄마가. 그리고 내 친구들은 OO가 내 파트너라는 걸 알기 때문에 OO가 상주로서 있어도 사실 문제 없어. 하지만 엄마가 그걸 원할지 아닐지는 내 사후에 돌이 알아서 할 문제지. 근데 OO가 죽어. 그러면 나는 가서 울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가서 거기서 껴끼어 울고 있으면 그냥 마치 그런 거야. 그런데 OO가 죽었을 때 내가 거기서 가장 크게 울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가장 크게 울 자격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더 있는 거야. 내가 OO의 파트너고 와이프라는 걸 이 가족들이 알고 있고 그게 법제화가 되어있다면 내가 그거야. 그 뭐시냐. 상주야. 내가 상주인데 나는 OO가 죽었다고 상상할 때 내가 상주가 될 수 없는 상황들을 상상하고 사는 거지. 이걸 진짜 세 시간을 말해도 뭐 그런 거기는 한테 뭐 독일이랑 비교해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사례 2-동성커플 동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삶과 관계에 대한 슬픈 현실은 개인의 삶에서 불안정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삶을 함께해 온 기억과 시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방치할 때 공동체에 대한 가치는 허상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의 위기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자신의 장례가 원가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때도 있지만, 상속이 아닌 장례에 관한 사항은 유언으로 남겨도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원가족들이 슬퍼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 흔히들 자식의 죽음은 되게 그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체험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근데 장애를 가진 자식이 죽었을 때는 부모나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어요.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만약 사실 저는 제 장례를 가끔 생각도 해요. 나의 가족도 이렇게 할까? 나의 가족도 아무렇지 않게 장례를 치룰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제 장례 주관을 원가족이 안 했으면 좋겠고. (사례 13-네트워크_장애여성 1인가구)

연구참여자 13은 인생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함께 해 온 친구 네트워크가 자신의 장례를 주관하고 애도하기를 소망하지만 존엄한 삶의 결정권이 취약한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순간 또한 법적인 보호자로 자동 위임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절망감을 표시하였다. 이렇듯,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는 자구책으로 유언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두거나 관련 기록을 남겨놓은 사례도 있었다.

일단 재산이 많거나 모아둔 게 많거나 앞으로 재산이 축적되거나 그러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제가 가진 불펜 한 자루라도 전부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전부 이 사람한테

주고 싶거든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려면 공증 같은 거를 받아놓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공증을 받거나 이런 건 안 해봤는데 두 명의 관계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는 해요. 혹여나 내가 만약에 갑자기 사고가 죽기라도 하면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집 식구들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손대지 마시라고. 전부 이 사람 것이니까 저는 휴대폰에도 만약을 대비한 편지 이렇게 적어놨어요. 사고가 나면 전부 이 사람 것이니까 건들지 말라고. (사례 5-이성커플 동거)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절차와 법적 보호장치가 사회적 가족들에게는 힘겹게 획득해야 하는 것으로 연결될 때, 사회적 가족에게 상속이 가능하도록 생활동반자 등록법 등을 통해 간단한 절차로 보장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예 제도가 있어서 생활동반자법처럼 간단한 절차를 걸쳐서 내가 혹여나 공동으로 이뤄낸 자산이고 공동으로 관리해 왔다면 이후에 생을 마감한 후에도 당연히 나머지 사람이 그거를 상속을 받거나 유지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사례 5-이성커플 동거)

IV. 사회적 가족 지위 보장 해외사례

1. 제도의 현황

20세기 서구 가족법에는 두 가지 상충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혼³⁾(영미법에서의 'common law marriage')의 점차적인 소멸과 동거법(cohabitation legislation)의 발전이다.⁴⁾ 이는 결국 불확정적이고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성이 작았던 사실혼의 개념이 발전하여 동거법 형태로 법제화되는 경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자면, 1930년 무렵에는 전체 중 2/3의 주에서 사실혼이 인정되었지만, 점차 줄어들어 2008년에는 11개 주가 인정한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1970년대부터 많은 주에서 동거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이는 줄어드는 혼인율, 늘어나는 비혼 동거커플과 그들 사이의 자녀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 제도는 성 중립적으로 인정되어 이 시기부터 동성 커플에게도 일부 권리가 부여되기 시작했다.

물론 비슷한 무렵인 1970년대 이후 법원이 민사법의 재산법의 관점으로 쌍방 중 취약한 파트너에게 재산 관련 일부 권리를 인정하는 가족법 바깥의 시도들도 있었다.⁵⁾ 이러한 법원에 의한 개별적이고 민사법 접근에 한계를 느낀 미국 법률 협회(American Law Institute)⁶⁾는 2002년 표준적인 가정동반자(domestic partnership) 제도를 제안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동거법은 이제 '어떻게' 만들까의 문제이지 '채택'의 문제는 이미 넘어섰다.

많은 국가에서는 혼인 바깥에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는 커플들이 늘어갈수록 공공정책이 닿지 않는 곳들이 많다는 점에 불안해했다. 일견 중첩적이고 통일적이지 않아 보이는 법제들은 그때그때 보호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적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다.

3) '사실혼'이라는 표현으로 느슨하게 묶이는 것들은 정의가 일의적이지 않다. 영미법 전통의 '보통법 혼인(common law marriage)'. 한국의 사실혼, 일본의 내연관계도 모두 다른 점이 많다. 이 정의는 필요한 곳에서 보충하도록 한다.

4) Lind, G. (2008). Common law marriage: A legal institution for cohabi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at 830

5) 비혼 동거 관계에 대한 위자료(palimony) 사건으로 유명한 1976년 캘리포니아대법원의 마빈 사건(Marvin v. Marvin. Annotate this Case. <L.A. No. 30520. Supreme Court of California, December 27, 1976.>)에서 설명한 마빈 원칙(Marvin Doctrine) 같은 것들이 그 예이다.

6)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THE LAW OF FAMILY DISSOLUTION § 6.01 et seq. (2002)

의도적으로 일시적이고 시험적인 관계가 아닌 안정적인 상호 돌봄 관계라면 한 사람의 생애사를 걸쳐 잠시라도 보호의 공백이 없게 하자는 것이 이러한 변화들의 취지였다.

제도로서는 크게 3 단계(혼인, 등록 동거, 비등록 동거)의 설계가 관찰된다. 그리고 등록 동거도 법률과 조례 형태로 나뉘는데 후자는 주로 ‘가정동반자 조례’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북미 지역, 서부와 북부 유럽 지역의 대부분 국가에서는 두 사람의 결합에 대해 복수의 선택지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시에 사는 두 사람은 결혼할 수도 있고, 캘리포니아 주법 상 가정동반자(가)가 될 수도 있고, 버클리시의 가정동반자 등록을 할 수도 있다.

〈표 4-1〉 파트너십 인정 선택의 종류들⁸⁾

	가정동반자	동거법	강한 동거법	시민연대	혼인	특약 혼인
직장 건강보험 혜택	○	○	○	○	○	○
재산 공동 소유		○	○	○	○	○
상호 부양		○	○	○	○	○
가족 휴가		(○)	○	○	○	○
사회보장			○	○	○	○
의사대리권한			○	○	○	○
상속권			○	○	○	○
공동친권/입양			(○)	○	○	○
세금			(○)	○	○	○
정조의무				○	○	○
사법절차에 의한 해소				○	○	○
다른 주에서 호환 가능한지				(○)	○	○
전통 혼인과의 상징적 관계					○	○
해소 전 상담 의무						○
유책주의 해소						○

7) 이는 다른 관할에서 보통 ‘가정동반자’로 보는 법률이 아닌 ‘시민연대(Civil Union)’에 해당하는 수준의 법률이다.

8) Eskridge Jr, W. N. (2002). Equality practice: Civil unions and the future of gay rights. 중 표 3.3.

혼인: 하나로 묶인 권리·의무·혜택의 모음으로서 포괄적인 등록(comprehensive registration) 제도이다. 국가마다 다르지만 통상 혼인에 1,000여 개의 권리, 권한, 의무, 혜택이 존재한다.

등록 동거: 등록 동거 제도는 지역마다 “registered partnership” “civil union” 등 다른 표현을 쓰고, 제도의 설계가 단일하지는 않으나 시간이 갈수록 유럽 내 국가별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 유럽 연합 안에서는 한 국가의 혼인과 등록 동거의 재산적 효과가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하여 권고를 하고 있다.⁹⁾ 등록 동거의 주요 설계지점은 어떤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가, 법적 효과와 보호의 정도는 어떠한가, 등록을 관장하는 기관, 해소 시 분쟁을 관장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등을 포함한다.

〈표 4-2〉 등록 동거의 법적 효과의 정도

<p>1. 사법상 재산적 효과: 한 사람의 재산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가, 한 사람의 빚이 공동채무로 간주되는가, 관계 해소시에 위자료에 대한 법 적용, 관계해소시의 재산분할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 직접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 문제 등</p> <p>2. 공법상 긍정적 재산 효과: 낮은 재산세, 낮은 소득세, 의료보험 혜택,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더 높은 사회보장 혜택, 고령연금, 유족연금, 상속세 없음 등</p> <p>3. 공법상 부정적 재산 효과: 더 높은 재산세를 내는 경우, 더 높은 소득세를 내는 경우,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더 낮은 사회보장 혜택, 고령연금 등</p> <p>4. 친권/자녀 양육: 친권과 양육권이 두 사람에게 모두 존재하는가, 여성 파트너의 출산 시 이성/동성파트너인 경우 모두 법적 친(parent)이 되는가, 입양 시 공동입양 가능한가 등</p> <p>5. 다른 법률적 효과: 같은 가족성 쓸 수 있는 경우, 출입국/비자, 증언거부권, 가정폭력 보호, 의료결정, 임대차 승계, 정조의무 등</p>

비성애적 동반자 관계(non-conjugal relationship)에 대해서도 포괄적 등록 형

9) Council Regulation (EU) 2016/1103 of 24 June 2016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in matters of matrimonial property regimes.

Council Regulation (EU) 2016/1104 of 24 June 2016 implementing enhanced cooperation in the area of jurisdiction, applicable law and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in matters of the property consequence of registered partnerships.

태 혹은 개별법적 형태로 보호하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 2008년 버든 자매 대 영국(Burden and Burden v. U. K.) 사건은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일생을 함께한 동반자였던 친자매의 사망으로 주거 관련 거액의 세금을 물게 된 버든 씨가 영국의 등록동거제도였던 시민동반자(Civil Partnership)로 인정되고 자 했던 사건이었는데 이처럼 이 돌봄관계가 비성애적 동반자 관계의 보호 공백에 관해서도 많은 국가에서 정책적 고민이 있었다. 가정동반자 법제 중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 태즈매니아의 법 그리고, 캐나다 앨버타주 성인 상호의존 관계 법(Alberta Adult Interdependent Relationship Act 2003) 등은 관계의 성격이 성애적 혹은 비성애적인 것과 상관없이 보호한다.

비등록 동거 중에는 ① 귀속(ascription regime) 형태로 일정 기간 동거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을 강제하는 방안이 있다. 원치 않는 개인은 진입거부(opt-out)가 가능하다. 취약파트너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일종의 강제인 귀속 방식을 도입한다. 비등록 동거 중 ② 현상 자체로 개별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이 있다. 이 경우 주거, 사회보장 등 개별법에서 “동거인”, “가구” 등에 보호를 부여한다.

동시에 비제도화(de-institutionalization)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것인데 친족이 아닌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법률 문서(재산, 의료 등)의 보급 및 대중화 같은 경향이다. 이 경향은 제도화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이다. 등록동거 법제에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개별적으로 사법부에서 재산분쟁이 있을 때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된다.

2. 자치 입법을 통한 가족생활권 보장의 구체적 사례: 일본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조례 등 자치 입법을 통한 가족생활권 보장의 예는 필요에 의한 구체적인 대응이었다. 국가 차원의 입법 지체 상황에서 인구, 가구, 가족 구성의 사회적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역 차원의 대응이었으며, 이를 도입하는 지역자치 단체가 늘어나는 경우 서로의 관할에서 상호적으로 인정하여 국가 차원으로 확산시키기도 했다. 궁극적으로는 가시화, 사회적 대화를 견인하고 가속한 효과가 있었다.

동성 커플에 대한 법률적 인정이 지체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15년 도쿄 시부야구의 조례를 시작으로 비슷한 조례가 전국으로 매년 확산하는 추세이다. 이 제도는 조례 혹은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정해지는 요강(要綱) 두 가지 형태이다. 전달체계는 기존 성평등 프레임워크(‘남녀공동참여계획’에 기반한 정책과 지역센터)을 이용한다.

일반적인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시설(시영 주택, 병원 등)에는 강한 권위가 있는 규범이며, 구에서 지역 내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수용을 권장하는 가이드 라인도 제시한다. 구체적 사례는 생명보험의 사망 보험금 수취인에 대한 동성 파트너 지정, 휴대전화의 가족 할인, 항공사 마일리지 합산 여부 등인데, 기존에는 기업별로 정책을 바꾸는 등 개별적 대응을 해왔던 것을 조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권장한다. 이 제도는 특히 주거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4-1〉 일본 26개 지방자치단체의 동성커플 등록 상황(2019년 10월 8일 기준)¹⁰⁾



현황	도도부현	시구	시행시기 (도입방식)	이용 커플	해당 지역 추계인구
도입 완료(30)	홋카이도	삿포로 시	2017년 6월 시행 (요강)	77	1,965,956
	이바라키현	이바라키현 전역	2019년 7월 시행 (요강)	19	2,879,225
	토치기현	가누마 시	2019년 6월 시행 (요강)	0	96,096

10) 출처: 〈nijiroduiversity.jp〉

현황	도도부현	시구	시행시기 (도입방식)	이용 커플	해당 지역 추계인구
도입 완료(30)	군마현	오이즈미 정	2019년 1월 시행 (요강)	0	41,811
	지바현	지바 시	2019년 1월 시행 (요강)	46	977,634
	도쿄 도	에도가와 구	2019년 4월 시행 (요강)	7	697,449
		시부야 구	2015년 10월 시행 (조례)	38	226,774
		세타가야 구	2015년 11월 시행 (요강)	102	909,196
		나가노 구	2018년 8월 시행 (요강)	35	331,738
		도요시마 구	2019년 4월 시행 (요강)	18	289,508
		후추 시	2019년 4월 시행 (요강)	3	130,523
	가나가와 현	요코스카 시	2019년 4월 시행 (요강)	7	396,441
		오다와라 시	2019년 4월 시행 (요강)	3	190,761
		요코하마 시	2019년 12월 시행 (요강)		3,739,836
	아이치 현	니시오 시	2019년 9월 시행 (요강)	0	172,307
	미에 현	이가 시	2016년 4월 시행 (요강)	5	92,125
	오사카 부	오사카 시	2018년 7월 시행 (요강)	143	2,726,905
		사카이 시	2019년 4월 시행 (요강)	9	830,312
		히라카타 시	2019년 4월 시행 (요강)	7	420,466
		카타노 시	2019년 11월 시행 (요강)		77,884
		다이토 시	2019년 12월 시행 (요강)		120,690
	효고 현	다카라즈카 시	2016년 4월 시행 (요강)	8	224,967
		미타 시	2019년 10월 시행 (요강)		112,745
오카야마 현	소샤 시	2019년 4월 시행 (요강)	1	69,123	
후쿠오카 현	후쿠오카 시	2018년 4월 시행 (요강)	45	1,582,828	
	기타큐슈 시	2019년 7월 시행 (요강)	6	944,012	

현황	도도부현	시구	시행시기 (도입방식)	이용 커플	해당 지역 추계인구
도입 완료(30)	나가사키 현	나가사키 시	2019년 9월 시행 (요강)	4	421,384
	구마모토 현	구마모토 시	2019년 4월 시행 (요강)	1	739,917
	미야자키 현	미야자키 시	2019년 6월 시행 (요강)	6	403,113
	오кина와 현	나하 시	2016년 7월 시행 (요강)	27	322,653
소계			617	22,134,379	
도입예정 (19)	사이타마 현	카와고에 시	2019년 중		352,935
		사이타마 시	2019년 중		1,302,683
	도쿄 도	미나토 구	2020년 2월 조례안 제출, 4월 시행 예정		257,426
	가나가와 현	가마쿠라 시	2019년 중		172,227
		하야마 정	2020년		33,178
	니가타 현	니가타 시	2020년		792,433
	시즈오카 현	하마마츠 시	2019년 중		793,340
	효고 현	아마가사키 시	2020년 1월 중		451,351
		아카시 시	2020년		298,557
	나라 현	야마토코리 야마 시	2020년 4월		86,497
	카가와 현	미토요이치 시	2019년 중		23,102
	후쿠오카 현	코가 시	시기 미정		59,234
	오кина와 현	이시가키 시	시기 미정		49,590
		이토만 시	시기 미정		61,830
도요미조 시		시기 미정		64,528	
니시하라 정		시기 미정		35,314	

○ 시부야 구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는 조례

일본국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존중과 법 앞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인종, 나이나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되어 누구나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여 힘차게 살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구민 공통의 소망이다.

본 구에서는 지금까지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남녀 공동 참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써 남녀의 인권 존중에 적극적으로 임해왔다.

그러나 남녀에 관한 문제에서는 여전히 성별에 따른 고정적인 역할분담 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제도와 관행이 존재하는 것, 소수의 성적 지향이 있는 사람과 성 동일성 장애인 등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일본에는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 도우며 생활하는 전통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해 온 역사가 있고, 특히 시부야 주변은 여러 개성을 받아 들어온 관용성이 높은 곳이다. 한편, 현대의 글로벌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차이가 새로운 가치 창출과 활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구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권 존중의 이념과 사람들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구민 전체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넓혀 나가야 한다.

앞으로 본 구가 인권 존중의 마을로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부야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성별 등에 얽매이지 않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적 책임을 나누고 함께 모든 분야에 참가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 구, 구민과 사업자가 각각의 책무를 완수해, 협동하여, 남녀의 구별을 넘어 다양한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고, 더욱 풍요롭고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성숙한 지역사회를 만들기로 결의하고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조례는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추진에 대해 기본 이념을 정하고 구, 구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분명히 하는 것과 동시에, 구의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개인을 존중하는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이 조례 에서 다음 각 호 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각각 해당 각 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개인이 존중되고 모든 사람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고 책임을 나누는 사회를 말한다

11) 출처: 일본 도쿄시 시부야구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ity.shibuya.tokyo.jp/reiki_int/reiki_honbun/)

2. 구민: 구내에 주소가 있는 자, 구내의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와 구내의 학교에 재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자: 구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법인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가정 폭력 등: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3년 법률 제31호) 제1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과 스토킹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2년 법률 제81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스토크 행위를 말한다.
5. 괴롭힘: 타인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 등이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 나 주위 사람을 불쾌하게 하고 존엄성을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것을 말한다.
6. 성적 지향: 연애나 성애가 어떤 대상을 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향 (이성에게 향하는 이성애, 동성으로 향하는 동성애, 남녀 모두에게 향하는 양성애, 어떤 다른 사람도 연애나 성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무성애)을 말한다.
7. 성적 소수자: 동성애자, 양성애자, 무성애자 및 성동일성 장애를 포함하여 성별위화가 있는 자를 말한다.
8. 파트너십: 남녀의 혼인 관계와 다르지 않을 정도의 실질을 갖추는 호적상의 성별이 동일한 양자의 사회생활 관계를 말한다.

(구가 하는 파트너십 증명)

제10조 구청장은 **제4조** 에서 규정하는 이념에 근거해, 공서 양속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트너십에 관한 증명 (이하 "파트너십 증명서"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전항** 의 파트너십 증명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에 열거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장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 당사자 쌍방이 서로 상대방을 임의후견 계약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1년 법률 제153호) 제2조 제3호에 규정하는 임의후견 수임자 중 하나로 임의후견 계약에 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고 있는 것.

2호.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합의계약 이 공정증서에 의해 맺어진 것.

3. 전 항에 정하는 것 외 파트너십 증명의 신청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구민과 사업자는 사회 활동에서 구가 하는 파트너십 증명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2. 구의 공공적 단체 등의 사업소와 사무소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는 구가 하는 파트너십 증명을 충분히 존중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거점 시설)

제12조 구는 남녀평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추진하기 위해 시부야 남녀평등 다양성 센터 조례 (헤이세이 3년 시부야 구 조례 제8호) 제1조 에서 규정하는 시부야 남녀평등 다양성 센터를 그 거점 시설로 한다.

2. 구는 **전항** 에 규정하는 시설에서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상담이나 불만에 대한 대응 외에 조례의 취지를 추진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혼인·혈연 관계에 기반한 기존의 가족정책의 한계와 다양한 관계성을 포괄하지 못하는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서 시민적 유대와 친밀적 관계망을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하였다. 최근에 생애변동 속에서 사회적으로 삶의 고립화나 사회적인 유대감의 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실제 가족·사회정책은 변화되는 새로운 방식의 유대감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에서 배제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본 연구는 다양한 관계에 대한 배제와 차별이 아니라, 혼인·혈연 중심의 삶을 넘나드는 유동적이고 개방적인 관계를 포괄하는 정책의 변화가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의 토대이며, 인권의 출발임을 가시화하고자 하였다.

이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서 가족 유형별 구분이 아니라 생애변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삶의 위기나 관계성의 변화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며, 핵가족과 분리되는 사회적 가족이 아니라 원가족을 떠나서도 ‘잘 살아 낼’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정책적 변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정책적인 변화를 위해서 관 주도형 정책 제언이 아니라 실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요청한다.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해서 서울시의 정책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족 지원 및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마련

사회적 가족을 서울시 가족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설정하여 차별 없이 지원하며, 나아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시민들과 상호 유대와 공존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를 다음과 같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내용이 조례를 통해 서울시 행정의 근거로 명시되고 다양한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 사회적 가족 지원 종합계획 수립

먼저 서울시의 사회적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추진 목표, 지원 영역 및 세부 추진과제 등을 담은 (가)〈사회적 가족 지원 종합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고, 그러한 계획이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종합계획 안에는 사회적 가족을 위한 주거, 복지, 보건·의료, 안전, 문화향유 등 다양한 영역별 정책 추진의 방향과 과제가 명시되도록 하며, 아울러 서울 시민들이 나눔 활동, 상호 돌봄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관계를 확장하도록 독려하고 그러한 관계 맺음이 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사회적 가족의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종합계획 수립·시행 시 사회적 가족 당사자의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한다.

나. 전달체계의 통합적 구축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한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는 기존의 가족정책 전달체계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다시 구축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시가 최근 〈제1차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통합적으로 재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센터들과 별도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할 경우,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다양한 시민들의 실천을 가족형태나 가구형태에 따라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특정한 가족형태 및 가구형태에 대한 낙인을 초래하고 실제 이용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형태나 가구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서울 시민의 가족 실천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지·지원하는 활동으로 전달체계의 위상을 확립하고, 누구나 차별과 편견 없이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합적인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사회적 가족 등록 절차 마련

사회적 가족 구성원이 서울시 정책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계를 확인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해당 가족 구성원이 신청할 경우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 증빙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서울시의 사회적 가족 증빙 자료가 공공영역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각종 시설 이용이나 상품·서비스 구매 시 이들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민간영역의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

서울시 차원의 정책·서비스 제공에서 사회적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이들을 대상에 포함하는 조치에서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 각종 시설이나 상품·서비스 판매 시 기존의 혼인·혈연 가족에게 주었던 혜택이나 보장 내용이 사회적 가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의 보험·금융 상품,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사회적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해당 기업에 협조를 요청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견인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서울시의 노력을 통해 가족 다양성을 인정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난다면 정상가족에 대해 시민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정책방안

가. 서울시 주거정책 대상을 사회적 가족까지 확대

앞서 사회적 가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이 가족을 구성·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가장 절실하게 대책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는 다름 아닌 주거 문제였다. 이들은 부부·혈연가족과 1인 단독 가구, 오직 두 가지 대상으로 나누어져 시행되는 주거정책에서 배제되거나 다른 형태의 가족에 비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회적 가족에게 확대되어야 할 주거정책을 △주택자금 지원 사업 △임대주택 입주 자격 △사회주택·공동체주택 등 다양한 관계망에 기반한 사회적 가족 주택 확대 필요,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1) 주택자금 지원 사업 대상 확대

가) 주택도시기금 주택 전세자금 대출 상품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공공 주택담보 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거나 단독세대주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아래 표와 같이 각각 구체적인 대상을 달리하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모두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항이다.

그로 인해 사회적 가족들은 그나마 경제력이 있는 1인이 단독세대주로 대출을 받아 주거비용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우 금리가 더 낮은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지 못하여 이자 부담을 더 많이 해야 했다.

〈표5-1〉 주택도시기금 주택 전세자금대출 상품

상품	대상	금리	한도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3천5백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2.80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은 자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현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 	연 1.2%	최대 1억 원 이내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2.80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보증금) 연 1.8% (월세금) 연 1.5%	(보증금) 최대 3천5백만 원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 (월 40만원 이내)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부합산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2.80억 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만 25세 미만 청년 	연 2.3~2.7%	최대 3천5백만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주거안정 월세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 (일반형)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80억 원 이하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최대 960만 원 (월 40만 원 이내)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2.80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연 1.2~2.1%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6억 원 이내 (임차보증금 80%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 자산 가액 2.80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연 2.3~2.9%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0.8억 원 이내

※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http://nhuf.molit.go.kr>) 검색 일자: 2019.10.17.)

나)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서울시에서 자체 지원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도 그 대상은 <표5-2>와 같이 부부합산 소득이나 특정 조건의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서울시가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월세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사업은 <표5-3>과 같이 일정 소득 및 주거 기준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 수에 따라 매월 임대료 보조금을 5만 원에서 7만5천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서 가구 수 역시 세대주와 2촌 이내 직계 준비속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회적 가족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1인 단독 가구 또는 혈연가구로 주택자금 지원 대상 가구를 제한한 조치를 개선하여, 앞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한 가구도 가구 합산 소득과 동거 가구 수에 따라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5-2〉 서울시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지원사업 내용

상품	대상	금리	한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용자지원 사업	<p>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인 자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자인 세대주(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무주택자이어야 함.)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단,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p>대출금리 = {(①변동금리 혹은 ②고정금리) - ③우대금리} - 이자 지원금리</p> <p>①변동금리=기준금리(금융채 6개월)+가산금리(1.72%p)</p> <p>②고정금리=기준금리(금융채 2년)+가산금리(1.85%p)</p> <p>③우대금리 =최고 연 0.6%p</p>	<p>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p> <p>(*기본지원 2년 이내, 최장 8년 이내)</p>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용자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취업준비생 ② 사회초년생(재직기간 5년 이내) ③ 대학(원)생 	<p>대출금의 연 2.0%</p>	<p>임차보증금의 88% 범위 내</p> <p>(*국민은행)</p>

※ 출처: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kr/youth-housing/couple-apply-form>;
<http://housing.seoul.kr/youth-housing/security>, 검색 일자: 2019.11.18.)

〈표5-3〉 서울형 주택바우처 사업 내용

대상	금리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법정 차상위가구 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이면서 ①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② 전세전환가액이 9,500만 원 이하인 가구 	<p>매월 임대료 보조금(현금) 지원</p>	<p>1인 가구: 월 50,000원</p> <p>2인 가구: 월 55,000원</p> <p>3인 가구: 월 60,000원</p> <p>4인 가구: 월 65,000원</p> <p>5인 가구: 월 70,000원</p> <p>6인이상 가구: 월 75,000원</p>

※ 출처: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kr/youth-housing/voucher>,
 검색 일자: 2019.11.18.)

2) 임대주택 입주 자격 보장

주택자금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 자격 역시 혈연관계의 가족 또는 1인 가구에 한정되어 있어 사회적 가족의 공동 입주는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

〈표5-4〉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신청자격에 따르면, 혈연관계가 아닌 사회적 가족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한 세대로 인정받지 못한다. 그래서 사회적 가족이 입주 신청을 하려면 1인이 단독세대주로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 경우 전용면적 40m²(약 13평)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어 제한적이다.

〈표5-4〉 국민임대·장기전세 신청자격

종류	신청자격											
국민임대 장기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자격 검증 대상은 다음과 같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th> <th style="width: 50%;">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주택공급신청자</td> <td></td> </tr> <tr> <td>·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td> <td>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분리배우자') 포함</td> </tr> <tr> <td>·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td> <td rowspan="2">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r> <td>·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td> </tr> <tr> <td>·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td> <td>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td> </tr> </tbody> </table>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분리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분리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 불가(단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직계존속의 사망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세대주(본인의 주민등록 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 미만만 신청 가능 - 단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7. 2019년 제1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7. 제37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또 무주택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동거인의 거주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세대 구성원을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거인’은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관례이다.

나)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사회출발선에 있는 2030 세대의 주거 불안을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그러나 행복주택 역시 이성애 부부 아니면 청년, 대학생 1인 가구로 대상을 분화하고 있어 사회적 가족은 신청자격을 얻기 어렵다.

〈표5-5〉 행복주택 신청자격

종류	신청자격	
행복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 부부는 성년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무주택세대원 기준은 위와 동일하나, 대학생 계층·청년 계층 및 예비신혼부부는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미성년 세대주 예외규정은 위와 동일 	
	대학생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 -대학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학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 ·혼인 중이 아닐 것 ·신청자 본인 및 부모가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청년 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청년 ·아래 세 개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재취업준비생(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혼인 중이 아닐 것 ·해당 세대가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여기서 해당 세대는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③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말함.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신혼부부 계층 (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해당 세대가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자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며 만 65세 이상인 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해당 세대가 일정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주거급여 수급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주거급여 수급자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2019.9. 2019년 2차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다)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행복주택과 함께 서울시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2030 주거정책 중 하나인 역세권 청년주택은 민관협력 방식으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주택 역시 대상은 행복주택과 유사하게 부부 아니면 청년 1인 가구로 제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다.

〈표5-6〉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대상

상품	대상	금리	한도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자녀 1명인 경우 8년, 2명 이상인 경우 10년 거주) · 공공임대: 대학생,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으로서 차량 미운행자에 한하며 최장 6년간 거주(2년마다 갱신) · 민간임대: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고 차량 미운행자에 한하여 입주 모집도록 할 예정 	무이자	임대보증금 최대 4,500만 원

※ 출처: 서울시 청년주거 포털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kr/youth-housing/2030-2>

(검색 일자: 2019.11.18.)

서울시는 나아가 신혼부부 2쌍 중 1쌍은 주택자금 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월세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연 1만 4,500채씩 공급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계획’을 최근 발표했다.¹²⁾ 그러면서 이 대상에 사실혼 관계의 부부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는 이전보다 진일보한 조치이지만 지금과 같은 이성애 부부와 청년 중심 기준이 여전히 유지된다면 사회적 가족을 결성하였거나 결성하여 함께 살고자 하는 이들은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서 계속 제외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앞서 제안한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된 가구에게 부부·혈연가족과 같은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부여하거나, 등록 제도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함께 동거한 가구가 그 사실을 입증할 경우 입주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양한 관계망에 기반한 사회적 가족 주택 확대 필요

그동안 우리 사회 대부분의 주택은 그 안팎의 공간을 정상가족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설계해 왔다. 최근 들어 1인 가구를 위한 소규모 주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비혈연 관계의 동거인들이 함께 사는 가족, 따로 살지만, 근거리에서 서로 보살피며 지낼 수 있는 네트워크 가족 등 사회적 가족을 위한 다양한 관계망을 포괄하는 주택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들어 서울시가 공급하는 다양한 주택 유형이나 사회주택, 공동체주택은 다양한 수요자에 맞춘 주거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는 사회적 가족을 위한 주거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며 실제 그러한 공간을 실현하기도 한 서울시 정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다양한 친밀적 유대에 기반을 둔 사회적 가족 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 1인 가구 간 연계 활성화 및 이동성 제고 사례

○ 서울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 중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¹³⁾

12) 한겨레. 2019.10.28. “서울 신혼부부 2쌍 중 1쌍에게 대출이자·임대주택 지원 늘린다” (원문: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14888.html#csidx176dcd91b553ad3869d284692fa7b49>, 검색 일자: 2019.11.18.)

13) 참고: < <http://blog.seoul.go.kr/221671964215> >

- 커뮤니티 공간 조성,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자기돌봄 및 생활역량 강화 등

○ 홀몸 어르신 위한 보린주택¹⁴⁾

- 금천구 1인 가구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금천구 협약
- 계약 기간 2년,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대 20년간 거주 가능)
- 2015년 보린주택(1호점)을 시작으로, 보린두레(2호점), 보린햇살(3호점), 보린함께(4호점) 총 4개소로 확대, 홀몸 어르신 56세대가 생활 중

○ 신내의료안심주택(중랑구민 대상)

- 홀몸 어르신 및 의료취약계층 대상(222세대)
- 홀몸 어르신, 1~2인 노인가구, 만성질환관리제도 대상자 등 의료수요가 있는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한 의료안심주택. 의료안심주택은 배리어프리(barrier-free)시설이 설치되어있고, 의료시설이 인근에 건설되어 의료서비스 이용의 편의성을 제공
- 단, 3인 이상 가구는 신청할 수 없음.

나) 사회적 가족이 입주 가능한 공동체주택·사회주택

○ 서울시 공동체주택 플랫폼¹⁵⁾

- 공동체주택: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 (서울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 자가소유형(조합소유형), 공공임대형, 민관협력 임대형, 민간임대형
- 거주자 특성에 따른 분류 : 육아형, 노인 돌봄형, 다문화형, 청년 일자리형, 동일 직업형, 1인 가구형 등
- 수요자 필요에 맞는 공급: 입주자의 특징을 고려한 공간설계 및 커뮤니티 프로

14)참고: <http://news.seoul.go.kr/welfare/archives/40966?tr_code=sweb>

15)참고: <<http://soco.seoul.go.kr/coHouse/index.do;jsessionid=00A37F0B06C0C06DF25FAF9AA0121C4B>>

그램을 운영하는 공동체주택 공급. 거주자 특성에 따른 공동체주택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성에 따라 알맞은 공동체주택 건설 가능

〈표5-7〉 서울시 공동체주택 플랫폼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구분	자가소유형 (조합소유형)	공공임대형	민관협력 임대형	민간임대형
내용	공동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하는 형태	공공이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형태	공공이 토지를 임대하고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지은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형태(최장40년)	임대사업자가 임대형 공동체주택을 공급하는 형태
입주 대상	누구나	예술가, 어르신 등 특정 목적 또는 공동체 활동에 합의하는 주거취약계층	무주택자	누구나
임대료	(개별 소유권 취득)	공급주택에 따라 임차료 다름	주변 시세 이하	자율적 시행

〈표5-8〉 서울시 공동체주택 플랫폼 거주자 특성에 따른 분류

거주자특성에 따른 분류			
목적	직업	취미, 동호인	세대
육아, 노인돌봄, 다문화, 청년 일자리	연극인, 예술가, 디자이너, 1인 사업가	악기, 도시 텃밭, 원예, 그림, 오토바이	청년, 신혼부부, 실버, 세대혼합형

○ 서울시 사회주택 플랫폼¹⁶⁾

- 사회주택: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며 저렴한 임대료,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공동체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추구를 특징으로 하는 임대주택을 말함. 운영 주체는 입주자들이 주도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함.
- 사회주택 특징:
 - ①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시세 80%)
 - ② 안정적인 거주기간 보장(최장 10년 거주 가능)

16) 참고: <http://soco.seoul.go.kr/soHouse/index.do;jsessionid=FA10B95FF6578466B2225E1B0E37CE0C>

③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 조성 및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운영

- 지원 사업 : 온라인 상담, 사업컨설팅, 아카데미, 금융지원, 커뮤니티 지원, 기타 지원
- 사회적주택 토지지원 리츠: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주체(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등)가 제안한 토지를 서울시 적격심사를 거쳐 매입,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적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30년간 장기 저리로 임대하고 시민에게 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 서울시(SH공사)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기금이 공동출자(1:2)해 토지를 매입함.
예) 녹색 친구들 사회적 주택¹⁷⁾
- 최근 구로구 사회적주택 입주자 모집 시 2인 이상 가구 비혈연 관계 가구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함.

〈그림5-1〉 녹색친구들 사회적주택 입자자 모집 공고

사회적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모집공고일 2019.09.30)

사회적 주택은 청년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주체(녹색친구들)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녹색친구들의 사회적주택

Blend ME
개인의 작은 관심들이 모여

Blend WE
즐거움 만남이 있는 우리가 됩니다

‘나’에서 ‘우리’로, ‘자립’에서 ‘연대로’
 맛과 풍미가 더 깊이 우러나는 관계의 블렌딩(Blending)
 다채로운 삶의 풍경이 공존하는 소셜커뮤니티 사회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2019.09.30)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분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분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자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하이며 아래의 하.에 해당하는 분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분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분
 - 3) 예술인

17) 참고: <<http://www.greenfriends.co.kr/board/announce/view/56>>

나. 서울시 산하 의료원의 친족 중심 보호자 참여 관행 개선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환자 본인에게 하거나 환자가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 법정 대리인에게 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로 규정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그 외 친족에게는 ‘보호자’로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해야 할 어떤 법적 의무도, 책임도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3. 환자에게 설명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4.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5.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 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 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실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는 관행상 친족으로 설정된 보호자의 역할이 배제되지 않는다. 서울의료원 홈페이지에 소개된 입·퇴원 수속절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입원 수속 시에는 환자의 신분증과 함께 보호자의 신분증도 제출해야 하며, 상시 병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출입증을 발급하는 보호자는 2인까지 두게 되어있다.¹⁸⁾

18) 참고: <<https://www.seoulmc.or.kr/pms/contents/contents.do?menucdv=01060000>>

<그림5-2> 서울의료원 입원절차 안내

입원절차



01 입원결정

담당의사

외래(또는 응급실) 진료를 받으신 후 담당의사로 부터 입원 결정이 떨어지면 1층 입퇴원창구를 방문해 주십시오



02 입원수속

1층 입퇴원 창구

입원약정서를 작성하여, 보호자 신분증사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03 병실배정

1층 입퇴원 창구

병실호실, 병실등급을 확인하시고 상급병실의 경우에는 상급병실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04 입원

각 병동

해당 진료과별로 담당의사로 부터 치료 및 상담을 받게 됩니다.

참고: (<https://www.seoulmc.or.kr/pms/contents/contents.do?menucdv=01050100>,
검색 일자: 2019.11.18.)

이처럼 보호자의 참여를 요구하는 관행은 보호자 동반이 어려운 1인 가구 등이 늘어나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서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관행이 보호자=친족이라는 고정관념과 결합하여 친족보다 현재 함께 살면서 환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회적 가족 구성원의 보호자로서 참여를 박탈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법률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보호자에게 과도한 참여를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자의 자격을 ‘환자가 지정하는 1인’과 같이 친족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앞서 조례와 같이 사회적 가족 등록 및 증명 절차가 마련된다면, 사회적 가족에게 친족에게 관행적으로 보장된 보호자 지위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대책이 반드시 배타적으로 시행될 이유는 없다. 서울시 차원에서 산하 의료원의 보호자 참여 관행 및 실태를 조사하여 수술동의, 입원 수속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보호자 참여 관행이 얼마나 친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파악하여 사회적 가족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 장례에서 사회적 가족의 권한 보장

최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무연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던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면서, 연고자를 친족으로 제안한 장사법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아래와 같이 현행 장사법은 연고자를 친족 중에서 우선순위를 두어 정의하고 있으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은 지자체의 장이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고 유류 물품을 매각하여 유류금품 처분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고 있다. 법적 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적 가족 구성원은 시신 인수를 포함한 장사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받을 수 없다.

장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중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 가. 배우자
- 나. 자녀
- 다. 부모
-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 바. 형제·자매
-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시장 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 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에 지난 11월 4일 보건복지부는 동거인이나 친구 등 ‘삶의 동반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무연고사망자의 연고자 기준, 장례 처리 행정 절차 등을 명확히 하는 무연고사망자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¹⁹⁾ 장사법 제2조 아목에 “가목

19) 연합뉴스, 2019.11.4. “무연고사망자 장례 동거인·친구가 치를 수 있게 한다”

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라는 규정이 있으니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자체가 친족 외 지인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전의 친족 중심 규정보다 진일보한 내용이지만 고인이 생전에 유지를 통해 친족 외의 사람에게 장례 권한을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는 법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긴 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적 가족 등록·증명 자료, 유언장 등 증빙이 있으면 사망자가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장례 권한을 우선 부여할 수 있게 하는 방침 등 가이드 라인을 먼저 만들어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가족수당 및 휴가 지원 대상에 사회적 가족 포함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서울시 공무원의 복무 관련 조례에서 ‘가족’은 혈연가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적으로 최대 4명이며 △배우자에게 월 4만 원, △자녀의 경우 첫째 자녀 월 2만 원, 둘째 자녀 월 6만 원,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배우자와 자녀 제외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 원 이 지급(자녀 초과 시 예외)된다. 이중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에는 고령자 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일부가 포함된다.

한편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는 가족 경조사 시 최대 1일에서 20일까지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친족의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1. 배우자: 월 4만 원
2. 자녀
 - 가. 첫째 자녀: 월 2만 원
 - 나. 둘째 자녀: 월 6만 원
 -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 원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 원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당해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191101111200017>>, 검색 일자: 2019.11.18.)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공무원의 근무 형편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자,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19.5.1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따라서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수당 및 휴가 지원 시 사회적 가족 구성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해당 제도를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적 가족 구성원이 수당 및 휴가 사용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치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가족 구성원을 대상별로 특정하여 제공하는 가족수당 제도와 경조사 휴가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가족을 포함하더라도 특정한 가족 구성원과 가족 형태를 명시하고 증명하여 수당이나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은 원치 않는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제도에서 소외되는 가족 관계를 남겨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가족을 특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제도와 휴가 제도를 보다 보편적인 급여 확대, 휴가 확대를 통해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3.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비혼·동거가족, 비혈연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가구 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가족의 정책과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사회적 가족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를 말한다.
2. “2인 동거 사회적 가족”이란 두 사람이 서로 돌보는 동반자 관계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한 유형을 말한다.
3. “주거공동체 사회적 가족”이란 협동조합주택이나 셰어하우스 등 자발적으로 주거를 함께 하면서 사회적 가족을 구성한 유형을 말한다.
4.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이란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지역사회 영역에서 가족의 소속감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서로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적 가족을 말한다.
5. “시민”이란 서울특별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회적 가족 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가족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평등하고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가족이 복지서비스와 공적 자원에 대하여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3. 사회적 가족에 대한 지원은 2인 동거 사회적 가족, 주거공동체 사회적 가족, 네트워크 지향 사회적 가족 등 유형의 특성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하여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의 정책 요구를 파악하여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족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족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사회적 가족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사회적 가족의 주거, 복지, 보건·의료, 안전, 문화향유 등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종합계획 및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서울특별시의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주거, 복지, 보건·의료, 안전, 문화향유 등 지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회적 가족의 정책 참여) ① 사회적 가족은 사회적 가족에 대한 복지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시정 및 의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사회적 가족은 사회적 가족과 관련한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나 청문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가족은 사회적 가족의 복지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상호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시에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가족·보건의료 정책)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유대관계를 활성화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족 정책 및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가족에게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주거복지 정책)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시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 가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적 가족에게 동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조례」 제4조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주거실태조사, 제7조에 따른 주거복지사업
2. 주택임차보증금 지원
3. 임대주택 공급
4. 기타 시의 주거복지 지원 사업

제13조(등록) ① 모든 시민은 시의 복지서비스와 지원 사업을 이용함에 있어서 편의를 위하여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한 시민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 가족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알 권리) 시장은 사회적 가족으로 등록한 시민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1. 사회적 가족의 주거복지 지원 사업
2. 시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환자 및 보호자로서의 권리
3.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따른 유언방식 및 이와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마을세무사 제도 소개
4. 기타 사회적 가족으로서 보장되는 권리와 지원 사업

제15조(차별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적 가족이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1.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3.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시의 사무위탁기관(시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5.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

제16조(인권교육) 시장은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10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사회적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협력체계) 시장은 사회적 가족의 복지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참고 문헌 〉

■ 단행본

- 가족구성권연구소. 「가족을 구성할 권리, 가족을 넘어선 가족」. 가족구성권연구소. 미간행. 2019
- 김도현.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 봄. 2019
- 김순남 외.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정체성 및 활성화방안」.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2018
- 김원정. 「가족패러다임의 변화와 동성결합의 의미」.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13년 연속기획. 미간행. 2013
- 김유경 외. 「사회환경 다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진단과 대응전략」. 보건사회연구원. 2016
-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 지성사. 2015
- 김희경.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동아시아. 2017
- 로젠펠드 마이클 J. 「자립기」. 갈무리. 2014
- 미셀바렛·메리맥킨토시. 「반사회적 가족」. 나뭇잎. 2019
- 변미리 외. 「서울특별시 1인 가구 대책 정책연구」. 서울연구원. 2015
- 실비아 페데리치. 「혁명의 영점」. 갈무리(황성원 옮김). 2013
- 엘리자베트 벡-게른스하임.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새물결. 2005
-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2009
- 장경섭. 「내일의 종언? 가족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집문당. 2018
- 장혜경 외.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1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 조권중 외. 「『서울은 안전한가』 불안사회 진단과 사회적 치유방안」. 서울연구원. 2015
- 주재선 외. 「2017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 후지모리 가츠히코. 「1인가구 사회:일본의 충격과 대응」. 나남. 2018
-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the law of family dissolution: Analysis and recommendations」. Lexis Nexis Matthew Bender. 2002
- Eskridge Jr, W. N. 「Equality practice: Civil unions and the future of gay rights」. Routledge. 2013
- Eva Feder Kittay. 「돌봄 : 사랑의 노동」. 박영사. 2016

Lind, G. 「Common law marriage: A legal institution for cohabi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연구논문

- 김혜영. 「기로에 선 가족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여성학』 28(3):63-94. 2012
- 송다영. 정선영. 「통합적 가족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 『비판사회정책』 39:145-189. 2013
- 유홍준. 현성민. 「경제적 자원이 미혼남녀의 결혼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75-101. 2010
- 이상봉. 「친밀권의 재구성과 대안적 공공권의 가능성:사회공간적 인식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 회보』 26(3): 58-83. 2016
- 이소영.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 장경섭. 「'위험회피'시대의 사회재생산: 가족출산에서 여성출산으로?」. 『가족과 문화』 제23집 3호 1-23.2011
- 최현숙). 「그 가족은 노인에게도 답이 아니다」. 『황해문화』 2018년 봄. 93-108. 2018
- Creed, G.W. “Family Values“ and Domestic Economies”.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2:329-355. 2000

■ 신문기사

- 경향신문. 2018.1.2.일자. “ ‘결혼.혈연만 정상가족’ 인식 벗어나 ‘돌봄 사각지대’ 줄인다”. <http://v.media.daum.net/v/20180102224531412> (2019.09.21.일자 방문)
- 비마이너. 2019. 7. 11. 일자. “김순남 : 강제된 장소, 강제된 관계를 질문하는 탈시설운동”.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3612&thread=02r24>. (2019. 10.20.일자방문)
- 국민권익위원회.국민대통합위원회. 2014. “ ‘나 혼자 산다’ 1인가구 전성시대, 문제와 해법은”. <https://www.epeople.go.kr/jsp/user/po/filterOff/suve/UPoSurveyVi>

ew.paid?txtSurNo=1AC-1406-001248 (2019.10.25.일자방문)

아시아경제.2019.05.26.일자. “국민 3명 중 2명 혼인·혈연 무관 생계·주거 공유하면 가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4473864> (2019.09.20일자 방문)

아시아경제. 2019.10.12.일자. “ ‘혈연 관계 없이도 우리는 가족’, 정상가족 허구 벗어나야”

<https://www.asiae.co.kr/article/2019101116034058148>
(2019.11.10.일자방문)

통계청. 「2014 사회조사보고서」 . 2015

통계청. 「국민 삶의 질 지표」 . 2019

<http://qol.kostat.go.kr/blife/result-idx.do?oaYear=2016&idctId=201304933>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발행처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발행인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장 이창학

주관부서 : 입법담당관(입법담당관 배선희, 입법조사관 김영재)

홈페이지 : <http://www.smc.seoul.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전화) 02-2180-7907 (입법조사관)

연구기관 : 가족구성권연구소

책임연구 : 김순남

연락처 : 전화) 070-8685-9973

발간등록번호 : 51-6110100-000139-01

- ※ 본 학술연구용역보고서의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식재산권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용역수행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서울특별시의회가 해당 학술연구용역 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 이후 용역수행자가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음)